

2012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발 간 사

인간이 아니라 노예와 다름없는 세상!

이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6.25때 월남했다는 이유만으로 28년의 기나긴 세월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던 여성이 북한에서 겪은 참혹했던 인권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눈물로써 토로한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2011. 3.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보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고문과 구타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정치범수용소뿐만 아니라 강제북송된 탈북자의 조사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여러 보고서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 사례집이 처음일 것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1년간 834명으로부터 북한인권침해를 접수받아 대표적인 사례를 국내 외에 널리 알려 북한의 인권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가 낱낱이 기록 · 보존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북한주민에게는 작은 희망을, 북한정권에게는 인권침해가 억제되어 이를 예방하는 효과로 작용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나오기 까지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렇게 축적된 사례들이 북한인권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서 문

1.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의 의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북한인권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3. 15.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하, 신고센터)을 설치하여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 3. 15.로 신고센터 설립 1주년을 맞아 그 동안 신고센터가 정리한 북한인권 침해사례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이번에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인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나 관련기관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보고서나 백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피해자별로 범죄 구성요건화 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 보존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으로서 인권위가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국제 인권규범을 어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경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자제케 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자는데 있다.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에서의 인재등용이나 피해자들의 복권·재심이나 피해보상의 근거자료 및 인권교육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미 서독은 1961. 11. 잘쓰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를 설치하여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독립적이고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 인권위가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UN 등 국제기구에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획기

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끝내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북한인권법안의 핵심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이 책의 내용 개관

북한인권의 범주에는 인권위가 2011. 10. 2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부록 2. 수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 뿐만 아니라 재외 및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간 분단과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책도 ①북한지역 내 인권침해의 상징인 정치범 수용소 중 그 동안 밝혀진 요덕, 개천, 북창, 회령의 각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②공식적인 구금시설인 교화소 중 일부인 전거리 교화소와 증산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③기타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④자국민 보호 및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대한 인권침해의 순으로 집필하였다.

①정치범 수용소의 경우에는 1977. - 1984. 사이에 북창 관리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의 피해신고를 처음으로 수록했고, 요덕 및 회령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했거나 경비병 생활을 했던 강철환, 김태진, 안명철, 정광일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감자 278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정리하여 부록 1.에 수록했다. ②교화소의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비하여 그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최근의 교화소 출신 탈북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량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교화소의 심각한 실상을 수록하였다. ③기타 구금시설의 경우는 북한의 인권유린의 실무라인에 있는 재판이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상을 수록한 것이다. ④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경우는 수많은 피해자들 중 일부만이 신고를 하여 한정된 수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6·25 전시 납북자의 경우는 현재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이번 집필에서는 제외하였다.

인권위는 그 동안 신고센터의 안내 홈페이지를 정비함은 물론, 주소가 파악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위원장이 일일이 우편엽서를 동봉한 서신을 보내어 격려하고 미리 마련한 북한인권침해신고서(부록 3. 수록)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밖에도 인권위원회나 조사관이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탈북자들을 비롯한 북한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직접 만나서 위 서식에 의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수집하였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표준모델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들 중 북한도 비준·가입하고 있는 4대 국제인권조약,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국제적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대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¹⁾ 등을 근거로 하여 신고자(피해자)별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구성요건화 하고 체계

1) 관련되는 로마규정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a) 살해(murder), (c) 노예화(enslavement), (d) 강제이주(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e) 자의적 구금(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f) 고문(torture), (g) 강간 등(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 (h) 박해(Persecution), (i)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k) 비인도적 행위(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to mental or physical health).

적으로 정리·보존토록 하였다. 다만 이 책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보복범행이나 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였고, 피해사실도 일부 바꾸어 표현하였다.

3. 앞으로의 과제

인권위가 수집한 자료는 전체 침해사례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위의 북한인권 업무에 관한 열악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신고센터의 업무는 이제 시작 일 뿐이고 앞으로도 설립취지를 살려 가능한 한 북한의 모든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매년 발간할 이 책의 후속편에 실음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정책수립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고된 개별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 보완조사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리가 완료된 자료들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예방·억제하는 교육·홍보 자료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전제로 UN에 그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자는 데 있다. 이 책은 이 논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들로서 이들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인권위는 신규입국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시하는 합동심문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그들로부터 입국초기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센터 운영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

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그 협조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고, 전국에 산재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찾아서 침해사례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신고센터의 인원보충과 예산의 뒷받침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문제가 되었지만 그 주도적 해결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 인권위는 그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 신고센터는 그 동안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던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역사적으로 기록·보존함으로써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책이 앞으로 북한정권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을 억제하고 자제도록 하는 북한인권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전폭 지지해주신 현병철 위원장님과 책자 표지 디자인부터 삽화 위치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윤남근, 양현아, 김성영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준 북한인권팀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 작성에 협조해 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관계자 및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더욱 생생하게 증언해 주신 신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 5.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목 차

제1부 정치범수용소 1

I. 요덕 정치범수용소	3
II. 개천 정치범수용소	34
III. 북창 정치범수용소	42
IV. 회령 정치범수용소	60

제2부 교화소 71

I. 전거리 교화소	73
II. 증산 교화소	113

제3부 기타 구금시설 131

I. 국가안전보위부	133
II. 사회안전부(인민보안부)	196
III. 노동단련대	222
IV. 국경경비대 등 기타	236

제4부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249

I . 국군포로	251
II . 납북자	259
III . 이산가족	282

부 록 285

부록 1.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278명)]	287
부록 2. [북한인권 주요 정책권고]	366
부록 3. [북한인권침해신고서]	374

■■■ 제1부 ■■■

정치범수용소



2011. 3. 15.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와
신고접수

I . 요덕 정치범수용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김영순(여)

다. 피해자

- 신고인
- 부모 및 아들 3인과 딸

라. 가해자

- 국가안전보위부장 ○○○, 제15호 관리소장 ○○○, 담당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기본권 박탈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 일시 및 장소

1970. 10. 초부터 1979. 1. 경까지 제15호 관리소(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또는 요덕 정치범수용소 또는 요덕수용소)

(2) 요덕수용소의 규모와 구조

- (가) 요덕수용소는 1969. 설립되어 사회안전성 제9국이 관리. 서쪽에 맹산군, 북쪽에는 평남 대흥군, 동쪽은 함남 금야군, 남쪽은 함남 고원군의 수동 탄광지대와 마주하고 있고, 용평리, 평전리, 구읍리 일부, 입석리, 대숙리 등 5개 리로 구성되고, 해발 1,700m의 산악지대에 둘러싸여 있음. 수용소 남쪽 입구에서 북쪽 대숙리 초소까지 35km, 동쪽 용평리로부터 서쪽 병풍산까지 20km에 이룸.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200m에 하나씩 포대경이 있으며 경계 바깥쪽으로 뾰족히 깎은 나무들이 설치됨.
- (나) 신고인이 수용되었을 당시 유명인들로서는, 사단장 원용선, 정사천(6.25 전쟁 중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 프룬제 출신 김왈균 장령 부부, 연출가 김홍철, 강홍식(『내고향』이라는 첫 북한 영화 연출)과 그의 일본인 부인 및 자녀들인 강효재와 강효선 가족. 유명 연극인 신불출과 그의 가족. 설계가 김실용, 호위국 출신 박순녀, 평양의대 안과박사 정성희, 최승희의 수제자 김현숙(평양예술대학 조교수) 부부 등이 있었음.
- (다) 수감된 정치범들은 서로가 모두 감시대상이기 때문에 도주가 불가능. 글을 잘 쓴다는 이유로 관리소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에도 종사하였는데 그 때 자재계획을 세우며 추산해보니 초기 수용소 인원은 15,000명에서 20,000명으로 기억됨. 연좌제에 의해 들어온 사람이 60% 이상이었음. 1975. 주민등록 재조사 사업이 벌어져 용평리에 완전통제구역이 생겼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강제이주

- (가) 1970. 8. 1. 서평양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보위부 직원들에 의해 평양시 보통강 구역 대타령동에 있는 보위부 312호 예심과로 연행되어 1970. 9. 30. 까지 감금됨. 남편 이동명(1936. 3. 6. 생)은 1970. 7. 4. 어디론가 끌려간 후 지금까지 행방불명.

정치범수용소

(나) 그 이후 1970. 10. 초 평양 중구역 창전동 고급 군관아파트 주거지로 귀가하였다가 바로 70세가 넘은 부모, 큰 딸(10세), 둘째(8세), 셋째(6세), 막내 아들(2세) 등 가족과 함께 기차, 트럭 등에 태워져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어 감금됨.

(2) 박해 및 노예화

(가) 당시 수용소에 입소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명을 몰랐으나 대부분 김일성과 체제에 대한 사소한 문제 제기 때문이었음. ‘김일성의 목에 혹이 있다’고 말한 사람, 김일성·김정일의 석고상을 깐 사람, 김일성 사진이 있는 신문으로 장판을 바른 사람, 외국 비디오를 본 사람, 김정일의 처 성혜림과 아들 김정남에 대해 말한 사람, 남한 방송을 청취한 사람 등이었음. 신고인도 수용소에서 출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중학교 시절부터 동갑내기 친구였던 성혜림(2002. 사망)이 ‘5호 댁(김일성 직계 가족)으로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임을 알게 됨. 당시 김정일은 성혜림과의 동거사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법한 주변 인물들을 제거하거나 사회에서 격리시켰음.

(나) 집은 굴뚝이 다팍다닥 붙은 하모니카 주택으로서 2세대가 사는 일자형 초가집. 방 하나에 부엌 하나이고 장판 없는 진흙 바닥에서 지냄. 배급 받는 식량은 멀건 소금국과 통강냉이 200g뿐. 어쩌다 쥐를 잡아 먹는 것은 특식을 먹는 것이고 다수가 독풀을 잘못 먹거나 추위와 펠라그라 등 영양실조로 사망. 60세 이상의 노인은 다소 덜 심한 노동에 종사케 하였으나 아버지는 1971. 8. 5. 어머니는 1976. 1. 각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큰아들 세영이는 1973. 여름 학교가는 길에 물에 빠져 사망.

(다) 신고인은 여자의 몸으로 6명의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매일 새벽 3시에 기상하여 10리 거리에 있는 작업장에 새벽 4시30분까지 출근하여 점심시간 30분 이외에는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어두워서야 귀가하는 중노동에 시달림. 처음 입소해서부터 1971. 까지는 피나무 등 원목을 건조시켜 가구를 만들어 평양에 올려 보내는 작업을, 1972. 3. 부터는 건설소대에서 보위부 보위부원의 사택, 식료공장 등을 건축하였음.

(3) 비인도적 행위

- (가) 노동을 하다가 다쳐도 치료도 못 받고, 일을 안 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식량배급을 안 주기 때문에 굶주림 속에서 일 하다가 대부분 사망. 신고인은 1970. 10. 21.부터 비인간적인 삶과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로 4년간은 생리조차 멎었는데, 수용소 여성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음. 학교가 있지만 정식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보위원들의 자식이 선생이 되고, 학생들은 단지 토끼 사육공에 불과하여 학생들이 토끼풀 과제 하루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을 세우고 집에도 안 보냈음.
- (나) 1976. 1. 경 용평리에 새로 생긴 완전통제구역으로 옮겨졌는데, 여기서는 배급도 없이 자급자족으로 살아야 했고, 농사를 맡은 분조(8, 9명으로 구성된 3, 4가족)의 경우는 관리하는 모판의 모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반동적 간첩행위로 몰아 구치소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음. 사소한 불평만 해도 수감자들 내부에 밀고자가 있어 구치소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음. 수시로 사상투쟁회의를 열어 비판을 받으면 역시 구치소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음. 수용소 내 수감자들의 30% 정도가 구치소로 들어가 사라짐.
- (다) 관리소 입구 우측에는 정신병자 수용소를 따로 두어 전국적으로 김일성 부자에 대해 말한 정신병자들을 수용하였음. 독방에 가두어 상·중·하로 식사량을 결정해 놓고 일을 시켰음. 노동실적에 따라 상밥은 수평으로, 중밥은 푹 파이고, 하밥은 바닥에 깔리게 밥을 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니 굶주림 속에 중노동을 하다가 모두 사망했음.

(4) 살해

1973. 말경 25세 가량 청년 2명이 수용소를 탈출하려다 붙잡혀 전체 수감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업대대 3작업반과 4작업반 사이 넓은 공터에서 공개 총살됨.

다. 출소 및 탈북과 한국 입국

1979. 1. 요덕수용소에서 남은 가족(큰 딸과 아들 2명)과 함께 출소. 2001.

정치범수용소

2. 1. 탈북하여 2003. 11. 25. 대한민국에 입국.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신고인의 저서 ‘나는 성혜림의 친구였다’(2008. 1. 15. 서울문학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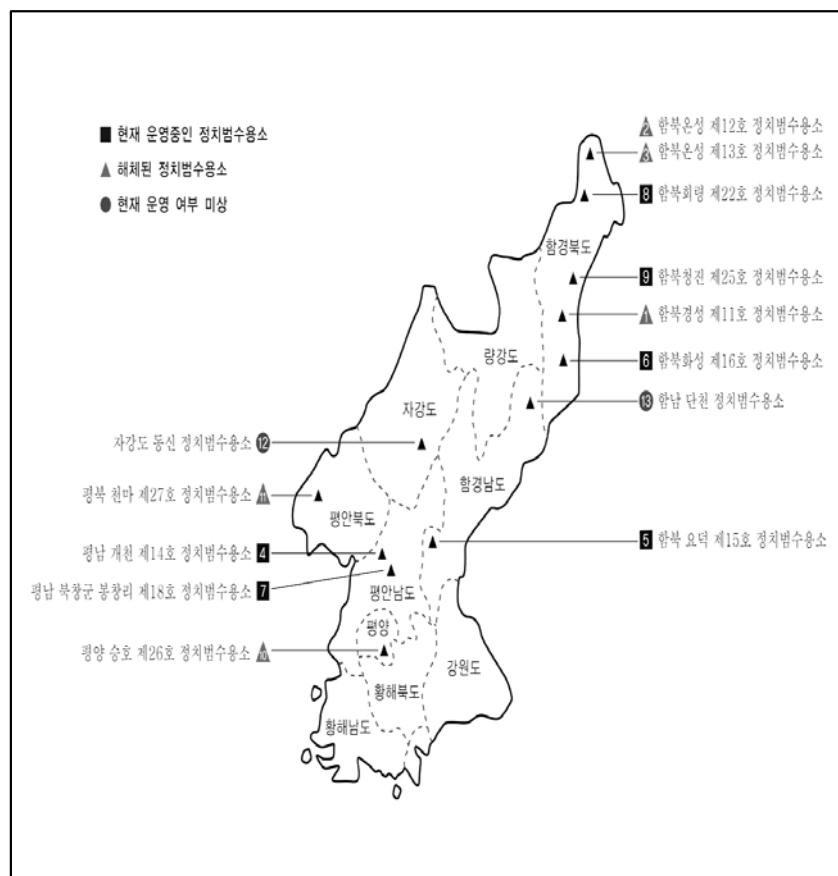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아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노동권),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2조(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지체 없이 추진할 의무), 제11조(임신관련 여성 보호)
- 아동권리협약(CRC) 제2조 내지 제9조(아동권의 보호),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집회·결사의 자유), 제16조(사생활 등에 대한 간섭금지), 제19조(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3조(존엄성 보장), 제24조(건강권), 제27조(생활권), 제28조 및 제29조(교육권), 제31조(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제32조 및 제36조(착취 금지), 제37조 및 제39조(고문 금지 및 신체의 자유), 제40조(사법절차상의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1조(표현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권), 제36조(가족권)



정치범수용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강철환(남)

다. 피해자

- 신고인
- 별지 수감자 명단 기재 수감자들

라. 가해자

- 국가안전보위부장 ○○○, 제15호 관리소장 ○○○, 담당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기본권 박탈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 일시 및 장소

1977. 8. 경부터 1987. 2. 16. 까지 평양시 중구역 경립동 38번 사회안전부 교통성 아파트 자택 및 합경남도 요덕군 소재 제15호 관리소(요덕 정치범 수용소 또는 요덕수용소)

(2) 요덕수용소의 규모와 구조

- (가) 사방이 해발 1,500m가 넘는 혐산(북으로는 1,724m의 백산과 1,883m의 모도산, 서로는 1,517m의 덕산과 1,548m의 병풍산, 동으로는 1,250m의 채봉령과 남으로는 1,152m의 매등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함남 요덕군의 20여개 리(남한의 면 단위) 중 구읍리, 입석리, 용평리, 평전리, 대숙리 등 5개 리로 구성되어 요덕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 신고인이 있던 곳은 입석천을 따라 형성된 마을. 요덕 수용소의 전체 수용자는 5만여명으로서 완전통제구역(용평리와 평전리)과 혁명화 구역(구읍리, 입석리, 대숙리)로 나뉨.
- (나) 완전통제구역은 지주, 친일파, 종교인, 6.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 반당종파분자의 가족 34,000여명이 수용됨(정치범 본인들은 평남 동신이나 개천에 있는 국가보위부 교화소에 수감).
- (다) 혁명화 구역은 해외로 도주하려던 자, 체제비판자, 해외에 나갔다가 그 사정을 국내에 전한 자, 북송 재일교포(이른바 귀국자), 의거자(월북자) 등 1,300여명의 독신중대와 가족세대 구역으로 나뉘고, 가족세대 구역은 다시 9,300여명의 원주민(북한출신) 마을과 5,900여명의 북송 재일교포 마을로 나뉨.
- (라) 요덕수용소 경계선에는 3-4m 높이의 철조망과 2-3m 높이의 담장 및 전기철조망, 함정, 망루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인민경비대 인원은 1,000여명이고 국가보위부 7국이 담당. 보위원들과 관리소 내 학교의 교원들은 38선 경비대와 마찬가지로 “전투가학금”을 받고, 수용자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포로들에게 하듯이 개돼지로 취급. 학교 교원은 교원 자격증 없는 보위원들이 담당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보위원(예, 김기운 선생)은 쫓겨 감.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강제이주

신고인이 인민학교 3학년 재학 중인 1977. 8. 초순경 갑자기 국가안전보위부 과장 전재근 등 7명의 보위부원들이 평양 집에 나타나 북송 재일교포

정치범수용소

인 신고인의 할아버지(당시 평양상점 관리소 부소장으로서 1달 전부터 행방불명) 강태휴(당시 65세)가 민족반역자라는 이유로 온 재산을 몰수하고 할머니(송옥선), 아버지(강리명, 1941년생, 어머니 신도옥은 1980. 경 강제이혼), 여동생(강미호, 당시 8세) 등과 함께 신고인을 연행하여 요덕수용소에 구금함. 막내 삼촌(강창남)은 그 전날 요덕수용소로 수감됨.

(2) 박해 및 비인도적 행위(의식주 및 의료환경)

- (가) 집은 영성한 손 벽돌로 지은 작은 방 두 칸과 부엌 한 칸의 세 칸짜리 일자식의 토담집, 마치 돼지우리에 임시지붕을 씌워 만든 것처럼 영성. 두 방 사이에 흐린 전구가 유일한 조명시설. 11. 부터 시작되는 겨울은 평균 영하 20도 혹한으로서 대부분 동상에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얼마나 남았나에 따라 수용소 들어온 기간을 계산할 정도.
- (나) 웃은 처음 들어 올 때 모포 몇 장과 인민복 한 벌 뿐, 그 후 지급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경쟁적으로 시체에 달려들어 죽은 사람이 입고 있던 누더기를 서로 벗겨 가짐. 신발도 지급이 없어 스스로 만들어 신음. 이, 빈대, 벼룩이 많아 얼굴과 손등으로 벌벌 기어다녀서 보위원들조차 수용자들과 접촉을 꺼림. 발진티푸스 등 전염병에 쉽게 감염.
- (다) 식량은 하루 350g의 옥수수쌀을 배급하나 잘 익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어 6개월 계속 설사하다 죽거나 “펠라그라”라는 영양부족에서 오는 일종의 피부병(계걸병)에 걸려 다수가 사망. 짖주림의 고통이 심각하여 먹을 것에 대한 환상만 나타나는 정신이상자 다수 발생. 300여명 따로 수용하여 중노동을 시키나 대부분 사망. 추위와 짖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갖가지 병이 겹쳐서 매일매일 죽어나감. 1979. 봄 옆집 할머니 고명옥(조총련 교토본부 위원장 윤덕우의 처)도 펠라그라에 걸려 사망. 15명의 일본인 처 중 10명이 사망.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내다 묻는 ‘장례식조’가 구성되어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강냉이 국수 한 끼분이 배급되므로, 수용자들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서로 ‘장례식조’에 들려고 함. 개구리, 뱀, 쥐 등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나 이것마저 귀하게 됨.

(3) 노예화(강제노동)

- (가) 새벽 5시 반 기상. 인민학교(소학교)는 4년제이고 고등중학교(현 중학교)는 5년제인데, 아침 8시 30분부터 교육 시작하나 오후에는 강제노동에 동원. 2. 부터 김일성 생일 준비로 매일 0.5g의 ‘사금캐기’에 동원되어 6명 1조가 30kg의 흙을 30번이나 퍼 나는 힘든 일. 봄부터 “농촌지원전투”(강냉이 영양단지 만들기, 강냉이 이식 전투,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에 동원. 학생은 50평, 어른은 140평을 마쳐야 하루 분 강냉이 급식. 10. 중순부터는 월동준비의 일환으로 매일 20kg 토끼풀 채취작업 및 맷나무 작업(몸무게보다 3배 이상 되는 통나무 짊어지고 산을 내려와야 함). 쓰러진 사람 몸까지 대신 할당돼 남아 있는 사람의 고통 가중. 1977. 10. 경 담임교사 “량수철”의 무리한 작업지시로 12명의 학생이 토끼사 건축을 하다가 진흙 굴이 무너져 3명이 깔려 죽음. 시체는 부모들의 호소에도 분묘 없이 평토해 치웠음. 1981. 봄에는 교원들이 멱을 딸기밭에 인분 주는 일을 하는데,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일을 태만히 하면 변소바닥을 손바닥으로 닦아내는 변소청소를 시키고, 때로는 인분을 손으로 퍼서 딸기밭에 주도록 벌을 내려 손이 시퍼렇게 뚁독이 올라 통통 붓게 됨. 불평하는 한 학생을 독한 냄새가 나는 인분 통에 밀어 넣고 마구 구타하는 바람에 사망케 함.
- (나) 1983. 7. 28. 17세로 수용소 학교 졸업(인민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5년 합쳐 6년)했는데, 입학 당시 100명 중 15명 사망, 20여명은 용평완전통제구역 끌려간 상태였음. 이후 성인노동에 종사했는데, 16세 이상 65세까지의 수용자들은 새벽 5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하여 점심식사 시간과 오후 5시쯤 약 30분간씩 휴식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저녁 8시까지 기계처럼 계속 중노동. 할당량(자기는 물론, 자기가 속한 조)을 마치지 못하면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함. 세 번 짜각은 한번 결석으로 치고 하루 치 배급 공제. 매일 작업 끝난 후 정기학습, 한 주에 두 번 강연회. 1983. 8. 경 보름 동안 아침 7시부터 외화벌이로 1,500m 이상 산에서 하루 책임량 5kg의 ‘세신’(약초) 캐는 일로 혹사.

(4)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욕설이 일상화되어 있음. 사소한 규정 위반자도 “구류장”에 가두는데, 1달간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식사시간과 대소변 시간만 제외하고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므로 대부분 들 것에 실려 나와 얼마 안 있어 사망. 기아와 질병, 처벌로 입소 후 1년 이내 기간 내에 사망하는 비율이 특히 높음. 힘에 겨워 한 달에 몇건씩 꼭 자살자가 발생하고, 자살한 사람은 그 가족도 민족반역자로 낙인찍히고 수용기간도 5년 연장. 자살한 사람이나 사형당한 사람은 분묘 없이 매장(평토). 휴식시간에 쉰다든지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마구 구타. 학생들을 ‘새끼’, ‘반동’이라고 항상 욕설로 대함. 인민학교 담임교원 “량수철”은 대표적으로 포악.

1978. 경 ‘기독교 집안 딸’이라는 수용자 아주머니와 두 딸을 용평 완전통제구역(6.25 직후 건립)으로 이송. 용평 완전통제구역은 1974. 에 폭동 있었다고 함. 극심한 굶주림과 혹독한 노동 강요로 일단 끌려갔다 하면 몇 년을 살아남기 힘들다는 무서운 소문뿐. 그냥 죽이기엔 아까워 실컷 노동이나 시켜서 반혁명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죽이는 곳.

(5) 살해(공개처형)

1977. 10. 경 입석리 2작업반 근처 강변에서 3명 총살로 공개처형 사실을 들음. 1983. 8. 경 16세 이상은 의무참석이어서 선돌바위 부근 강변 사형장에서 처음 목격. 탈주자 리춘원 총살. 1985. 8. 10.에는 2반 강변에서 38선 저격부대 군인이었던 탈주자 2명을 교수형으로 공개처형하고, 수천명에게 순차로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향해 억지로 돌을 던지고 가게 함.

다. 출소 및 한국행

1987. 2. 16. 석방되어 요덕군에 거주하던 중 남한방송을 청취하고 김정일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국가안전보위부에 재수감될 위기에 처하자 탈북하여 1992. 8. 경 대한민국 입국.

3. 증거자료

- 같은 수용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 신고인의 저서 ‘수용소의 노래’(2005. 12. 1. 시대정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아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및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아동권리협약(CRC) 제2조 내지 제9조(아동권의 보호),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집회 · 결사의 자유), 제16조(사생활 등에 대한 간섭금지), 제19조(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3조(존엄성 보장), 제24조(건강권), 제27조(생활권), 제28조 및 제29조(교육권), 제31조(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제32조 및 제36조(착취 금지), 제37조 및 제39조(고문 금지 및 신체의 자유), 제40조(사법절차상의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정치범수용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김태진(남)

다. 피해자

- 신고인
- 별지 수감자 명단 기재 피해자

라. 가해자

- 제15호 관리소(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또는 요덕 정치범수용소 내
지 요덕수용소) 소장 ○○○, 담당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기본권 박탈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988. 3. 경부터 1992. 까지 요덕수용소(요덕군 대숙리 지구 백산구역)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자의적 구금

청진의 국가안전보위부는 1988. 3. 경 재판도 없이 당 정책훼방죄, 불법 월경에 의한 국가 반역죄, 반혁명분자라는 죄명을 씌워 신고인을 요덕 정치 범수용소(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에 강제 수감함.

(2) 박해 및 노예화(굶주림과 강제노동)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해서 뱀과 개구리, 쥐와 같은 것도 가리지 않고 먹어야 했음. 수용소에서는 매일 12시간의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렸음.

(3)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 (가) 1988. 4. 경 부식토(거름)를 지게에 쟈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힘이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부식토를 적게 담자, 보위원이 발로 차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굴러 떨어지고 나서도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주소(보위원 사무실)에 붙들려가 내부지도원으로부터 참나무 장작으로 심하게 맞아 실신한 적이 있음.
- (나) 1989. 8. 경 지게에 무거운 것을 지고 머리를 숙이고 가다가 경비병이 지나는 것을 보지 못하여 경비병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저녁에 불려나가 경비원 7~8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벌거벗긴 후 마당 한가운데 수갑을 채워 세워놓았음. 수갑을 채울 때도 발로 세게 밟아 수갑을 사정없이 조여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손이 금방 새까맣게 변해 벼렸음.
- (다) 경비병들의 훈련용 방탄벽 공사에 동원되어 공사장의 생석회 위에 앉혀 놓았는데 그때 마침 비가 내려 생석회가 빗물과 반응하여 끓어오르면서(석회 덩어리가 물과 화합을 하면 석회가 끓으면서 가스가 방출되고 온도가 100도씨 이상 올라간다) 살이 익는데도 한참을 그대로 앉혀 놓아 엉덩이에 화상을 입어 1달 정도 바로 눕지도 못하였음.
- (라) 1990. 가을경에는 옥수수 밭 경비를 서다가 불을 피워 옥수수를 구

정치범수용소

워 면던 중 보위원 양수철에게 들켜 그로부터 불붙는 장작으로 다리를 마구 맞아 화상을 입었음. 또 다른 여성과 사귀어 임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그 여성은 강제로 유산시켰고, 신고인은 특별감방에 한달 간 수감된 적이 있는데, 감방 안이 너무 추워 다리를 세워 가슴에 안고 앉아 있다가 간수에게 들키자 간수는 신고인을 불러내 옷을 벗기고 구두발로 마구 차서 얼굴과 코가 피범벅이 되었음. 그렇게 무참히 맞은 후 다른 방에 신고인을 집어넣었는데 그 방엔 벼룩이 득실거렸고, 그것도 형벌의 하나였음. 1968. 잉글랜드 월드컵 8강전화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박승진도 잡혀와 이 감방에서 바퀴벌레를 먹고 살아나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었음. 그래서 제발 벼룩이 없는 방으로 옮겨 달라고 애원하자 오히려 물통에 물을 담아 와서 신고인에게 끼얹었음. 온몸이 얼어드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임.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 신고인도 모르게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오곤 함. 이 일로 신고인의 수용소 생활은 1년 연장되기도 하였음.

다. 석방 및 한국행

1992.에 5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끝마치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 다시 탈북을 시도하여 1997. 양강도 혜산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였다가 2001. 6. 경 한국 입국.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및 같은 수용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및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2. 20.

나. 신고인

- 김○○(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무산군 보위부 보위원 ○○○, 제15호 관리소(요덕 정치범수용소) 담당 보위원○○○

마. 신고요지

- 보위부 구류장에서의 고문 및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으로 기본권 박탈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0. 1. 경부터 2000. 6. 경까지 무산군 보위부
- 2000. 6. 경부터 2003. 7. 경까지 제15호 관리소(요덕 정치범수용소 혁명화 구역)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무산군 보위부

(가) 자의적 구금 및 고문

신고인은 1999. 6. 경 중국으로 탈북하였다가 2000. 1. 초 북한으로 되돌아왔는데, 무산에 있는 신고인 집을 찾았다가 매복하고 있던 무산군 안전부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무산군 보위부에 넘겨졌다. 무산군 보위부에서 6개월 동안 굵은 나무 각자가 종아리 뒤쪽에 끼워진 채로 방열판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음. 각목이나 권총 청소하는 ‘소지대’ 등으로 맞았다. 팔다리 모두 사방으로 묶여 공중에 매달린 채로 맞다보니 한 짓 안한 짓, 물어보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했다고 썼음. 조금만 지시를 어겨도 계호 원은 별로 머리를 벽에 계속 짚도록 하였음. 이로 인해 무수한 상처가 남았음 (왼쪽 무릎, 왼쪽 귀밑, 머리 부분의 상처 등 육안 확인). 2000. 6. 경 부터는 죄수들 16명 정도로 가득한 방에서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담요를 뒤집어쓰게 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쁨뿌질’을 500번씩 시켰음. 땀에 절은 옷은 이가 득실득실하고 먼지가 가득 쌓인 담요는 땀이 질질 흘러 범벅이 되었음.

(나) 자의적 구금

검사와 면담이 단 한 차례 있었는데, “당신이 한 발언이 맞는가”라고 확 인작업을 하였음.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다시 6개월간 폭행당하면서 조사 받는 것이었으므로 모두 인정하니까 “당신은 장군님의 배려로 혁명화 3년 을 하게 됐다”라고 했음. 재판 절차는 없었음.

(2) 요덕 수용소

(가) 강제실종

2000. 6. 경 요덕 수용소(제15호 관리소)로 보내졌음. 요덕 수용소 안에는 마침 구읍리 지역에 혁명화구역이 만들어져 중앙당 계통, 안전부, 보위부, 검찰 쪽 사람들도 끌려와 혁명화교육을 받고 있었음. 그 중에 서림천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약 150명의 사람이 있었음.

(나) 박해 및 자의적 구금

첫날 들어간 곳은 외래자 수용소라는 곳이었음. 처음 온 사람들이 조사 과정에서 몸 상태가 엉망이고 극심한 노동에 단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은 해주고 일 강도는 일반 기본 작업반보다 좀 약한 편이었음. 보름쯤 지나서 관리소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이 방문하여 신고인과 담화를 했고, 그 때에서야 신고인이 반역죄로 들어왔다는 것을 처음 들었음. 건장한 사람들은 7~10일 정도 만에 기본 작업반으로 보내졌지만, 신고인은 어리다고 봐 준 것인지 한 달쯤 그곳에 있다가 기본 작업반으로 보내졌음.

(다) 노예화(강제노역)

배치된 곳은 서림천 방 건설소분조였음. 그 때부터 2년 6개월간 밤낮없이 계속 험하게 일해야 했음(나머지 6개월은 식당에 배치됨). 매일 직경 30cm 짜리 나무 12개씩 한 트럭분($3m^3$)을 도끼로 베어야 했음. 모두 19명의 남자로 구성되었는데, 여름에는 새벽 4시 30분 기상하여 농산분조 지원을 나갔음. 거름 나르고 밭갈이하고, 7시에 막사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음. 7시 30분에 기본건설을 하고, 기초를 파고, 시멘트를 손으로 직접 개어서 보안서를 새로 짓고 확장하는 일이 첫 과제였음. 내가 건설분조에 있는 3년 동안 이외에도 닭사, 염소사, 소사, 외래창고 등 6개의 시설을 지었음. 물자도 없는 상황에서 16명 정도밖에 안되는 소대인원으로 그 많은걸 다 지어야 했으니 그 일의 혹독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음.

점심식사는 오전에 식당에서 타간 것으로 밖에서 만들어 먹었다. 주변의 산나물을 뜯어 양푼에 넣어 먹는데 양을 불리기 위해서였음. 5시간 일하고 30분 쉬는 게 기본이나 작업 능률을 봐서 쉬게 했음. 정상적으로는 오후 6~7시까지 일하지만 작업량이 부족하다고 자주 야간작업을 시켰음. 야간작업이 있는 기간에는 6명씩 3개조, 또는 8명씩 2개조로 나눠서 첫 조가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다음조가 1시부터 다음날 오전 5~6시까지, 마지막조가 또 교대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작업은 계속되는 것임.

(라) 박해

항상 배가 고팠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음. 한 끼에 옥수수밥(껍데기 포함) 80g밖에 안되는데다가 작업량이 부족하면 그것을 또 반으로 줄였음. 그러면 힘을 차릴 수가 없어 작업량아 또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배식량을 줄이기 때문에 자연히 일도 못하고 굶어죽게 됨. 신고인과 같이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요덕으로 끌려온 7명 중에 방영실(본명 방○○)이라는 여자도 불쌍하게 죽었음. 함께 잡혀온 방영실의 남편 혀○○은 남자가 작업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달려가서 한 시간씩 여자 곁에 가서 씻겨주곤 했고, 마지막엔 동오줌까지 받아내며 살려 보려고 했지만 끝내 죽었음. 우리들이 그녀를 묻어주었음. 옷은 보위부 사람들이 입던 옷을 여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 제공해 주었고, 밖에서 가지고 온 옷을 입기도 하는데, 배고픔 때문에 물물교환 형식으로 식당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배급을 더 받아먹었음. 정치범들 중에는 보위원들의 스파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실수 했다가 걸리면 무수히 구타를 당하거나 그 안에 있는 별도의 구류장으로 끌려가 죽었음.

(마) 살해 및 비인도적 행위

구류장에서는 한 끼에 10g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한 달만 있어도 혀약(영양실조)에 걸려 죽거나 살아도 엉금엉금 기어서 나오게 됨. 키가 170cm 되는 사람도 일단 이곳에 들어가면 완전 아이가 되어 기어 나오는데 보통 3일을 못 넘기고 죽음. 3명 정도가 그렇게 죽는 것을 봤음. 박○○은 보위부 사람들이 키우는 벌꿀을 훔쳐 먹다가 끌려갔고, 다른 50대 남자 한 명은 배가 고파서 3인조 규율을 어기고 이탈해서 생 옥수수를 먹다가 끌려갔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장○○(여, 30대 중반)인데 성관계를 갖고 임신했다 하여 끌려갔음.

사람이 죽으면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속한 건설분조가 시체를 처리했음. 분묘를 만들지 않고 평토처리를 했음. 판자로 대충 판을 짜서 시체를 제대로 넣으려하면 옆에서 빨리 하라고 닦달하는 통에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고 못질을 함. 소달구지에 실어서 나르는데 돌에 걸려 덜커덩 하면 판이 짜개지고 틈이 벌어지면서 시체가 밖으로 튀어나옴. 신고인은 주로 달구지를 끄는 쪽이었는데, 판 밖으로 튀어나온 시체에 한번 눈길이 가면 무조건 살아

정치범수용소

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음. 묻는 곳은 ‘묘지골’이라고 불렀는데, 주로 밤에 시체를 묻으러 가기 때문에 대충 파서 빨리 묻고 어둠을 틈타 강냉이라도 얻고 풀을 뜯어 구워먹고 오고는 했음. 신고인이 건설분조에서 2년 6개월간 매장처리한 시신은 86구 정도가 됨.

(바) 살해

2001. 여름경 최○○(47세)가 폴베기를 하다 너무 배가 고파 산열매를 따먹으려고 조를 이탈한 것을 도주로 몰아 공개총살을 했음. 2003. 3. 경에는 김○○(37세)이 도망치다 잡혀 역시 공개총살을 당했음. 김○○은 이미 몸이 너덜너덜 할 정도로 반 죽음상태였음. 10m 밖에서 총살하는 것을 봤는데, 이미 너무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총을 맞아도 움직이지도 않고 두개골만 쪼개졌음. 끔찍했음.

(4) 석방 및 탈북 등

2003. 7. 경 형기를 마치고 드디어 요덕수용소에서 나왔음. 나올 때 ‘밖에 나가서 이곳에서의 비밀을 유포할 때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음. 새로운 일자리를 받았으나 일하는 동안에도 24시간 내내 감시당했음. 그 후 탈북하여 2006. 3. 16. 한국에 입국.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수용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

북한인권침해사례집

(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및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정광일(남)

다. 피해자

- 신고인
- 별지 수감자 명단 기재 피해자

라. 가해자

- 국가안전보위부장 ○○○, 제15호 관리소장(요덕 정치범수용소장) 및 담당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어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2000. 4. 6.부터 2003. 4. 12. 석방되기 까지 요덕 정치범수용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강제이주

1999. 7. 22. 간첩혐의로 연행되어 회령시 보위부 지하 감방에서 7개월간 구금되어 혹독한 고문 끝에 2000. 3. 어쩔 수 없이 허위로 간첩혐의를 시인. 이후 재판 없이 2000. 4. 6. 요덕 수용소 독신자 혁명화구역 서림천 지역으로 보내짐.

(2) 강제이주(수용소의 연혁과 구성원 및 일상생활)

- (가) 요덕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 구역은 원래 요덕군 대숙리 백산 구역에 있었으나, 강철환, 안혁 등의 폭로로 1999. 10. 경 위 혁명화 구역을 폐쇄하고 일부 정치범들은 완전통제구역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석방하였음. 이어서 1999. 11. 경 새로이 인근 서림천 지역에 혁명화 구역을 신설하여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음. 수감자들은 주로 북한에서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체제를 비판한 독일이나 중국 등지 유학생, 말 반동 등 정치범이 있었음. 신고인은 2000. 4. 6. 부터 2000. 4. 말경까지는 신입반, 2000. 5. 경부터 2000. 9. 경까지는 건설소대, 2000. 10. 경부터 2002. 6. 경까지는 2작업반(농산반) 1분조 조장으로, 2002. 7. 경부터 2002. 9. 경까지는 1작업반(농산반) 1반조 조원으로, 2002. 10. 경부터 2003. 4. 경 석방될 때까지는 1작업반 4 분조 조장으로 복무하였음. 각 분조는 25-40명으로 구성되고, 각 분조는 다시 3인의 소조로 구성되어 역시 조장 관리 하에 모든 행동을 같이 해야 하고(화장실도 함께 가야 함), 1사람이라도 눈에 띠지 않은 채 15분이 경과하면 보고해야 할 정도로 감시체계를 갖추었음
- (나) 당시 신고인이 요덕수용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목격하였던 정치범 피해자들의 명세는 별지 수용자 명단 기재와 같이 187명에 이룸.

정치범수용소

한편 수용소 일과는 다음과 같다.

04:00(하절기)/05:00(동절기)	기상
05:30-07:00	조기 작업
07:00-07:30	아침 식사
08:00-12:00	오전 작업
12:00-13:00	점심 식사
13:00-20:00	오후 작업
20:00-21:00	저녁 식사
21:00-22:00	정치 학습
23:00	취침

(3) 박해 및 노예화, 비인도적 행위(식사 등 생활환경과 강제노동)

- (가) 아침 식사는 옥수수에 두부콩을 넣은 밥 한 그릇에 시래기국 한 그릇뿐이며, 정치학습 시간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공부시키는데 학습과제를 외우지 못하면 외울 때까지 잡을 못하게 함.
- (나) 하루 작업량은 김매기 하루 정량이 350평이며 풀베기는 800kg으로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양으로 수감자 대부분은 혀약자이기 때문에 하루 과제를 수행하는 수감자는 별로 없음. 하루 작업량을 수행 못하면 식사량도 줄어, 예를 들어 하루 과제를 50%밖에 수행 못하면 식사 배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 600g의 식량을 배급받는 수감자는 거의 없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감.
- (다) 겨울에 통나무를 베고 잘라 쇠줄로 묶어 끌어 나르는 일이 제일 힘든 작업으로 직경 30cm, 길이 4m 이상인 통나무를 하루에 4번씩 약 4km 거리를 끄는 것이 하루 작업량으로 산길이다 보니 사고도 많이 남. 나무를 끌다가 부상당한 수감자들은 하루 작업량을 수행 못해 식사 배급량이 줄어 별지 피해자 명단과 같이 송○○, 차○○, 김○○ 등 다수가 영양실조로 사망.

(라) 4월 옥수수 농사철이 되면 수감자들이 종자를 훔쳐 먹지 못하게 종자에 인분을 버무려 파종을 하는데 박○○과 같이 굶주린 수감자들이 종자를 훔쳐 물에 씻어먹고 대장염에 걸려 죽기도 함. 인분을 옥수수 포기에 주는 작업을 하면서는 수감자들이 먹는 밥그릇에 인분을 펴 가지고 뿌리게 하며 수감자들은 인분 범벅이 됨.

(4) 비인도적 행위

(가) 수용소 보위부원들은 수감자들이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수감자들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자들도 있음. 겨울에 수감자들에게 나무를 쇠줄로 묶어 4km 거리를 끌고 내려오게 하면서 선착장에 옥수수떡을 상으로 놓고 경쟁을 붙여 수감자들끼리 밀치닥거리다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죽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위부원들은 이를 보며 재미있다고 구경거리로 삼음. 또한 마음에 안 드는 수감자를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 하루 작업량을 못 채우게 하여 식사 배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굶겨 죽임. 철저한 약육강식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 밥을 빼앗아 먹는 곳”이 바로 요덕수용소임.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있었는데 밥을 빼앗긴 아들 이름은 김○○였음.

(나) 죽은 수감자 시신은 널빤지로 대충 관을 만들어 팻말도 없이 묻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게 됨.

(5) 살해

2001. 8. 28. 최○○(47세)가 풀베기를 하다 너무 배가 고파 산열매를 따먹으려고 조를 이탈한 것을 도주로 몰아 공개총살을 했다. 2003. 3. 5.에는 김○○(37세)이 도망치다 잡혀 역시 공개총살을 당했음. 김○○은 개에 물려와서 이미 몸이 너덜너덜 할 정도로 반 죽음상태였다. 10m 밖에서 총살하는 것을 봤는데, 이미 너무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총을 맞아도 움직이지도 않고 두개골만 쪼개졌고 끔찍했음.

다. 석방 및 한국행

2003. 4. 12. 요덕수용소에서 석방됨. 2003. 4. 30. 탈북하여 2004. 4. 22.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에 온 이후로도 요덕수용소에 잡혀가는 악몽을 자꾸만 꿔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임.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한 후 탈북하여 입국한 김○○, 이○○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및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9. 10.

나. 신고인

- 오길남(남)

다. 피해자

- 신고인, 신숙자(처, 1942. 12. 10. 생) 및 오혜원(딸, 1976. 9. 17. 생), 오규원(딸, 1978. 6. 21. 생)

라. 가해자

- 북한 대남공작부서 책임자 ○○○, 피해자 납치 관련 공작원 ○○○

마. 신고요지

- 독일 유학생인 신고인은 경남 통영 출신 간호사인 피해자 신숙자와 결혼하여 피해자인 두 딸 혜원, 규원을 낳고 독일에서 생활하던 중 북한공작원 등에게 속아 1985. 강제적·비자발적으로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갔음. 신고인은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후 탈출하였으나, 피해자 모녀는 인질로 잡혀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음. 신고인은 가족의 송환을 위하여 1987.부터 구출활동을 시작하였지만 북한은 피해자 모녀의 송환거부는 물론, 생사확인이나 소재확인 등 일체의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신고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내용

가. 강제적 · 비자발적 실종(입북)

피해자 신숙자는 경남 통영읍 서호동 출신으로 1970. 봄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던 중 1972. 11. 10. 튜빙겐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신고인과 결혼(1974. 11. 20. 혼인신고)하여 혜원, 규원 두 딸을 낳았다. 한편 신고인은 1985. 7. 12.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5. 8. 경 북한 공작원인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 백모 서기관과 김모 참사, 당시 독일에 있던 ○○○ 음악가와 ○○○ 교수 등으로부터 ‘북한의 경제 관련 요직에 등용하고 각별히 대우할 것이니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회유를 받았음. 이들의 말을 믿은 신고인은 피해자 신숙자를 설득하여 그해 12. 13. 모든 가족이 평양에 도착하였으나, 곧 북한의 실상을 보고 속은 것을 깨닫게 되었음. 신고인은 1986. 10. 경 북한 중앙당(대외연락부장 리창선)으로부터 유럽의 남한 유학생 2명을 유인해 데려오라는 지령을 받았는데, “지령을 따르는 것처럼 나가서 탈출하고 돌아오지 말라. 3개월 안에 우리를 구출하여 달라.”는 피해자 신숙자의 충고에 따라 1986. 11. 12. 평양을 떠난 뒤 그 달 21.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음.

나. 강제이주 · 신체적 자유의 박탈

신고인은 그 후 독일에 머무르면서 북한을 상대로 피해자 신숙자, 혜원, 규원 등 모녀의 송환운동을 펼쳤으나 실패하자 1992. 5. 22. 귀국하였고, 단지 1991. 1. 21. ○○○ 음악가가 신고인의 재입북을 권고하며 건네 준 피해자 모녀 가족의 육성 녹음테이프와 사진 6장에 의하여 그들이 그때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 후 1992. 11. 경 한국에 입국한 요덕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안혁에 의하여 피해자 신숙자 모녀가 1987. 11. 말 경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인 요덕수용소(제15호 관리소)의 대숙지구 가족세대 숙소에 수용된 사실이 밝혀졌음.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의 요원은 1995. 경 피해자 신숙자 모녀의 송환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으나 북한 당국은 피해자 신숙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면담 주선을 거부하

였음. 그 후 요덕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다수가 요덕수용소에서 피해자 모녀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 ○○○은 2011. 10. 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991. 부터 4년간 요덕수용소에서 신숙자 모녀와 함께 생활하였고, 2003. 까지는 생존소식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하였음. 한편 일부 언론은 피해자 신숙자 모녀가 최근 요덕수용소를 나와 2011. 9. 현재 평양 순안공항 부근의 통제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북한은 일체의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인의 저서 “잃어버린 딸들 오! 해원, 규원”(2011. 6. 6. 세이지 발행)
- 피해자 모녀 가족의 육성 녹음테이프(1991. 1. 11. 자)와 사진 6장의 영상
- 1992. 11. 29. 자 서울신문의 ○○○에 대한 인터뷰 기사
- 요덕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등의 진술

4. 관련규정 등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e) 신체적 자유의 박탈,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정치범수용소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상

Ⅱ. 개천 정치범수용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신동혁(남)

다. 피해자

- 신고인
- 신경섭(아버지, 1946.생), 장혜경(어머니, 사망), 신희근(형, 사망)

라. 가해자

- 제14호 관리소(개천 정치범수용소) 소장 ○○○, 담당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기본권 박탈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 일시 및 장소

1982. 11. 19. 부터 2005. 1. 2. 까지 평남 개천시 외동리에 위치한 개천 정치범수용소(14호 관리소) 완전통제구역

(2) 14호 관리소의 위치, 구성 등

14호 관리소는 1965. 평남 개천과 봉창을 포함하는 지역에 설립. 1983. 대동강을 경계로 위로는 14호 관리소, 아래(남쪽)는 18호 보안성 관리소로 분리됨. 관리소 수용인원은 5만명 정도이고, 본 마을과 1호골안 · 2호골안 · 3호골안 · 4호골안 · 5호골안으로 구성되고, 초소가 전기 철조망이 치진 관리소 경계 50m에 하나씩 설치되어 외부와 완전 차단. 신고자는 평남 개천시 외동리 8작업반에서 출생. 집 1채에 4가구가 함께 살고 전체 160가구 정도. 가구당 보통 어머니와 자식 2인으로 구성.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강제이주

- (가) 아버지 신경섭은 평안남도 문덕군 룽복리에서 12형제 중 11번째로 태어남. 1965. 어느 날 아침 새벽 안전원들이 들이닥쳐 모든 가구들을 옮겨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 등 가족 모두를 트럭에 태우고 하루 종일 달려 개천 14호 관리소 완전통제구역에 수감. 수감이유는 6.25 전쟁 때 아버지 형제 중 첫째(신태섭)와 둘째가 월남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됨.
- (나) 수감된 순간 가족은 모두 갈라져서 이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함. 아버지는 같은 여성 정치범인 장혜경(1950. 10. 1. 생)과 ‘표창결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신고인은 1982. 11. 19. 태어났고, 그 순간부터 신고인도 정치범이 되어 관리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

(2) 박해 및 노예화

- (가) 인민학교 때 아래의 10대 법과 규정을 모두 외워야 하고 외우지 못하면 집에 보내주지 않았음. ① 도주하면 즉시 총살, ② 무단이동하면 즉시 총살, ③ 도둑질하면 즉시 총살, ④ 보위원 지시에 불복종하면 즉시 총살, ⑤ 외부인을 보호하면 즉시 총살, ⑥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 행동시 즉각 신고해야 함, ⑦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면 즉시 총

살, ⑧ 승인 없이 남녀 간에 신체접촉하면 즉시 총살, ⑨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시 총살, ⑩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기면 즉시 총살.

(나) 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수감자들에게 죄인이라는 신분의식을 심어주고 상호감시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수용자들에게는 관리소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의식이 생기지 아니함. 보위원 자녀들도 수용소 학생들을 지주나 종파분자 또는 혁명의 원수로 생각하고 눈에 띄기만 하면 행패를 부림. 1992. 3. 경 인근 보위원 마을을 지나갔다고 20여명의 보위원 자녀들이 30여명의 수용소 학생들에게 돌멩이를 마구 던져 모두 큰 상처를 입었으나 선생들은 묵인하였음.

(다) 표창결혼

일을 잘 하고 상호감시도 잘하면 남녀간 표창결혼을 시키는데, 표창결혼이 되면 남편은 혼인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신이 일하는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아내는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농산반에 집을 배치 받아 자녀가 인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께 지냄. 처음 5일 정도는 부부가 같이 지내고, 그 이후는 일을 잘 하면 1달에 1번 정도 남편이 아내 집에 와서 묵을 수 있음. 인민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어머니를 떠나 중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 때부터 혼자 생활.

(라) 산전 산후 휴가가 있으나, 아이 낳기 전 보름과 아이 낳은 후 1달 정도만 휴식시간이고, 그 후에는 남자와 똑같이 작업에 종사하여야 함. 아이를 돌 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 아이를 업고 일하여야 함. 병원은 있으나 보위원인 의사 1명과 죄수 중에 선발된 간호원 1명과 식염수뿐,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함.

(마) 집은 시멘트로 지어졌고, 장판이 없어 날바닥에서 기거. 1일 배급량은 1인당 옥수수 쌀 900g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700g만 주었음. 부식으로는 염장 배추 3포기와 소금을 조금씩 받음. 인민학교(5년 과정) 학생은 1인당 300g, 고등중학교(6년 과정) 1-4학년은 400g, 5-6학년은 500g 배급. 늘 배가 고파서 쥐 등을 잡아먹음. 1996. 경 배가 너무 고파 땅을 보면서 걷다가 소동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나온 강냉이 알 세알을 발견하고 대강 닦아 먹은 것이 운 좋은 날일 정도

로 항상 굶주림.

- (바) 매월 초 1일과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및 설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중노동(휴일도 작업반 정리나 산에 나무하러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낮을 뿐 일은 계속). 일의 강도나 작업연령은 전강한 사람이나 아이나 늙은이나 차이가 없음. 65세 이상된 노인들은 따로 모아서 작업반을 만들어 죽을 때까지 노동.
- (사) 5년 과정의 인민학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하고, 그 이후 오후 7시까지 노동. 수업은 국어·수학·체육인데, 국어는 글을 쓸 수 있는 정도만, 수학은 덧셈·뺄셈만, 체육은 달리기와 철봉 매달리기만 가르침. 12살 때인 1993. 부터 고등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6년 동안 수업은 없고 매일 김매기, 가을걷이, 거름 나르기 등 노동 만 함. 아침 7:30부터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고, 저녁식사 후 9시부터 10시까지 생활총화 하고 수면. 하루에 정해진 양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과제를 끝마친 조에 자신의 밥 절반 이상을 주어야 함. 중학교 1학년인 1993. 6. 중순경 막장(갱)에 노력동원(지원)을 나간 것이 제일 힘들었음. 2t 가량의 탄을 광차(탄차)에 싣고 막장 밖으로 나오는 일을 하다가 같은 조 학생(문○○)이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함. 1998. 6. 경부터 약 1년간 대동강 내 중형발전소 건설에 노력동원 되어 1일 12시간씩 일하며 매일 3-4구의 시체가 나오는 노동재해를 목격. 1998. 7. 중순경 장마철 상류의 물이 범람하여 수백명의 인부(학생 포함)가 모두 익사하여 직접 시체를 처리함. 1999. 3. 경 콘크리트 둑이 무너져 미장공 3명과 보좌하고 있던 15살짜리 여자아이 3명과 남자아이 2명이 모두 사망하는 것을 목격.

(3) 고문

- (가) 1996. 4. 6. 새벽 신고인의 어머니(장혜경)와 형(신희근)이 도주를 기도하다 체포되자 공모한 혐의로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수용소의 지하 감방으로 끌고가 자백을 강요하면서 옷을 전부 벗긴 채 쇠사슬로 천장에 매달아 솟불로 등과 허리를 태우는 불고문을 가하였고, 그 불고문으로 큰 화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살아나 7개월만인 같은

해 11. 29. 에야 석방됨.

(나) 아버지(신경섭)도 같은 기간 지하 감방에서 고문을 심하게 받은 듯,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두 다리가 멀쩡하였는데 나왔을 때 보니 고문을 받고 부러진 다리가 잘 붙지 못하여 오른쪽 다리 아랫부분(정강이)이 밖으로 휘어져 있었음.

(4) 비인도적 행위

- (가) 학교 선생은 모두 보위원이 제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계획한 양의 일을 못했을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학생들을 구타함. 1989. 6. 경 인민학교 2학년 때 수업시작 전에 소지품 검사에서 8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 주머니에서 밀 이삭 5개가 나오자 지시봉으로 머리를 마구 구타하여 당일 죽게 함.
- (나) 신고인은 1996. 11. 29. 어머니와 형이 공개처형된 후 1997. 3. 경 바뀔 때까지 4개월간을 학교 선생으로부터 반역자의 아들이라고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 소변도 화장실에서 보지 못하게 하여 그냥 바지에 싸야 했음.
- (다) 변○○라는 학생은 1998. 12. 추운 날씨에 발전소 건설 노동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꽁꽁 언 철근에 혀를 내밀라고 하여 혀가 철근에 얼어붙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혀가 피투성이가 됨.
- (라) 1999. 12. 경에는 영하 15-20도의 추운 날씨에 지계를 지고 거름을 나르던 노인 4명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조금 쉬었다는 이유로 신발과 바지를 벗기고 팬티 바람으로 2시간 동안 언 무릎을 끓고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저녁 7시가 되어서는 휴게실 안의 구들바닥에 무릎을 끓어 앉히고 사람이 떨 정도로 장작을 뜨겁게 계속 때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죽게 하였음.
- (마) 2001. 2. 경 석탄가스를 마시고 사망한 송○○이라는 사람의 시체를 땅이 얼어 매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돼지거름에 넣어 재래식 비료로 처리하였음.
- (바) 2004. 11. 어느 날 오후 11시경 갑자기 보위원 2명이 나타나 이를 잡는 약이라며 20kg짜리 물통을 두 개씩 주어 여자 5명, 남자 7명을

목욕시킴. 그 결과 1주일 후 모두 고열로 수용자들이 죽어가자 트럭 한 대가 와서 모두 실어갔고 아무 소식이 없는바, 생체실험을 한 것으로 추측됨.

- (사) 2004. 여름 어느 날, 피복공장 수리공으로 일하던 중 재봉기 받침대를 떨어뜨려 받침대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담당 보위지도원의 지시로 총작업반장이 신고인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식칼로 내리쳐 절단함.

(5) 성폭력 및 성적 노예화

- (가) 신고인이 10살 때인 1992. 저녁 7시경 어머니가 보위지도원 사무실에서 청소를 한다고 불려가 성노리개로 굴욕 당하는 장면을 목격.
- (나) 1996. 9. 어느 날 신고인의 숙모(삼촌 신○○의 아내)와 사촌누나 신○○(1980년생)이 도토리를 주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경비대 2명을 만나 누나가 알몸으로 성폭행을 당한 채 기절하였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숙모는 정신이 돌아서 그 다음날 새벽 길바닥에 앉아 통곡을 하다가 어디론가 잡혀간 후 소식이 없음.
- (다) 관리소에서는 공식적인 허가 없이 임신을 하거나 수용자들끼리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즉시 사라짐. 이렇게 임신한 처녀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음. 피복공장의 경우 담당 보위지도원은 임의로 수용소 여자들 7명 정도 뽑아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자기 방 청소를 시키면서 성노리개로 삼았음. 피복공장에 있는 1년 동안 여자 3-4명이 임신해서 실종되었고, 2004. 학급 동창생인 박○○(22세)가 보위지도원 사무실 청소담당으로 뽑혀 청소를 시작한지 4달 후에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 실종된 것을 직접 목격.

(6) 살해(공개처형)

- (가) 수용소 7작업반 돈사 골안에 있는 공개사형터(2000. 이후에는 대동강 기슭 본마을 컴퓨터에서 공개처형 집행)에서는 1년에 2-3번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데, 신고인이 지하감방에서 석방된 날인 1996. 11.

29. 신고인과 신고인의 아버지 신경섭이 지켜보는 맨 앞에서 보는 가운데 어머니는 교수형에, 형은 총살로 집행하였음.
- (나) 1999. 경 수용소 공개처형장에서 여자 1명과 남자 3명이 도둑질과 말 실수로 공개처형되는 것을 목격.

다. 수용소 탈출 및 탈북 그리고 한국 입국

2004. 초부터 평양 출신 ○○○을 사귀며 바깥세상을 알게 되고, 의식이 깨어 탈출생각을 하게 되었음. 2005. 1. 2. 전기 철조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 2005. 2. 2. 중국으로 탈출. 2006. 8. 경 한국 입국.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저서 ‘세상 밖으로 나오다’(2007. 10. 20. 북한인권정보센터)
-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아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및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아동권리협약(CRC) 제2조 내지 제9조(아동권의 보호),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집회 · 결사의 자유), 제16조(사생활 등에 대한 간섭금지), 제19조(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3조(존엄성 보장), 제24조(건강권), 제27조(생활권),

정치범수용소

제28조 및 제29조(교육권), 제31조(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제32조 및 제36조(착취 금지), 제37조 및 제39조(고문 금지 및 신체의 자유), 제40조(사법절차상의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III. 북창 정치범수용소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3. 6.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 어머니 ○○○

라. 가해자

- 제18호 관리소(북창 관리소) 소장 ○○○, 담당 지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기본권 박탈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977. ○○○ 입소하여 1984. ○○○ 석방될 때까지 제18호 북창 관리소
(탄광)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이주 및 강제실종

- (가) 신고인 가족은 평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직장 상관(부국장)에게 농물을 받치지 않았다고 미움을 사서 학습강연에 5회 불참한 것을 트집잡아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물이 들어 평양에 살 자격이 없다고 부모와 5남매가 함께 제18호 관리소로 추방됨. 당시 신고인은 고등중학교 2학년(12세)이었음.
- (나) 18호 관리소는 사회안전부 7국(건설국) 소속으로서 평안남도 북창군 석산리에 위치하고, 14호 개천 관리소와 경계하고 있었음. 신고인이 수용되어 있을 당시 20만을 수용하였음(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 모임 때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항상 “득장탄광 - 북창관리소 - 20만 노동계급이 올리는 충성의 맹세문을 낭독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음). 수용자들은 1946. 신의주 학생 폭동사건 관련자들, 개성 등 6.25 이전 남한 지역에 남아 있던 월남자 가족들, 1979. 에 황해남도 연안과 배천에서 들어온 월남자 가족 1,000여 세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18호 주위에 철조망은 보지 못했으나 가시가 깔려 있는 3m 폭의 도랑이 경계선 주위에 파져 있었고, 순찰이 계속 총을 들고 돌고 있었음. 매일 07:30까지 직장(탄광)에 출근하면 인원 점검을 하고 빠진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확인을 가서 행방을 모르면 즉시 비상을 걸어 온 수용소가 추적을 하고, 잡히면 공개총살을 당했음. 남자 30세 여자 2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였음.
- (다) 수용자는 평생 수용대상인 이주민(90% 이상)과 혁명화 기간이 지나면 출소할 수 있는 대내민 및 관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주민과 대내민은 고생하는 것은 비슷하였지만 신분차별이 있어서(대내민은 당원인 경우도 있었음) 거주지역은 대내민은 평지에 있는 반면 이주민은 열악한 산등성이에 있었고, 결혼도 상호간에는 하지 않았음. 이주민 중에는 평양 적십자병원 기술부원장(기술부원장이 항일투사를 수술하다가 수술결과가 나빠서 그 항일투사가 죽었다는 이유로 반동으로 몰려 들어왔음)의 딸들 중 평양 음악무용대학 무용수

출신 미인이 있었는데(수용자 중에는 평양의 유명 배우 출신들도 많았음), 이 여자를 좋아한 한 대내민 남자는 이 무용소 출신과 결혼하기 위해 당원증을 포기하고 아주민 마을로 옮겨간 경우를 보았음. 관리성원은 관리소를 운영하는 소수의 관리일꾼으로서 안전원, 보위원, 학교 선생, 관리소장 이하 행정요원 및 그 가족들임.

(2) 박해

(가) 굶주림

배급은 15일에 한번씩 이루어졌는데, 한번의 배급량은 1주일분도 되지 않았음. 즉 1일 식사량은 쌀(10%의 입쌀과 90%의 강냉이 등 잡곡) 300g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일체 부식은 없으며, 소금은 1년에 한번 4kg, 김일성 생일에 가끔씩 주는 간장 1리터 정도가 전부였음. 나머지는 수용자들이 알아서 해먹어야 하므로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음. 보이는 대로 주워 먹었으나 풀 뜯어 먹을 기력도 없을 정도였음.

(나) 주거와 의복

집은 싸리나무가지로 천정을 만들고 벽은 싸리나무가지에 진흙을 대충 발라서 만들었으며, 바닥은 석회와 진흙을 섞어 만든 위에 세멘트 포장지로 덮어 놓아 매우 취약했음. 집은 하모니카처럼 1채의 집에 8가구가 살았고, 신고인 가족은 부모와 5남매가 방 1개에서 아주 좁게 살았음. 난방은 탄광에서 각자가 석탄을 짚어지고 와서 때었음. 의복은 일체 지급이 없어서 처음 들어 올 때 입고 온 입을 계속 입고 수선해서 있었음.

(3) 강제노동 · 강간 등 노예화

(가) 신고인은 1977. 11. 관리소 내 고등중학교에 2학년으로 들어가서 1981. 7. 졸업하였으나, 학교에 가도 혁명역사,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만 매일 암송했고(못 외우면 집에 안 보냄), 그 외에는 주로 작업에 동원되었고, 군대처럼 모이고 해치는 훈련은 철저하게 시켰음. 작업할 일이 없으면 학교 주위에 쌓았던 돌담을 헐어서 다시 건

정치범수용소

축시키는 방법으로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고 괴롭혔음. 줄을 제대로 안 선다든지 지시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마구 구타하거나 다른 학생들(1학급 학생 40여명)로 하여금 대상 학생을 차례로 때리게 하거나, 운동장을 100바퀴 돌도록 하는 등의 처벌을 가하였음.

교사는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성원(노동과장, 운수과장, 노동지도원 등)의 자녀들이 담당하여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음.

- (나) 신고인은 16세인 1981. 8. 경부터 ‘갈골갱’(18호 관리소에는 이와 같은 갱이 20~30개 있었음)에서 채탄공으로 일하다가 1982. 10. 경 종기계 직장으로 옮겼고, 다시 자동차수리공으로 옮겨서 3개월 일하고, 돌격대로 뽑혀서 시멘트 공장에서 1984. 1. 까지 일하다가 석방되었음. 채탄공의 업무가 가장 격무였음. 07:30까지 탄광에 출근(도착)해서 08:00 내지 08:30까지 작업지시를 받고, 갱속에 들어가서 4시간 걸려 막장 현장에 12:00경에 도착. 도착 즉시 점심 도시락을 먹고, 30분 있다가 채탄 작업을 시작. 오후 4시까지 일하고, 4시간 걸려서 갱 밖으로 나오는데 보통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8시쯤부터 산에서 원목을 잘라서 산 밑으로 나르는 등의 일을 하면 새벽 1~2시경에야 끝나게 됨. 아예 집에 못가고 작업 현장에서 쪽잠을 자고 다시 갱에 들어가서 채탄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음. 결국 하루 작업시간은 명색만 8시간제이고, 실제는 12시간 내지 18시간 정도가 되었음. 안전사고는 빈발하여 1주일에 평균 1건 내지 2건은 사망사고가 났고, 다치는 사람은 부지기수였음.
- (다) 관리성원은 항상 선생님으로 불리우며 최고대우를 받고 대내민이나 이주민을 자신들의 몸종이나 노예처럼 부려먹었음. 관리소의 수용자들, 특히 이주민들의 90%는 정치범의 가족들인 과부나 딸들이었는데, 관리성원의 일부는 이러한 이주민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거나 강간을 일삼았음.
- (라) 관리소 안에는 다시 교양소가 있어서 관리소 규율이나 관리성원의 지시를 어긴 경우에는 머리 깎고 1년 내지 2년 기간 수감되는데,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감 도

중 또는 수감기간이 끝난 후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음.

(4) 살해

- (가) 중국에서 살았던 신고인의 아버지는 18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과 함께 지내던 1981. 5. 25. 경 작업장 동료들과 이야기 도중 ‘조선에 괜히 나왔다. 중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이 보고 싶다’고 푸념을 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 밀고되어 그 다음날 출근 도중 보위부원에 의해 죽쇄로 채우고 차에 태워 사라진 후 소식이 없음.
- (나) ‘심산학교’ 옆의 대동강 강변에서 거의 3개월에 한번 공개처형이 실시됨. 많을 때는 한번에 5명 보통은 2명씩 공개처형을 당했음. 도주하거나 반공화국 행위를 한 죄가 가장 많았음. 총살한 후에는 시체를 거적대기에 말아서 차에싣고 가서 매장해 버림.

다. 1984. 경 석방되었는데, 1998. 경 탈북하여 2008. 한국에 입국하였음.

3. 증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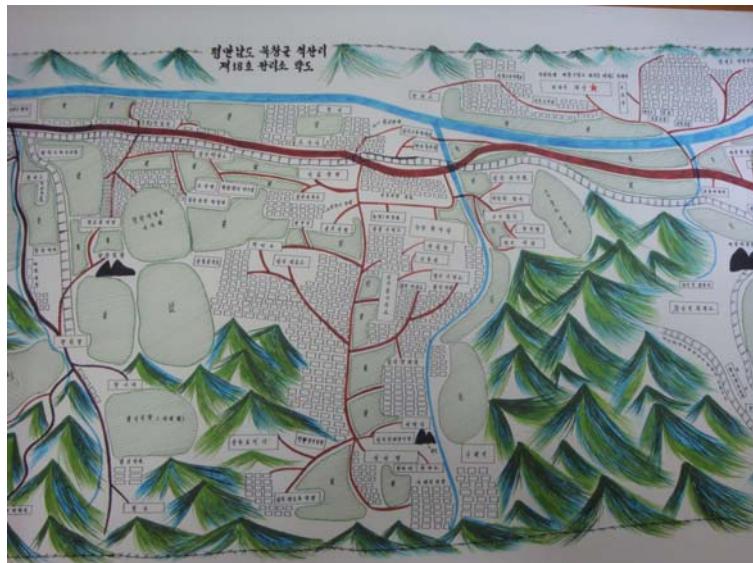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관리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아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및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

정치범수용소

- 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아동권리협약(CRC) 제2조 내지 제9조(아동권의 보호),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집회·결사의 자유), 제16조(사생활 등에 대한 간섭금지), 제19조(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3조(존엄성 보장), 제24조(건강권), 제27조(생활권), 제28조 및 제29조(교육권), 제31조(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제32조 및 제36조(착취 금지), 제37조 및 제39조(고문 금지 및 신체의 자유), 제40조(사법절차상의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1조(표현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권), 제36조(가족권)



북창 정치범수용소 약도의 일부분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4. 19.

나. 신고인

- 김혜숙(가명,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 부모 및 아들과 딸

라. 가해자

- 제18호 관리소(북창 관리소) 담당 지도원 ○○○ 및 무산군 안전부 구
류장 계호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기본권 박탈하고, 구류장에
서는 고문 시행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 1975. 경부터 2001. 2. 16. 까지 제18호 북창 관리소 및
2007. 11. 경 무산군 안전부 구류장

(2) 18호 관리소의 위치, 규모 등

18호 관리소는 안전부 소속으로서 평안남도 북창군 석산리에 위치하고 100리(40km) 구간이었는데 1989. 경 60리 구간을 해제하고 40리 구간으로 면적이 줄어들어 북창군 봉창리에 수용자들을 몰아넣었음. 18호 관리소는 다른 관리소들과는 다른 특색을 갖고 있었음.

즉 18호 관리소 내부는 보통 농촌마을과 같이 분주소(파출소), 학교, 시장 등이 있고, 모범 정치범들은 당에 입당하거나 남자 30세 여자 2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였음. 다만 주위에 전기가 통하는 철조망이 4m 높이로 주위에 쳐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음. 관리소는 정치범인 ‘이주민’과 정치범 신분이 해제된 ‘해제민’, 원래부터 정치범이 아닌 일반인인 ‘대내민’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2. 8. 경 신고인이 18호 관리소를 출소할 당시 관리소가 이주민의 수를 27,000여명으로 발표한 바 있음. 안전원·보위부원·관리일꾼 등은 대내민에 속함. 대동강 건너에는 더 가혹한 보위부 소속 14호 관리소가 위치했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이주 및 강제실종

신고인은 평양에서 고등중학교 1학년에 다니다가 13세인 1975. 경 이미 할머니와 부모님 및 두 동생이 1970. 10. 경 추방되어 있던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로 추방됨. 신고인 가족이 위와 같이 추방된 이유는 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한 후 막내아들인 신고인의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출소한 이후에 알게 됨. 아버지는 1974. 12. 7. 위 수용소에서 다시 보위부원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서 행방불명됨.

(2) 박해 및 노예화

- (가) 집은 장판이 없어 날바닥에서 기거했고, 7식구(1970. 부터 1974. 사이에 두 동생이 더 태어났음)에게 매월 강냉이 8kg, 소금 1인당 600g, 반년에 한 번씩 1인당 700g의 된장을 각 배급받았기 때문에 항상 굶주렸음. 산에서 뜯어온 나물이나 풀을 넣어 만든 죽으로 끼니를 때움. 밤에는 탄광에서 석탄을 배낭에 담아 가지고 와야 그 석탄을 때어 밥을 지어먹을 수 있음. 수용소에서는 굶어서 죽거나 독풀을 잘못 먹어 죽기도 하고, 온 가족이 연탄가스에 죽는 일이 허다 했음. 자살한 자는 반역자로 간주되어 마대자루에 말아 어느 산속에 갖다 버리고 남은 가족들도 탄압을 받음. 1979. 5. 31. 어머니는 43세 나이에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한 달 후 할머니도 사망. 1996. 중순부터 배급이 완전히 끊기고 노임도 2-3달에 한 번 지급되어 당시 수용소에서 무수히 사망.
- (나) 3세대를 한 조로 묶어서 서로 감시를 하게하고, 간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노동교양소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음. 학교는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진흙을 파서 탄광으로 옮기는 일을 함. 학교 교원들은 수용소의 행정일꾼이나 안전부원, 보위부원의 자녀 등이 담당하였는데, 이주민이라고 친대하면서 지시봉으로 수시로 학생들을 구타함. 정치범(이주민)들이 안전부나 보위부 지도원 앞에 설 때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뒤로 하고 공손히 서있어야 했음. 신고인은 1979. 8. 30. 학교를 졸업하고 1990. 까지 11년간 수용소 내에 있는 ‘심산갱’ 채탄공으로 배치되어 캐낸 석탄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였음. 작업복도 없고 마스크도 없이 일한 후유증으로 지금도 진폐증을 앓고 있음. 하루 3교대 8시간의 일 외에도 탄광에서 쓸 통나무를 산에 올라가 구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작업시간은 16시간 내지 18시간에 이르렀음. 지각 3번 하면 하루치의 쌀 배급표가 지급되지 않고 결근하면 노동교양소로 보내므로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음.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에는 보위지도원이나 담당 안전지도원의 집에 불려가 농사철에는 김매기, 석탄 나르기 등의 작업에 동원됨. 노동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채탄공으로 일하던 남동

정치범수용소

생도 1984. 9. 경 탄광사고로 사망함.

- (다) 신고인은 1990. 경 같은 정치범인 김효방(1947. 2. 24. 생)과 결혼하고 부양대상자로 집에 있으면서 노동에 종사하였으나 남편이 1997. 5.경부터 펠라그라에 걸린 후부터는 신고인이 세대주로서 건설사업소 노동자로 배치되어 아래와 같이 쉬는 날 없이 중노동에 시달림. 07:30까지 출근, 08:00까지 하루 과업지시 받음, 08:00-12:00 오전 작업, 12:30까지 점심식사, 16:00까지 오후 작업, 16:00-17:00 일정 총화, 17:00-20:30 잔업, 20:30-21:00 작업총화, 21:00 퇴근
- (라) 1997. ~ 2000. 사이에 수감되었던 남포시 와우도 구역 행정위원회 엄정도 위원장 가족은 신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었는데, 엄정도는 ‘영등갱’ 굴진공으로 일하다 낙석에 맞아 쇠골이 부러졌고, 그 아들 철민이는 ‘한령갱’에서 일하다가 한쪽 다리가 절단됐고, 큰 딸은 ‘한령갱’ 굴진공으로 일하다 낙석이 허리로 떨어져 척추가 손상되어 절름발이가 됨.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일하던 문성술은 1997. 경 입소하여 남편이 일하던 ‘영등갱’ 굴진공으로 일하다가 2000. 경 사고로 허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됨(문성술은 2006. 경 해제되어 2008.경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함).

(3) 비인도적 행위

○○○ 안전부 지도원(대위) 부부와 ○○○ 보위부 지도원(대위, 당시 40 대 정도)은 악질로서 무수한 수용자들을 탄압했음. ○○○은 특히 1991. 경부터 2002. 경까지 근무했는데, 수시로 신고인에게 두 손을 뒤로 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앞에 한 다음, “대가리 들고 아가리 벌려라” 하고는 가래 침을 신고인의 입 속으로 탁 뱉어 넣고 신고인이 그 가래침을 꿀떡 삼키면 때를 안 때리고, 신고인이 조금이라도 짹그리거나 신고인도 모르게 구역질을 하면 온갖 구타를 다 가했음.

(4) 살해

(가) 1년에 20-30명은 공개처형되고, 많을 때는 한 달에 7-8명씩 공개처

형 되었음. 굶주림으로 강냉이 등 식량을 훔쳤다가 처형된 경우가 많음. 친구였던 정선화 부부도 먹을 것이 없어 병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총살당함. ‘한재경’에서 일하던 동료 김영숙의 어머니는 딸인 김영숙이 계속 유산 끝에 낳은 세 번째 아이(손자)마저 죽어 점쟁이에게 점을 보자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함.

- (나) 1997. ‘심화조’ 사건(김정일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벌인 대규모 숙청사업) 당시에는 국가보위부 지도원, 평남도당 책임비서, 21호 수용소장, 23호 안전부장, 개성시당 책임비서, 강원도당 책임비서, 증산군당 책임비서, 19호 수용소장 등이 수감되었다가 1998. 여름경 비공개로 총살당함. 당시 신고인은 작업반의 기와반장으로서 기와 재료인 모래를 대동강에서 채취하였는데, 대동강변에서 총살형을 집행하는 총소리를 무수히 들었음. 당시 심화조 사건으로 20,000여 명이 죽었다고 함. 보위부 14호 수용소 직맹위원회장을 하다가 심화조 사건으로 들어온 박성칠이라는 사람(신고인이 기와반장을 하며 직접 데리고 있었음)은 지은 죄가 없다면서 몇 번씩 신소편지를 올렸다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소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999. 경 공개총살되었음.

다. 출소, 탈북 및 재입소

(1) 구류장에서의 비인도적 행위

- (가) 당위원회에 10년간 계속하여 집에서 키운 토끼나 개, 돼지를 바치는 등 놈물을 주어 2001. 2. 16. 수용소 출소를 뜻하는 ‘해제’를 받음. 2001. 4. 경 남편이 사망한 후 2002. 8. 16. 북창 18호 관리소를 출소하였고, 2003. 8. 17. 두 아이마저 홍수로 행방불명되자 2005. 8. 경 두만강을 건너 1차 탈북.
- (나) 2007. 10. 말 다시 입북했다가 체포되어 무산군 안전부 분주소를 거쳐 안전부 구류장에 2007. 11. 3. 까지 구금됨. 위 구류장에서는 두 여자 계호원이 여자 수감자들에게 모든 옷을 벗기고 양팔과 양 다리를 벌

리고 ‘펌프질’ 즉,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반복적으로 50회 이상 시켜서 자궁이나 항문에 숨겨놓은 돈이 떨어져 나오도록 하였음. 또 시멘트 바닥에 누우라고 하고는 쇠꼬챙이로 자궁을 벌려놓고 돈을 감추었는지 살피기도 했음. 생리를 하는 여자는 생리대로 차고 있던 가제천까지 꼬챙이로 하나하나 들추고 자궁에 손을 넣어 돈을 찾았음. 돈이 있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신고인은 중국에서 번 돈 8,000원을 8개로 나누어 얇은 비닐에 싸서 4개는 삼키고 4개는 자궁에 숨기고 있었는데, 분주소를 거쳐온 덕에 ‘水泵질’을 면제받아 간신히 돈을 지켰음. 그밖에 구류장에서 하루 종일 두 다리를 모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면을 보고 앉아있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하였음.

(다) 2007. 11. 경부터 청진 도집결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2007. 12. 25. 복창 18호 관리소로 호송됨.

(2) 인육사건 목격

2007. 12. 하순부터 18호 관리소 ‘봉창’ 분주소에서 대기 중인 2008. 1. 25. 경 수용소 내 ‘안촌마을’이라는 곳에서 아이 엄마가 배가 고파 16세 아들을 도끼로 찍어 죽여 살을 떼내어 이를 돋지고기 장사꾼에게 넘겨주고 강냉이 13kg을 받은 사건이 발생. 신고인은 그 아이 엄마와 아이 시체를 직접 목격. 며칠 후 ‘상리’ 농촌 마을에서도 아이 엄마가 9세 딸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서 엉치살을 뜯어먹다가 체포된 사건이 발생. 그 아이 엄마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눔.

(3) 재탈북 및 한국 입국

2008. 3. 2. 재탈북하여 2009. 3. 12. 태국을 거쳐 2009. 4. 경 한국에 입국.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인의 저서 ‘눈물로 그린 수용소’(2011. 4. 5. 시대정신). 월간 NKvision 통권 21호(2011. 3.) 8-12쪽, 주간조선 2151호

(2011. 4. 11 ~ 17) 10 ~ 13쪽

- 같은 관리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아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노동권),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2조(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자체 없이 추진할 의무), 제11조(임신관련 여성 보호)
- 아동권리협약(CRC) 제2조 내지 제9조(아동권의 보호),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집회·결사의 자유), 제16조(사생활 등에 대한 간섭금지), 제19조(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3조(존엄성 보장), 제24조(건강권), 제27조(생활권), 제28조 및 제29조(교육권), 제31조(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제32조 및 제36조(착취 금지), 제37조 및 제39조(고문 금지 및 신체의 자유), 제40조(사법절차상의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1조(표현

정치범수용소

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권), 제36조(가족권)



북창 정치범수용소에서 신고인의 입에 침을 뱉는 인권침해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12. 13.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과 그의 가족

라. 가해자

- 제18호 북창 관리소장 ○○○ 및 담담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기본권 박탈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목격한 날짜와 장소

2001. 5. 경 18호 북창 관리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인권침해를 목격하게 된 경위

신고인은 탈북 전 북한의 ○○○ 요원으로 근무한 바 있음. 정치범수용소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2001. 5. 경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음.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를 관리소라 하는데, 북한 사회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거나 계급적으로 북한사회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자들을 특별히 억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신고인의 친구 중에는 북한의 ○○○구역 인민위원장은 하던 ○○○라는 사람이 있었음. 그의 아버지는 6.25전쟁 때 공을 많이 세워 2중 영웅의 칭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평양의 큰 기계공장의 지배인 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1998. 경 이른바 ‘심화조’ 사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여 사망하고, 그 아들 ○○○는 처와 강제이혼당하고 나머지 가족 ○○○와 함께 18호 북창 관리소에 갇히게 되었음.

신고인은 친구 ○○○을 도울 방도를 모색하던 중 과거 함께 북한군에서 ○○○으로 복무하던 ○○○가 18호 북창 관리소 보위지도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리하여 2001. 5. 경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국가안전보위부의 승인을 받고 북창 18호 관리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들은 철저하게 외부인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었음.

(2) 인권침해의 실상

(가) 강제실종 및 강제이주

18호 관리소 입구에서 보위지도원 ○○○의 집까지 가는데 약 10km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 차례의 검문을 받고야 도착할 수 있었음.

점심식사를 보위지도원 ○○○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같이 하며 그 곳 보위원의 생활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위 보위지도원은 보위원이 18호 관리소에서 먹고사는 것은 북한군에서 근무할 때보다 훨씬 낫지만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였음. 한 시간정도 ○○○의 집에 머물면서 가지고 갔던 고급술, 담배, 당과류 등

을 관리소 소장과 보위부장에게 나누워 주고 피해자 ○○○을 만날 수 있었음.

(나) 박해 및 노예화

피해자의 집에 가보니 집 벽체는 진흙으로 빌라져 있고 지붕은 풀로 덮혀 있었음. 집에 들어가니 쇠가마 2개가 걸려 있고 부뚜막과 방안이 연결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들어앉으면 좁을 정도로 작았음. ○○○의 체구는 관리소에 들어가기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있었음. 그의 말딸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무너지는 탄더미에 깔려 오른쪽대퇴부가 부러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뼈가 잘못 붙어 절름발이가 되었고, 그의 의아들은 광차에 치어 발목이 부러졌지만 아무런 치료도 없이 무작정 무릎아래까지 절단하여 짹지팡이를 짚고 있었음. 위 피해자 ○○○은 이 수용소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족이 다 모여 앉았다고 하였음. 평시에는 가족들이 같이 생활할 수 없도록 탄광에서 일하는 교대시간을 따로따로 해놓아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음. 정말 눈물이 나고 감정이 북받쳐 무어라고 위로도 할 수 없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는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꼭 해명해서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엉엉 울며 애원하였음. 그의 집 마당에 잠깐 앉아 가져갔던 사탕, 과자 등을 먹이면서 이야기 하는데 약 50m거리에서 수감자들 30여명 정도가 경비원 4명의 인솔 하에 지나가고 있었음.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몰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고 입은 옷은 속옷도 없이 회색 죄수복 차림이었음.

(다) 비인도적 행위

보위지도원 ○○○는 항상 1.2m정도 길이에 마디가 무려 8~9개가 붙어있는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녔음. 그 몽둥이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감싸고 있었음. 신고인이 그에게 지팡이에 묻은 것이 무엇인가고 묻자 그는 죄수들을 때려 그들의 피가 묻은 것이라고 하였음. 마디가 나온 지팡이로 머리를 잘못 때려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그는 주저 없이 “우리는 더 많이 저런 놈들을 때려죽여야 실적이 올라 승진한다”고 하였음. 보위지도원 ○○○는 신고인과 군복무를 함께 할 때 마음이 너무 순해서 보위지도원 재목

이 못 된다는 평을 들었지만 수용소 선생(수용소에서는 담당보위지도원을 선생이라고 함) 2년의 생활에 그의 눈빛은 너무나 매서워졌고 그의 처의 말에 의하면 집안에 들어와서도 예전과 다르게 언행이 쌩스러워지고 폭행을 자주 한다고 하면서 무섭다고 말하였음.

신고인이 ○○○에게 이곳에 몇 명이나 있는가고 물었더니 2만명 정도가 있다고 하였음. 죽으면 내보내는가 물었더니 그는 이놈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폐개에 처넣어 매몰한다고 말하였음. 나는 그곳에서 잘 차려입은 나의 모습과 ○○○의 모습이 자꾸 대조적으로 느껴져 약 2시간정도 지체하고 그곳을 떠났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아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7조(노동권), 제10조(가족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IV. 외령 정치범수용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2. 4.

나. 신고인

- 안명철(남)

다. 피해자

- 별지 수감자 명단 기재 피해자

라. 가해자

- 제11호, 13호, 22호, 26호 각 관리소 소장 ○○○, 각 담당 보위원 및 경비대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기본권 박탈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목격한 날짜와 장소

1987. 5. 4. 부터 1994. 9. 22. 까지 11호, 13호, 22호, 26호 관리소에서 목격하였음. 후에 11호, 13호, 26호 관리소는 해체되었음. 예컨대 13호 종성 관리소는 1990. 12. 경 해체되어 종성은 사회지역이 되고, 그 수용자들은 다

정치범수용소

른 관리소로 분산 수용되었음. 보위원과 경비대도 다른 관리소로 이동하였는데, 신고인은 22호 회령 관리소로 이동하였음. 신고인이 가장 오래 근무한 22호 관리소는 길이 50km, 폭 40km에 걸치고, 약 1,000명의 경비대원들과 5-600명의 행정요원, 정치범 가족 약 50,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었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인권침해 교육

신고인은 국가안전보위부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경비대 경비병(운전병)으로 입대하여 1987. 5. 4. 부터 1987. 6. 말경까지 11호 함북 경성 관리소에서 신병교육을, 1987. 7. 1. 부터 1987. 8. 4. 까지 13호 종성 관리소에서 나머지 신병교육을 받았고, 그 후는 경비대원으로 1994. 9. 22. 까지 13호, 22호, 26호 등 관리소를 전전하며 8년간 근무하였음. 그 8년 동안 받은 주된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과 정치범(이주자로 불렸음)들에 대한 투쟁정신이었음. 정치범들은 계급적 원수들이고 국가반역자들이므로 도주하거나 반항하면 바로 사살하고, 평소에도 이들을 개돼지처럼 다루어야 하고, 절대 동조하거나 인간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음.

(2) 박해 및 노예화

(가) 신고인이 근무했던 관리소는 모두 당과 수령을 배반한 악질적인 종파분자라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가족단위로 수용하고 있었음. 결혼은 허용되지 않았고, 특히 일을 잘하고 자기들끼리의 잘못을 잘 고자질하면 특혜결혼(표창결혼)을 시켰다(26호 관리소는 감방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외). 그러나 그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1주일 또는 1달에 한 번씩만 동거케 하였음. 어느 관리소나 김일성 명의의 “인민의 계급적인 원수들에게 프롤레타리아 맛을 톡톡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구호 및 김정일 명의의 “도주한 놈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한다“는 구호를 관리소 내 경비대 병영에 게시하고 있었음.

- (나) 관리소에서 정치범들은 작업장 등 아무 곳에서나 경비대나 보위원을 “선생님”으로 불러야 하고, 만나게 되면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90도 꺾어 인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구류장에 끌려가서 폐인이 되어 죽게 됨.
- (다) 정치범가족들의 집은 일명 하모니카 집으로서 1개 동에 5-6가구가 거주하고, 흙벽돌로 지었으나 부실하여 소 외양간이나 돼지우리처럼 생겼음. 수용소에는 여자들이 유방을 가릴 천이 없음은 물론 생리를 해도 씻을 천 조각 하나 없어 바지에 그대로 묻히고 남자 앞에서도 수치심 없이 대소변을 보는 등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음.
- (라) 관리소 안에는 정치범들이 먹을 것이 턱 없이 부족하여 정치범들은 항상 먹을 것이 있으면 눈을 피하여 입에 넣으려고 하였음. 풀을 뜯어먹고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며, 뱀, 개구리, 쥐를 닥치는 대로 잡아 먹어 쥐들은 거의 멸종상태에 있었음. 1987. 7. 경부터 1990. 12. 경 까지 13호(함북 종성) 관리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신병교육을 마치고 처음 13호 관리소에 도착했을 때 정치범들이 마치 걸어 다니는 해골이나, 누더기를 걸친 불구자들처럼 보여 충격을 받은 바 있음. 신고인은 1991. 5. 부터 1991. 11. 까지 22호 관리소 경비대 돈사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경비대 갱도공사에 동원되었던 탄광지구 6갱의 정치범이 3달 동안 매일 돼지먹이를 몰래 먹어 돼지들이 크지를 못한 적이 있음. 또 22호 관리소에 근무할 당시인 1994. 5. 경 마침 신고인이 차량청소를 하다가 근처인 관리소 본부 경비대 식당 오물통(오물 썩는 냄새가 지독하게 났었음)에서 여자 정치범 2명이 흘러내린 국수 자락 몇 개를 건져 먹으려다가 지나가던 보위원이 발로 차 넣어 버리는 바람에 오물통에 빠져 죽으려던 것을 남자 정치범들이 겨우 구출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음.

(3) 고문

- (가) 종성 13호 관리소 동포지구 구류장은 감방마다 그 크기가 2×2m에 불과하고, 구류장에 들어가면 우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삭발시킨

후에 무자비하게 때려 초죽음을 만들고 그리고 두 무릎 사이에 4각 각자를 끼우고 24시간 동안 끓어 앓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불 손하게 행동하면 사정없이 쫓았음. 식사는 하루 100g의 콩 주먹밥과 시래기 소금국을 주는데, 이것도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움직이면 처벌로 밥을 주지 않음. 그래서 정치범들은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고 썩어 들어가도 오직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참아냄. 그러다가 3개 월간 구류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완전 폐인이 되고, 들것에 실려 나가 5개월이 지나면 죽고 맘. 다른 관리소 구류장 사정도 비슷하였음.

- (나) 1988. 경 재일교포 출신 여자 정치범 김○○(26세)이 자본주의 사상이 덜 빠졌다는 이유로 13호 관리소 구류장에 갇혀 있었음. 구류장 계호원 최○○ 특사가 이를 동정하여 김○○과 성관계를 갖고 일본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발각되었음. 보위과장, 정치부 부장(중좌), 교양지도원(소좌) 등은 김○○에게 온갖 매질과 길이가 1m 되는 산 구렁이를 넣는 등의 끔찍한 고문을 가하여 사망케 하였음. 도움을 준 최○○은 3달 뒤 철직·출당·생활제대 시켜 탄광으로 쫓아 버렸음.
- (다) 관리소 구류장은 보통 그 곳에 갇힌 정치범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30분간 햅볕쪼이기를 시키는데 이 때 정치범들은 해골 같은 몰골로 겨우 밖으로 나옴. 굶주림에 시달리는 정치범들은 햅볕쪼이기 시간에 경비를 서는 계호원 몰래 닥치는 대로 풀을 뜯어 먹음. 그러다가 들기면 흠씬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기도 함. 1991. 9. 경 22호 관리소에서 목격한 일임. 경비대 본부와 구류장은 붙어 있어서 신고인은 구류장에 갇힌 정치범들이 햅볕쪼이기 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굶주린 49세쯤 되는 남자 정치범이 풀을 뜯어 입에 넣다가 발각되자 무장 계호원은 “이 개 같은 영감탱이!”하면서 AK 자동소총 개머리판으로 그 정치범의 턱을 후려갈기고 다시 등허리를 세게 내려쳐서 즉사하게 하였음. 그러나 그 계호원은 아무런 처벌 없이 계속 구류장 계호원으로 근무하였다.

(4) 비인도적 행위

- (가) 1987. 8. 경 13호 관리소 경비대 부소대장 김○○은 19반 통계원 정치범 최○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케 하였는데, 관리소에서는 정치범의 태아를 꺼내어 개에게 던져 주어 살해하였음.
- (나) 1988. 4. 중순쯤 어느 날 13호 관리소 경비대 소대장 최○○ 중위는 근처에 있던 정치범 달구지공 10명을 2명씩 3m 간격으로 운동장에 세워놓고 포승 끈으로 팔목과 발목을 묶고 눈은 발싸개(천으로 된 군인용 양말 대용)로 싸맨 다음 이들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김○○ 상등병, 권○○ 상등병 등 소대원들로 하여금 45도 후려차기와 360 도 돌려차기 등의 격술훈련을 시켜 정치범들의 갈비뼈나 턱뼈가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중상을 입혔음.
- (다) 1989. 9. 경 13호 종성 관리소에서 경비대 식량창고와 보급창고에 불이나 200여명의 정치범들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중 5명의 정치범이 몸속에 양말이나 목달개(군복 상의 목 부분에 덧대주는 흰 천), 발싸개를 감췄다는 이유로 구류장으로 끌고 가 3달간의 고문으로 폐인이 되게 하였음. 특히 그 중 여자 정치범 1명은 생리대로 쓰기 위해 경비대원들의 목달개를 훔쳐 가랑이에 숨겼다는 이유로 수많은 경비대원과 정치범들이 보는 가운데 나체로 만들어 모욕을 하였음.
- (라) 22호 회령 관리소 중봉병원(가족병원)에는 군의 10명, 간호원 3명이 있었으나 군의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온 사람들기 때문에 수술경험 이 없었음. 군의들은 정치범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아 마취도 시키지 않고 닦치는 대로 째고 자르곤 했고, 여기서 익힌 기술로 보위원들과 가족, 경비대 요원들을 치료했음. 1991. 경 24세의 정치범 김복남은 눈에 다래끼가 났을 뿐인데 우 군의가 마취도 하지 않고 억지로 수술을 하여 극심한 고통 끝에 사시(斜視)로 만들었고, 김경찬 정치범에게는 마취도 없이 맹장수술을 하고 대충 꿰매는 바람에 오른 쪽 배는 마치 뱀이 꿈틀거리며 앓아 있는 것처럼 만들었음.
- (마) 1993. 5. 경 13호 회령 관리소 탄광(1갱)에서 갱도 화재가 나자 1갱 담당 보위원 김○○ 소좌와 보위과 담당 리○○ 중좌는 화재 확산방

정치범수용소

지를 위해 갱 입구를 폭파시켜 그 안에 있던 정치범 50여명이 불에 타 죽거나 가스에 질식사하게 만들었음. 이를 만류하던 30대 남자 정치범은 김○○ 소좌가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현장에서 즉사하였음.

(5) 성폭력 및 성적 노예화

- (가) 어느 관리소에서나 임신한 처녀 정치범은 비밀처형되고, 상대방 남자는 그가 정치범인 경우에는 그 역시 처형되며, 상대방이 경비원이나 보위원인 경우에는 그들의 계급, 당성, 파급효 등에 따라 출당·철직 등의 처벌수위가 결정되었음. 일반적으로 고급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음. 관리소 작업반마다 있는 행정간부인 통계원, 확인원, 인민반장(작업반장은 일 담당 정치범 간부)은 모두 20대의 얼굴 고운 처녀 정치범들이 담당하였음. 이들은 담당 보위원의 성노리개이자 정보원이며, 보위원의 집으로 몰래 가져가는 식량, 채소, 과일, 담배 등을 쟁겨주는 아첨꾼들임.
- (나) 13호 관리소 풍계지구 17반 지도원은 자기 담당 작업반 내의 여자 정치범을 모두 성노리개로 삼았음. 1989. 가을경 통계원을 하던 여자 정치범이 위 지도원의 아이를 임신하자 위 통계원을 조사하던 보위 1과 계호원은 칼로 여자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밟아 죽였고, 그로 인해 그 여자도 죽고 말았음.
- (다) 1992. 10. 어느 날 22호 관리소의 사을지구 1작업반 담화실에서 1작업반 담당 보위원 한○○ 소좌가 의자에 앉아 낚싯대처럼 만든 막대기에 끈을 끓어놓고 그 끝에 돼지비계 냉어리를 매달아 여자 정치범인 함○○을 나체로 만들어 놓고 인간낚시를 즐기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였음. 함○○은 개처럼 네 걸음으로 위 비계 냉어리를 먹으려고 개구리 뛰듯이 하고 보위원은 낚싯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희열을 맛보고 있었음.

(6) 살해

- (가) 관리소에서는 공개처형이 무수히 실시되었다. 특히 1987. 7. 초 13호

관리소 동포지구 운수직장 수리공인 27세의 어느 정치범은 경비대 지프차 580131호를 타고 관리소를 탈출하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음. 위 정치범은 두만강가에 이르자 몰고 간 차를 두만강에 처넣고 중국으로 넘어 갔으나 1주일만에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음. 악에 바친 13호 관리소장은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정치범의 코를 쇠줄로 깨고 발뒤축에 대못을 박은 다음 다른 정치범들을 동원하여 돌로 때려 죽이게 했음. 신고인은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년 후인 1990. 5. 경부터 위 정치범이 탈출에 사용한 바로 그 지프차를 운전하게 되어 위 사건은 뚜렷이 각인되고 그 차량번호까지 기억하게 되었음.

- (나) 1988. 5. 중순 어느 날 02:00 - 04:00 사이에 13호 관리소 대대 정문 보초 근무를 서다가 국가보위부 제3국 골짜기(함북 온성군 종성노동지구 ‘죽기골’이라는 산골짜기)에서 밤마다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음. 보초장 김○○은 그것이 바로 소문만 듣던 죽은 사람을 태우는 비밀처형장의 화장 연기라고 말해주어 들은 바 있음. 1990. 10. 경부터 13호 관리소는 위치 이동 작업을 하였는데, 위치 이동 기간인 1990. 11. 경 원래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던 13호 관리소 차단초소(국가보위부 제3국 지소가 있는 방향의 초소)의 철조망 해체를 위하여 3국의 ‘죽기골’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곳의 어느 무너져 내린 동굴 안에서 사람의 핏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곳이 매일 밤 화장 연기가 피어오르던 비밀처형장임을 짐작한 바 있음.
- (다) 그밖에 13호 관리소의 소백령초소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온석 고지’라는 특이한 산에 비밀처형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신고인이 1989. 경 어느 날인가 위 소백령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초소 방벽 쌓기를 위해 돌이 필요해서 온석고지에 올라갔다가 머리가 돌에 짓이겨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여자 시체 등 많은 시체를 발견한 바 있음. 또 1989. 5. 경 어느 날 소백령초소 정문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데 온석고지 쪽에서 여러 발 총을 쏘는 바람에 그 총탄이 보초막 주변까지 날아와 이를 피하기 위해 상관의 허가를 받아

보초막 안으로 피신하기까지 했음. 그 후 1989. 경 겨울 어느 날 보위1과에서는 소백령초소 재건축을 위하여 10명의 정치범들을 동원하여 3일에 걸쳐 온석고지에 방치되어 있던 비밀처형된 무수한 시체들을 트럭으로 옮겨서 화장해 버린 바 있음.

- (라) 신고인은 1991. 1. 경 13호 종성 관리소에서 22호 회령 관리소로 이동하여 와서 구류장에 붙어 있는 관리소의 탄약고 보초를 서게 되었음. 그곳에서 신고인은 매일 저녁부터 날이 샐 때까지 옆 담 너머에서 관리소 보위과 계호원들이 구류장 정치범들을 두들겨 패는 소리와 매를 맞고 내지르는 정치범들의 비명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였음. 1991. 1. 어느 날 저녁에는 계호원 리○○ 특사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울부짖는 여자 정치범(귀국한 재일동포의 일본인 처)을 몽둥이로 때리며 계속 고문을 가하여 결국 죽인 적도 있음.
- (마) 1991. 1. 경 22호 관리소 경비대 운수분대 분대장 상사 주○○은 탄광지구에서 석탄을 싣고 내려오다가 탄광지구 6개 남자 정치범을 고의적으로 치어 죽였음. 그 정치범은 웃도 제대로 입지 못한데다가 영하 30도인 날씨 때문에 귀가 시려 귀를 손으로 막고 가다가 차 경적소리를 듣지 못하였는데, 주○○은 경적을 울렸는데도 정치범이 길을 비키지 않자 “경비대 선생님 차가 지나가는데 길을 비키지 않아?”하면서 그대로 깔고 지나가 그 자리에서 정치범을 즉사케 하였음. 신고인은 바로 뒤에서 차를 몰고 따라 가며 목격하였는데, 주승철은 그 후 일주일간 운전정지와 사상충화를 받았을 뿐 그 다음해인 1992. 7. 경에 평양기계대학에 입학하고 입당까지 했음.
- (바) 22호 관리소에도 남석지구 ‘수골’ 골짜기에 비밀처형장이 있어서 ‘송장골’, 또는 ‘까마귀골’이라고 불렸음. 1991. 3. 말 신고인의 경비대대가 ‘송장골’에서 행군훈련 중 숙영준비를 위해 땅을 파다가 여러 곳에서 시체들이 나와 부득이 대대 숙영자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 적이 있음. 이듬해 1992. 3.에는 작년에 갔던 곳에서 500m 떨어진 더 깊은 곳에 숙영자리를 잡았으나 그곳에서도 삽자루가 박힌 나체의 여자 시신(사율지구 3반 관리담당 보위원 최○○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했다는 이유로 보위과장에 의하여 삽자루로 살해된 여자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정치범임을 1992. 6. 경 담당 보위과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음), 목과 팔이 없는 시체, 맷돼지가 뜯어 먹다 만 시체 등이 매장도 되지 않은 채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대가 즉시 철수한 바 있음. 1992. 6. 경에는 보위과장(상좌)으로부터 야유회 자리에서, 또 그 무렵 보위1과 박지도원으로부터 그의 집 방문 자리에서, 각각 그들이 직접 시행한 여러 정치범들에 대한 비밀처형의 경험담을 들은 바 있음.

다. 관리소 탈출 및 탈북 그리고 한국 입국

1994. 9. 경 관리소를 탈출하고, 이어서 탈북하여 1994. 10. 경 한국에 입국.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인의 저서 ‘완전통제구역’(2010. 2. 10. 도서출판 시대정신)
- 신고인의 관리소 탈출 직후인 1994. 9. 경 중국 연변에 살포된 신고인에 대한 수배전단
- 신고인이 탈북시 휴대한 북한군 물품
- 이상봉, 내가 참가한 수용소해체작업(NO FENCE vol. 12, 2011. 5. 4-6쪽, 북한인권시민연합 발행 북한인권 154호, 2011. 5. 표지 참조)
이상봉은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건너간 조총련계 인사의 아들로서(이른바 귀국자) 1990. 3. 경 제11호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작업에 참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2011. 4. 23. 일본 와세다 봉사원에서 개최한 NO FENCE 제3회 총회에서 중언한 바 있다.

제11호 정치범 수용소는 청진 경성에서 트럭을 타고 서쪽으로 2시간 30분 가량 달리면 나오는 관모봉(해발 2,540m) 중턱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치범과 그 가족 38,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김일성 별장을 짓기 위해 작업 직전에 제22호(회령)와 제16호(화성)로 이송하고 철거작업을 하였다.

정치범들이 살던 곳은 반 평 남짓한 반 지하방인데 중간에 정치범이

기르는 돼지우리가 있어서 정치범끼리 대화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었다. 그 돼지를 보위원들이 쓸 수 있도록 10개월 안에 100kg으로 살찌게 하는 것이 정치범들의 임무였다. 그곳에는 벽돌공장도 있었는데, 어린이용 호미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아 어린이들도 벽돌을 만드는데 동원된 것이 분명한 듯 했다. 주목되는 것은 곳곳에 150m 가량의 땅굴이 파여 있는 사실이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정치범들을 그 땅굴 속에 몰아넣고 폭파해 증거를 없애 버리기 위해 만든 곳이라 했다. 훑을 덮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게 일이었다. 그리고 백두산 아래 삼지연과 동해안 주을온천을잇는 도로가 이곳을 지나서 건설되었다.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6조(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아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조(자결권), 제2조 제2호(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및 제7조(근로권), 제10조(가족권), 제11조(생활권),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 제2부 ■■■

교화소



2012. 3. 15.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I . 전거리 교화소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9. 14.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합경북도 무산군 인민재판소 판사 ○○○, 중앙검찰소 합경북도 무산
군 검찰소 검사 ○○○
-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 교화국 제12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안
전원 등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의 두 차례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어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8. 11. 재판소, 2008. 2. 재판소
- 1998. 12. ~ 2000. 7. 2008. 3. ~ 2010. 6. 전거리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1998. 11. 신고인은 비법월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산군 인민재판소에서 교화소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08. 3.에는 가족의 비법월경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은닉불신고죄로 역시 교화소 3년형을 받았음.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도 없었음. 재판기록은 대충 읽어주고는 내용을 보겠는가라고 물어보는데, 각본을 미리 짜고 진행을 하니 신고인이 내용을 보아봤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므로 ‘됐습니다’ 하니 종결하였음.

(2) 1차 수감시 인권침해

1998. ~ 2000. 까지 신고인은 농장3과에 배치되었다가 이후 위생원이 됨. 당시 전거리 교화소는 1,000명정도 수용 가능했으며, 당시 5개 과가 있었고 각 과당 200여명 정도 배치, 1개과의 구조는 과장, 비서, 생산지도원, 각 반별로 선생(안전원)이 있음.

1과(구내 차수리, 목공 등), 2과(동광산), 3과(농장에서 채소농사), 4과(감자농장, 10리 정도 떨어져 있음), 5과(2과에서 가지고 온 동광물을 선광하고 가공)

교화소에 처음 입소시 X-ray촬영(기관지, 폐결핵, 간염 등 검사), 허약이 걸려서 왔는지 검사함. 몸수색은 선생(안전원)들이 감시원이나 반장을 시켜서 옷을 모두 벗기고 모든 구석구석을 검사함.

신입반에 입소시 다시 몸검사와 옷검사를 하는데 철이나 담배 등을 찾기 위한 것이고, 1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생활수칙, 김일성, 김정일 교양을 함.

당시 열병과 영양실조 허약으로 1일 7~8명이 사망하는 등 많이 사망을 했음. 사망을 하면 단가에 실어서 사체실(10평 정도 창고)에 두었다가 1달 내지 20일 정도 되어 트럭 1대 분량이 되면 실어서 불망산에 가서 소각함. 당시 병원, 약국에서 생산되는 약 등으로는 워낙 수량이 부족한 상태였음.

불망산은 교화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소각시설은 봉수대처럼 돌로 쌓아서 만든 가마인데 위 뚜껑은 없고, 내부는 4~5평, 높이는 2m50cm 정도 됨. 시체를 쌓아 놓고 나무장작으로 불을 지피면 냄새가 2~30리까지 퍼짐.

보통 겨울에 아침 9시에 가면 오후 3~4시에 종료됨.

식사는 480g 정도인데 죽밥에 돌맹이가 10~20%는 되는 것 같았음. 소채, 남새(나물)가 없어 가을에는 산나물을 뜯어와서 맹물에 끓여서 먹기도 했음.

수용자들은 배고프고 힘드니까 안전원들이 심어 놓은 남새라도 보이면 먹으려고 허리를 굽히다가도 힘이 없어 쓰러지는 상황이었음. 그런데도 안전원들은 이런 광경에서 지기들의 남새를 훔쳐 먹는다고 때리고 했음.

안전원들에 의해 맞아죽으면 허약으로 병들어 죽었다고 처리하며,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임. 1명이 3명을 감시하고, 또 다른 3명이 1명을 감시하는 형태이며, 퇴소되어 나갈 때는 절대 소내에서의 생활을 말하지 않겠다는 자서전을 쓰고 말하지 못하게 함.

(3) 2차 수감시 인권침해

2008. ~ 2010. 까지 신고인은 5과(선팽장)에서 생활하다가 식당 식모(취사원)를 1년 6개월 정도 했음. 1차 수감 때와 달리 기구가 개편되어 있었음. 3과가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교화소를 1개 도별로 1개씩 유지하기 위해 평북에 소재해 있던 여성교화소(명칭은 잘 모름)가 합쳐져서 여성죄수가 2,000명 정도 되고, 남자 죄수는 1,500~2,000명 정도 수용되는 규모였음.

20평 면적에 45~70명까지 수용되어 있어서 상대방 발과 머리가 서로 교차되고 모로 누워서 잠을 잤음. 여성의 경우는 100평의 면적에 모두 수용되어 있어서 아마 앓아서 잠을 잤을 것임.

신고인이 있던 5과는 3개반이 있었고, 4~50명에서 7~80명까지 수용되어 있었고, 15평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정도였음. 이때에는 1차 때와는 달리 사망이 활빈 줄었고 대부분은 사고로 죽었음. 특히 겨울에 산에 나무하러 가서는 500kg 정도 되는 나무에 갈구리를 박아서 4명이 끌고 내려오는데 자칫하면 무게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났음.

신고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반을 보니 1년에 최고 18명이 죽었고, 최저는 11명이 죽었음. 사망자를 싣고 가는 트럭도 규모가 작은 것으로 싣고 갔음. 여기서도 주로 죽는 사람은 면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상태 였음. 면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은 80% 정도는 죽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안전원

이나 반장들도 면회를 오는 사람들은 잘 때리지 않음. 30kg이하의 몸무게가 되면 허약으로 사망하게 됨.

교화소에서도 말로는 ‘때리지 말라. 문제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 선생(안전원)들이 처리하라고 하면 반장들이 행동을 하게됨.

범죄유형도 마약범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안전원들의 행동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자기 욕심채우기 급급했음. 면회물량(공식적으로 20kg)을 가지고 가면 3~5kg은 무조건 떼어 내어 안전원들이 차지 함. 당시 1일 면회자가 2~30명 정도 되니 상당한 양이었을 것임. 또 안전원들이 면회가족들에게 수용자들이 교화소에서 사용한다고 바깨스 등 그릇을 사가지고 오도록 시켰음. 그런데 안전원들이 이 그릇을 모았다가 저녁에 다시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먹고는 다음날 오는 가족들에게 또다시 그릇을 사 가지고 오라고 하여 물품이 돌고 도는 형태로 이익을 쟁김.

수용실 구조는 한쪽 구석에 화장실이 있으며, 문은 있으나, 대변기를 판자뚜껑으로 닫아 놓아 냄새가 심함. 목욕은 겨울의 경우 1주에 1회 정도, 세수는 매일 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힘들고 허약이라 잘 하지 않음.

식사량 규정은 있으나 콩의 경우 제대에 공급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3일만 콩을 먹지 않아도 얼굴이 볶게됨. 1차 때에는 교화소 자체에서 남새나 산나물을 채취토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마저도 못하게 함. 만기출소시에는 서약서를 쓰고, 확인검신을 거쳐 면회장에서 가족 만나서 퇴소함.

신고인은 교화소 구류장과 생활의 끔찍함으로 인해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꿈자리에 교화소 생활이 나기도 하여 진정인도 모르게 소름끼치는 증상이 나기도 함.

무릎관절이 아파서 단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못견딜 지경이고, 손가락 활용을 잘 못하고 떨림 증상이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5. 24.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청진시 나남구역 보위사령부 해외 반탐요원 대위 ○○○ 등 3인
- 회령시 인민재판소 판사 ○○○(재판소 부소장)
- 제12 교화소 소장 ○○○, 부소장 ○○○, 안전원 죄○○ 소좌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간첩으로 몰려 보위사령부에서 고문을 당했고 근거 없이 비법월경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제12 교화소(전거리 교화소)에서 복역하며 온갖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9. 12. 19. (또는 29.)부터 2000. 2. 19. 까지 청진시 나남구역 보위사령부 아지트
- 2000. 2. 20.부터 2000. 5. 말까지 회령시 인민보안서 구류장

교화소

- 2000. 5. 말 회령시 인민재판소
- 2000. 6. 1.부터 2001. 1. 19. (또는 29.)까지 인민보안성 교화 관리국
제12 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보위사령부 아지트

(가) 1990. 대 중반 먼저 탈북한 이복동생으로부터 생활자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보위사령부에 의해 남한 안기부에서 돈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몰려 1999. 12. 19. (또는 29.) 청진시 나남구역 보위사령부 아지트에 연행됨. 보위사령부 해외 반탐요원 대위 3명 ○○○(각 27~8세 정도씩)이 교대로 아래와 같이 끔찍한 고문을 가했음.

(나) 고문

처음 10일간 팬티차림으로 잠을 안 재운 채 두 손을 수갑에 채워 벌은 바닥에 땅을 락 말락 한 상태로 아무런 말도 시키지 아니한 채 천장에 매달아 놓았음. 그 이후 15일간 영하 30도 이하의 추위 속에 역시 팬티차림으로 불꺼진 차가운 감방 속의 쇠 난로 속에 쭈구리고 간신히 들어가게 하여 가둔 채 몸을 열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고통을 가했음. 쇠 난로에서 꺼낸 다음에는 역시 잠을 안 재우고 간첩 죄 시인을 강요하면서 부인할 때마다 쇠창살 사이로 언 손을 내밀게 한 다음 권총 소제대로 손톱 끝을 마구 내리쳐 몸이 펄쩍 펄쩍 뛸 정도로 아프게 하였음. 또 권총 손잡이로 머리 등을 마구 구타하고, 각목을 무릎사이로 끼워놓고 마구 짓밟고, 정강이 등을 참나무 봉동으로 내리쳐서 지금도 머리(앞 부분 및 뒷부분), 손목, 다리 정강이 등 여러 군데 상처가 남아 있음(육안으로 확인). 그러나 끝내 부인하였고, 보위사령부 자체 조사에 의해서도 무고함이 밝혀졌으나 석방을 하지 않고 공민증, 당원증, 각종 훈장, 회령시 오산덕 협동농장 부위원장 등 모든 지위를 박탈한 채 2000. 2. 20. 경 비법월경 협의로 회령시 보안서 예심과 구류장에 보냈음.

(2) 회령시 보안서 예심과 구류장

회령시 인민보안성 보안서 구류장에서는 2000. 2. 20. 경부터 2000. 5. 말까지 예심을 받았고, 비법월경죄로 재판에 회부함. 고문은 당하지 않았음.

(3) 회령시 인민재판소

2000. 5. 말 회령시 인민재판소에서 판사 ○○○(재판소 부소장, 50세 정도), 참심원 2인, 검사 ○○○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비법월경죄로 노동교화형 5년을 선고받았음.

(4) 전거리 교화소

(가) 신고인의 직책 및 전거리 교화소의 규모 등

신고인은 2000. 6. 초에 전거리 교화소에 입소하여 2001. 1. 19. (또는 29.) 형기 단축과 대사령에 의해 출소하였음. 입소된 첫날부터 전거리 교화소내 병원의 잡부로 배치되어 교화소 병원 및 약국의 환자의 입·퇴원 관리, 담당 위생원(죄수로 구성) 지휘, 시체 및 시체실 관리 등을 담당하여 죄수들이 굶주림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죽어서 시체를 화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목격하게 되었음.

교화소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범죄자를 수용하고, 당시 정원은 1,200명인데 1,800여명을 과밀수용하고 있었음. 교화소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교화소 범죄자는 적대계급으로 용서 없이 처단하라는 분위기가 있었음. 면회는 분기별 1회 가능하나 뇌물을 주면 더 자주 가능했고, 가족 편지도 일상적인 내용으로 국한되었고, 외부 가족의 음식 반입은 1회에 10kg 이내로 국한. 죄수 중 거의 절반은 비법월경으로서 보통 2년 내지 3년 형을 살지만 한국행을 기도하였거나 교회에 접촉한 죄수들은 10년 이상의 형을 살면서 동(銅) 광산의 광부나 벌목공 등 중노동을 하거나 교화소 내 질서위반죄로 독감방에 보내져 고생하다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음.

(나) 노예화, 박해 및 비인도적 행위

배식은 콩, 강냉이, 잡곡 등을 씻지 않고 흙, 모래 등이 섞인 채로 증기에 쪘서 구멍탄처럼 찢어서 종이컵 정도 크기로 주었는데(반찬은 묽은 소금국이 전부임), 작업량이나 복무태도를 고려하여 1급부터 7급까지 배식량을 줄여서 차등 지급을 하였음. 가장 분량이 많은 1급은 중노동을 하는 광산, 채벌, 선광반 등에게 지급하고, 보통은 3급을 먹었으며, 독감방 죄수는 가장 적은 6급이나 7급을 주었음(독감방에서는 눕지도 서지도 못하게 좁은 방에서 변기통 위에 쭈구리고 앓게 만들어 놓아 보통 1주일이면 허약에 걸려 죽게 됨). 어느 경우에나 교화소에서 죄수들에게 할당되는 식량을 착복하기 때문에 죄수들은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음. 수용자들은 손톱만큼 분량의 소금을 실에 꿰어 목에 감추고 섭취를 하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발각되면 죽음에 이르게 됨. 개구리, 뱀, 도마뱀, 메뚜기 등은 물론, 소나 돼지도 안 먹는 풀을 모두 먹었고, 그 결과 독초를 먹고 죽는 경우도 많았음. 안전원들이 집에서 버린 죽은 강아지나 토끼 또는 돼지새끼(구더기가 들끓었음)를 오물 더미 속에서 꺼내어 국에 끓여 먹기도 하였고, 뚉물에 빠져 있는 쥐조차 귀해서 다투어 잡아먹었음.

(다) 비인도적 행위

신고인은 교화소에서 복역한 6개월 동안 850여구의 시체를 처리했고(1일 4~5구 정도 처리), 신고인은 68명의 죄수와 같이 들어왔는데 출소시에는 3명만 생존하였음. 주된 사망원인은 굶주림과 구타, 전염병(장티프스나 파라티프스 등), 노동재해 등이었음.

병원에서 죽은 사망자들은 조금 떨어진 시체실(3m 담장으로 된 시멘트창고)에 옮겨 놓는데, 이 시체실은 무장한 보안원이 24시간 경계하여 누구도 접근을 금지시켰음. 접근 가능한 사람은 신고인 본인과 위생원 조장(죄수 의사), 병원 원장, 병원 내 군의 6명(죄수 출신이 아님), 교화서 보안과장, 교화소 소장이나 부소장에 한정되었음.

시체실에는 독탄차량 한대 분량(5~60구)을 위해 10일 정도 사체를 쌓아 놓기 때문에 여름에는 구더기가 생기고, 겨울에는 쥐가 사체의 눈, 코, 귀, 생식기 등 돌출부위를 먹고 그 후에 살을 뜯어 먹음. 이로 인해 쥐의 크기

가 토끼만큼 자람. 5~60구의 시체가 쌓이면 비밀리에 목탄차량에 옮겨 싣고 10리 정도 떨어진 화장장인 이른바 ‘불망산’으로 병원 잡부(신고인), 위생조장, 안전원 등 10여명이 함께 옮김. 화장장에서는 장작을 쌓아 놓은 후 5~6구씩 화장을 시키는데, 화장해도 남은 시신의 일부와 유골은 가족들이 찾지 못하게 구덩이를 파서 묻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그 위에 진달래 꽃이나 잔디 떼장, 소나무 등을 심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음. 가족들에게는 절대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음. 형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죄수의 가족들은 평생 처단자 가족 또는 범죄자 가족이 되어 계속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됨.

(라) 살해

2000. 7. 경 무산 출신 농산반 소속 죄수가 도주하다 잡히자 비포장 도로에 두 손을 끓어 찢차에 매달아 끌어와서 절반 죽은 것을 말뚝에 매달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싸맨 다음 3명의 사수가 10발씩 쏘아 공개총살을 했음(머리가 다 날라가고 몸은 누더기가 되었음). 당시 병원 뒷마당에 인민특별재판소를 개설한 다음 500~600명의 죄수들(농산반, 차수리반, 공무반, 설계반, 목공반, 창고조, 취사장, 보일러공, 피복수리 등)이 보는 앞에서 공개재판을 한 다음 사형을 선고하였음. 처형 후에도 교화소 내 사람왕래가 많은 도로변 말뚝에 ‘도주는 자멸이다’는 팻말과 함께 시체를 1 주일간 매달아 놓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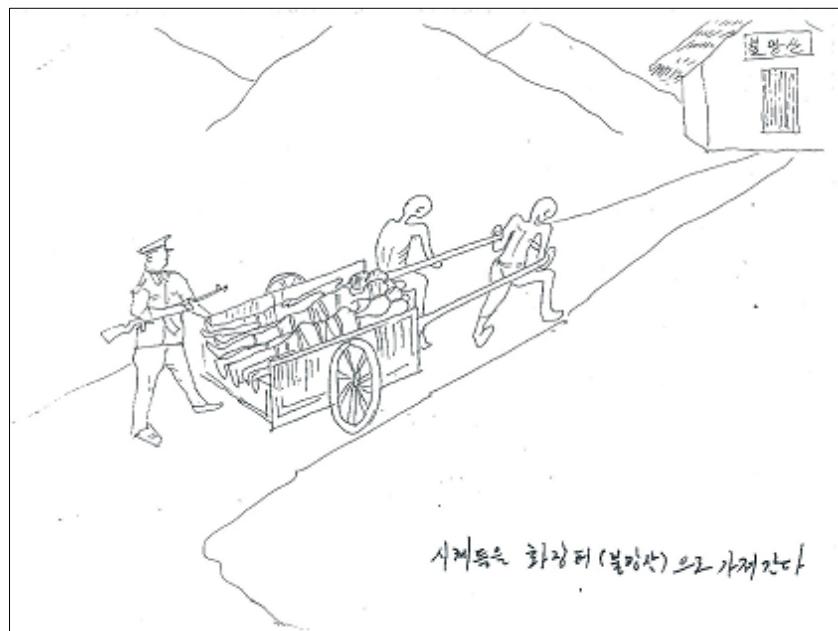
또 2000. 12. 말경에는 교화소 안전원 최○○ 소좌(40대 내지 50대)가 20대 젊은 죄수인 방○○과 윤○○가 담배꽁초를 주웠다고 무릎 끓고 눈 속에서 마당에 계속 끓어 앓히는 바람에 4일 후에 모두 얼어 죽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과 남아 있는 상처
- 전거리 교화소 출신 탈북자 ○○○, ○○○,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21.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재판소 판사 ○○○, 평양최고재판소 판사 ○○○, 청진시 검찰소 검사 ○○○, 인민위원회 대의원(인민참심원) ○○○, ○○○
-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 교화국 제12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보안원 대위 ○○○(2005. 당시 40대 초반), 대위 ○○○(40대 중반)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의 동생이 199○년 한국에 와 있었는데 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만 달러를 송금 받았다고 하여 남한간첩 누명을 받아 보안사건으로 조사받았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1999. 6. 북한형법 61조 국가재산횡령죄, 대외사업남용죄, 암거래, 사회질서문란, 북한형법 부칙 50조 외국인과 밀거래 등의 죄목으로 억울하게 2000. 노동교화형 13년 선고받고 일반사범으로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어 갖가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9. 7. 청진시 나남재판소
- 2000. 1. ~ 2007. 2. 전거리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1999. 7. 청진시 나남재판소 검사 ○○○는 신고인에게 형법부칙 제 49조에 의해 사형을 구형하였고, 판사 ○○○(여성, 50대 중반)은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하였음. 이에 신고인이 항소를 하자 2000. 1.에 평양최고재판소에서 판사 ○○○이 파견되어 신고인에게 노동교화형 13년을 선고하였음. 당시 검사 1명, 변호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 동조하였음.

(2)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은 2006. ~ 2007. 까지 사이에 전거리 교화소 총지령공으로서 교화소에 입소하는 죄수 및 퇴소하는 죄수의 성명 및 숫자, 사망자, 소비하는 급식량, 작업실적, 생산실적, 일간·월간·연간 교화소내의 처벌실적(형기 감량에 관계됨)을 집계해서 교화소에 보고하고, 교화소 죄수들의 생활을 감시통제하고, 사체실 및 독방을 관리하는 직책을 담당하였음. 죄수들은 보안원보다 신고인을 더 어려워 했음.

신고인은 총지령공 직책을 맡기 전 2번 독방처벌을 받았음. 온몸이 부어 있는데 구구절 명절날 보안원 대위 ○○○(2005. 당시 40대 초반)이 만취상태에서 의무도 없는 창문틀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1.2m 직경 6cm 쇠몽둥이로 마구 구타, 군화로 앞 이를 쳐서 3개의 이가 나가고 정신을 잃었다가 3일만에 정신을 차림. 40일간 대소변을 받아내고 혈압이 50까지 내려감. 출소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려서 가족이 교화소에 와서 항의하여 약을 주어 회복이 됨.

북한인권침해사례집

2002. 부터 2004. 까지는 보안원 대위 ○○○(40대 중반)가 신고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놈물을 주지 않았다고 심한 작업을 시키고 여러 가지 펫박을 가함. 교화 1과장, 2과장에 의해 2번 독방처벌(2006. 및 2003.)을 받아 고생했음.

조사과정에서 받은 고문으로 양쪽 늑막염을 앓고 지금도 허리양쪽이 아프고 재발되는 것 같음. 하나원에 들어와서 윗니 3대, 밑에 이 2개를 보철함.

(3) 전거리 교화소 규모

전거리 교화소는 800명 수용능력인데 당시 1,960명의 죄수들이 수감됨. 약 80% 죄수들은 매일 구타당함. 죄인들 중에서 비법월경, 도강이 약 40%, 인신매매가 약 15%, 국가재산(전기선 절단, 설비절취, 식량절취, 소 도살, 밀수) 약 20%, 미신행위(점을 치거나 기도 등)가 약 10%, 이른바 장인범(강도, 강간, 살인 등)이 약 15%임.

전거리 교화소는 1과부터 5과까지 분류되어 과마다 지령공이 있음. 각과마다 반이 또 나뉘어 목공반, 건설반, 농산반, 상하차반, 차수리반, 구내반, 공무반, 혀약반, 낙후자반(교화소내에서 죄를 지은 죄수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반, 반장 ○○○) 등 33개반이 있고, 1과와 3과가 함께 있고, 나머지는 흩어져 있는데, 신고인은 총지령공으로서 1과부터 5과를 모두 총괄했음. 신고인이 출감할 무렵에는 여자반 40명이 새로 생김. 최근에는 300명으로 여자 죄수가 늘어났다고 함.

(4) 전거리 교화소 실상

2000. ~ 2003. 까지는 매월 평균 80명 내지 100명씩(매일 죽음) 사망했고, 2004. ~ 2005. 까지는 다소 사망률이 감소하여 매월 평균 40명 정도씩 죽었음. 2006. ~ 2007. 당시 총 죄수의 숫자 1,960명 중 매월 평균 20명 내지 25명이 사망함. 이상은 신고인이 직접 위 통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음. 죽은 원인은 첫째 이유가 혀약 및 영양실조, 둘째가 전염병(파라티푸스, 열병 등), 세 번째 노동재해(작업도중 사망, 벌목하다가 나무에 치어서 또는 운반하다가 죽기도 하고, 동 광산에서 굴이 무너져 죽기도 하고, 건설

교화소

하다가 건물에 깔려 죽음. 기계를 돌리다가 제재기 피대에 감기거나 프레스에 끼거나 전동기나 밥상만한 텁날에 짤려 즉사 등.

사체실에는 시체가 10구가 되면 대형 리어카(위생원 4명과 신고인 등 5명이 끈다)에싣고 교화소 밖의 이동시간 1시간 거리에 있는 화장터(이른바 불망산)에서 나무로 태움. 태운 재는 빗자루로 쓸어버리거나 삽으로 퍼버림. 매번 화장 때마다 신고인이 수행함. 사체실의 시체는 여름에는 쥐들이 파먹고, 겨울에는 얼어서 그나마 손상이 덜 됨.

죄수 생일날 표창으로 주는 최고급 식사가 잡은 쥐(시체 등을 먹어서 괭장히 큼. 무게 800g, 길이 25cm 정도)를 주는 것임. 영양보충을 위해 죄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임. 신고인도 많이 먹었으나 당시는 맛있었음.

전거리 교화소에 병방이 있으나, 공민권을 박탈당하여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옮아서 죽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죽는 과정임. 혀약반에서 병방, 사체실, 불망산의 순서로 생을 마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전거리 교화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고 현재 한국에 온 다수의 탈북자, ○○○(신고인보다 먼저 출감), ○○○ 등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6. 21.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중앙검찰소 함경북도 검찰소 검사 ○○○, 변호사 ○○○
- 전거리 교화소장

마. 신고요지

- 열악한 전거리 교화소 시설과 배고픔, 구타, 추위 등 갖가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1. 6. 재판소
- 2001. 7. ~ 2002. 12. 까지 전거리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신고인은 국군포로(○○○, 당시 67세)를 중국으로 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4년 형을 받음.

(2) 구타와 욕설, 비인간적인 고문

2001. 7.부터 2002. 12. (사면)까지 전거리 교화소에 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며 인권침해를 당함. 교화소 보안원(선생님이라고 통칭)의 기분에 따라 욕설, 구타 등이 만연, 겨울에는 눈이 쌓인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뒤로 묶은 채로 얼굴을 눈 속에 쳐박는 고문을 자행하고, 잘 먹이지도 않은 채 낮에는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림.

(3) 전거리 교화소 실상

교화소 생활준칙에는 취침시간이 8시간(22:00~06:00)까지 정해져 있지만 온갖 사상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잠을 잡.

당시 1일 식사량은 1인당 700g이었지만 4~500g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수용자가 기아에 시달림. 2000. 부터 교화소내에서 수용자가 사망하여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허기와 병으로 지친 수용자를 사망하기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출소시켜 이들중 90%정도의 수용자들이 귀가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2002. 경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일부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가 목공작업중 사고로 손가락 4개가 잘렸는데 이를 비닐에 넣어 묻어 둔 것을 파내 삶아 먹는 것을 목격함.

교화소는 시설이 낡고 열악하여 이, 벼룩, 빈대 등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지만 목욕을 할 수 없고 갈아입을 옷도 지급하지 않아 겨울에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함. 수용자에게 일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옷, 신발 등을 지급하지 않아 외부(면회)에서 반입하거나 출소하는 수용자의 것을 입는 등 신발도 짹짜이, 옷도 누더기로 생활함. 교화소는 수

교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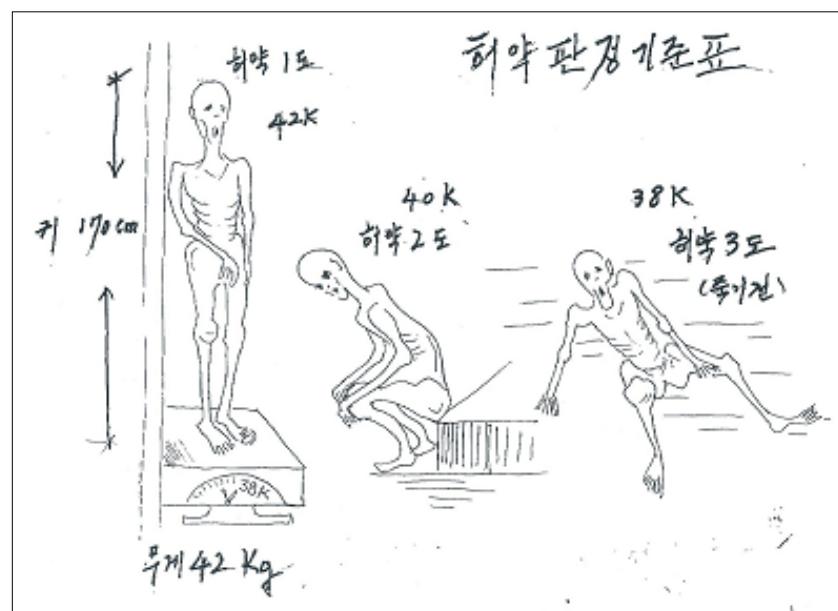
용능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칼잠을 자고 화장실 사용 등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움.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당시 함께 있다가 탈북하여 정착한 ○○○(신고인보다 먼저 출감)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5. 27.

나. 신고인

- 김광일(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보안서 예심과 구류장 예심원 ○○○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대의원(인민 참심원) ○○○, ○○○, 중앙검찰소 함경북도 회령시 검찰소 검사 ○○○, 중앙재판소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재판소 변호사 ○○○
-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 교화국 제12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소장(상좌)○○○, 정치부장 ○○○, 교화과장 ○○○, 1과 내지 5과 과장 ○○○과 비서들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억울하게 비법밀수죄로 구속되어 구류장에서 고문을 당했고,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교화소에서 굶주리며 강제노역을 당하는 등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음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4. 7. 8. ~ 2004. 9. 21. 까지 구류장
- 2004. 9. 11. 재판소
- 2004. 9. 22. ~ 2007. 2. 6. 까지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구류장에서의 인권침해

(가) 고문

신고인은 북한에서 수집한 구리 등을 중국에 팔아 돈을 벌어 오는 일을 하다가 2004. 7. 8. ‘군 허락 없이 밀수출했다’는 비법밀수죄로 영장도 없이 회령시 인민보안서 구류장에 끌려갔음.

구류장에서 예심원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자백하지 않는다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앓지도 서지도 못하게 철창에 수갑으로 졸도할 때 까지 매달아 놓거나, 두 손을 뒤로 어깨높이 이상으로 높이 라지에 타에 뷄어놓고(이때 가슴이 비둘기처럼 나오게 되어 일명 ‘비둘기 고문’이라 함), 두발도 끊어 앓혀서 꼴찌 못하게 뷄어 놓은 다음은 의자, 몽둥이, 무기청소기, 협대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 마구 구타하였음. 결국 피를 토하고 정신을 잃게 됨. 그밖에도 구류장에서는 ‘비행기 고문’(한 발로 서고 한 발은 뒤로 들고, 두 손은 뒤로 비행기 날개처럼 들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고문), ‘오토바이 고문’(오토바이를 탄 자세, 즉 두 손을 앞으로 들고 무릎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게 하고 장시간 있어야 하는 고문), ‘뽑쁘고문’(타이야 튜부에 공기를 넣는 수동식 펌프작동처럼 뒷짐지고 앓았다 셨다를 수백번 반복시키는 고문)을 당했음.

(나) 비인도적 행위

매끼마다 주는 음식은, 중국에서 짐승 사료로 수입한 염량가루를

교화소

100g도 안되게(규정량은 150g) 지급하여 허약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음. 숟가락은 꼭지를 끊어 없앤 것을 주었음. 꼭지를 끊은 이유는 그 꼭지를 목구멍으로 넘겨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함. 신고인이 2달간 있는 동안 실제 2명이 허약으로 죽는 것을 목격하였음.

- (다) 구류장 일과는 아침 5시 기상하여 조식 7시부터 30분간, 점심 12시부터 30분간, 저녁 7시부터 30분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교정자세로 있어야 함. 교정자세란 죄수는 항상 감방에서 머리를 숙이고 끓어앉아서 두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부동의 자세로 있어야 하고, 위반시에는 가차 없이 매질을 당함. 감방에 드나드는 문은 일명 ‘개구멍’이라고 하여 45cm×45cm 크기밖에 안되는 출입구로 머리를 숙이고 기어서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음. 나온 후에도 예심원들이 허락하기 전에는 이마를 땅에 대고 벽쪽으로 향해서 끓어 엎드려 있어야 함.
- (라) 신고인은 위와 같은 고문 등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허리와 오른 팔 뒷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음.

(2) 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2004. 9. 11. 재판소에서 판사와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신고인에게 과중한 혐의 ‘노동교화형’ 6년을 선고했고,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지방 대의원 2명으로 이루어진 인민참심원들은 그대로 동조하였고, 변호사는 변론도 없이 오히려 신고인이 응당 처벌 받아야 한다고 거꾸로 말하였음. 선고가 나자마자 변호사가 신고인 쳐 명의의 이혼신청서에 강압적으로 무인을 찍게 하였고, 그 순간 신고인과 쳐는 이혼이 성립되었음. 재판에 대한 상소기일을 10일 주었지만 상소를 포기했음. 북한에서는 상소를 하면 되레 법에 맞섰다고 보복적으로 10년 형이 15년, 사형 등으로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임.

(3)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제12교화소는 해발 1,500m가 넘는 북방의 산간지대에 있어 겨울이 다른 지대보다 훨씬 빠르게 오며 맑은 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

모봉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나진 앞바다가 멀리 바라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있음.

신고인은 2004. 9. 22. “도주는 자멸이 길이다. 절대로 도주행위를 하지말라!”는 위협적인 글이 써여 있는 현수판 밑을 지나 5-6명이 커다란 손달구지에 발들이 비죽 비죽 엉갈려 나와 있는 시체 몇 구를 실어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며 제12교화소에 입소하여 ‘라 40’이라는 수감번호를 부여받았음.

(가) 짚주립 – 비인도적 행위

- ① 교화소의 급식은 안남미 10%, 옥수수쌀 60%, 콩 30%를 섞어 서랍에 담아 증기 가마니에 넣어 찌낸 것을 김을 뽑고 삽으로 부풀려서 ‘밥단지’라는 기구로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매겨 찍어냄. 밥 덩이를 식기나 숟가락도 없이 손바닥에 받아 먹음. 급수가 높을수록 삶은 콩 세운 것만큼의 높이가 올라가는데, 광산착암수와 별목일을 하는 수감자들은 1급과 2급 밥을 먹게 되어 있으나 이 양이 제대로 지켜진 때는 없음. 보통은 지름이 6cm, 높이가 7cm로 찍어낸 3급(작은 컵 정도 크기)을 먹고, 환자로 휴역하는 수용자나 신입반은 4급, 범칙을 하여 독방에 들어간 자는 5급을 먹음. 교화소 규정상 3급은 180g을 먹어야 하나, 실제는 교화소에서 중간에 착복하여 3급이 130g 밖에 안 되어 수용자들은 항시적인 짚주립에 시달렸음(4급이나 5급은 말할 것도 없음). 더욱이 위와 같은 교화소 급식(안남미, 옥수수, 콩)조차도 교화소에서는 1년 중 2개월은 장마당에 빼돌려 팔아먹고 임의로 교화소에서 부업으로 경작한 감자를 똑 같은 ‘밥단지’로 찍어 하루 3끼 급식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짚주린 수감자들은 더욱 허약에 쓰러지게 되었음. 복역 기간 중 제대로 된 급식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교화국에서 검열 나왔을 적에 한두 끼였음.
- ② 교화소의 급식대로는 누구나 허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 뿌리, 나뭇잎 등 먹어서 죽지 않는 것은 모두 먹었음. 쥐, 뱀은 아주 드문 고급 음식이었음. 분기에 한번 면회가 허용되고(뇌물을 쓰면 더 자주 할 수 있음) 면회자들이 가져오는 옥수수가루는 큰 도움에 되나, 생활난으로 한 감방의 60여명

교화소

의 수감자들 중 면회자는 8-12명 정도에 불과하였음. 그나마 면회자들이 가져오는 옥수수가루는 많아야 15kg 정도인데 그 중 10kg은 교화소에 제공해야 했음. 또 교화소에서는 수감자와 가족들에게 면회시 의약품, 전구, 책, 등 교화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와야 면회를 시키기 때문에 면회도 쉽지 않았음.

(나) 전염병 – 비인도적으로 열악한 환경

전거리 교화소에는 식량난으로 비법월경자 등 생계형 범죄자가 들어나서 신고인이 들어가서 퇴소할 때까지 수용능력보다 훨씬 많은 2,400명이나 수용되어 있었음. 전체는 5개과로 나뉘고 각 과마다 4-500명이 수용되어 있었음. 그에 따라 20평이 채 안되는 교화소 감방의 정원은 15명인데도 60-70명이나 과밀하게 수용되어 잠을 잘 때는 4줄로 옆으로 모로 누어서 ‘톱날 잠’을 자야 했음. 또 감방 안에는 변기가 개방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놓여 있어 쪘든 악취가 항상 배어 있었음. 수감자들이 거의 목욕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 하여(죄수용 수용자 옷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에서 입던 옷을 기워서 입는데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흰 옷에는 검은 천을 검은 옷에는 흰 천으로 얼룩덜룩하게 하게 함) 몸에서 악취가 나오고, 이, 빈대, 회충이 들끓어 심지어 밥을 먹을 때 보리알처럼 큰 이 등이 식기에 떨어지기도 하였음.

교화소 위생상태가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감자 중 누구라도 전염병(특히 겨울마다 찾아오는 파라티프스가 무서웠음)에 걸리면 바로 전체 교화소에 확산되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노역 중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음. 신고인은 2005. 1. 16. 병방에 들어가서 11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는데, 함께 입원했던 24명 중 8명이 죽어나갔음. 병방에는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었음. 신고인이 속해 있던 2과에서 신고인이 목격한 것이지만 다른 곳은 인원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다) 강제노역 – 노예화

12교화소는 원래 동광을 채취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는데, 동맥은 거의 바닥이 나서 수감자들은 나무 채벌이나 농사짓는 일에도 동원되었음. 수감자를 관리하는 초병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대부분인데 수감자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을 노예같이 부리면서 자신들의 위엄성을 과시한다는 명목으로 수감자들을 온갖 욕을 하면서 사정없이 매질하고 구타하였음. 수감자들이 산중턱에서 별목 작업을 하는데 안전보다는 작업성과를 다그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2005. 10. 10.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채 양성되지 않은 건설용 큰 벽돌을 2층 높이만큼 쌓았던 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14명이 한꺼번에 즉사한 적도 있음. 그러나 유족들에게 사망통지서 1통을 보낸 것 외에는 누구도 책임 진 사람이 없음. 동 광산의 수직갱이 무너져 6명씩 죽어나가는 참사도 빈번했음. 2006. 12. 경에도 그러한 붕락사고가 있었음. 개도 안에는 안전등도 없는데다가 개도 안에는 안전시설 없이 고압선이 마구 지나가게 설치되어 있어 감전사도 자주 발생했음. 산에서 원목을 끌어내리다가 밭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도끼질하다가 밭이 찍혀 잘리는 일 등은 너무 흔한 사고였음.

(라) 시체관리 – 비인도적 행위

전염병, 강제노역, 영양실조 등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어 시체가 생기는 데, 관리를 하지 않아 쥐들이 시체의 눈, 코, 귀, 생식기 등을 파먹어 알아볼 수 없게 됩. 그러한 시신들을 교화소 안에 있는 “불망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는 시체를 태우는 쇠로 만든 큰 로 속에 집어넣고 장작불로 태우는데 제대로 태우지 않아서 채 타지 않은 사람 뼈가 로 속에 수북히 쌓여 있음. 시체를 태운 잿가루를 비료처럼 밭에 재처리하여 뿌려진 곳에서는 호박, 무, 배추 등 야채가 잘 자랐음.

(마) 교화소의 수감자 분포 등

신고인은 2004. 9. 입소하여 2007. 2. 대사로 출소했고, 그 후 탈북하여 2009. 한국에 입국하였음. 신고인의 수감기간동안 본 수감자들의 대부분은 생계형 범죄자들이었음. 대략 65%가 비법월경자들이고, 생계형 절도범 등이 20%, 강도·강간·살인(강인범이라고 함) 등 강력범이 10%, 사기나 횡령 등이 5% 정도였음. 그 당시는 모두 죄수가 남자들이었는데, 2007. 6. 경부터는 여자 비법월경자들 수용시설이 없어 전거리 교화소에 여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2010. 2. 경에는 800명에 이르렀고, 전거리 교화소 총 수

교화소

용자는 3,200명에 이르렀다고 함.

복역자들은 ‘단련대’는 살이 내리지만 ‘교화소’는 뼈가 내린다고 함. ‘단련대는 사회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고 교양이라 해도 사회에서 격리된 것이 아니지만 교화소는 항시적인 굶주림과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 속에 수용자들은 육체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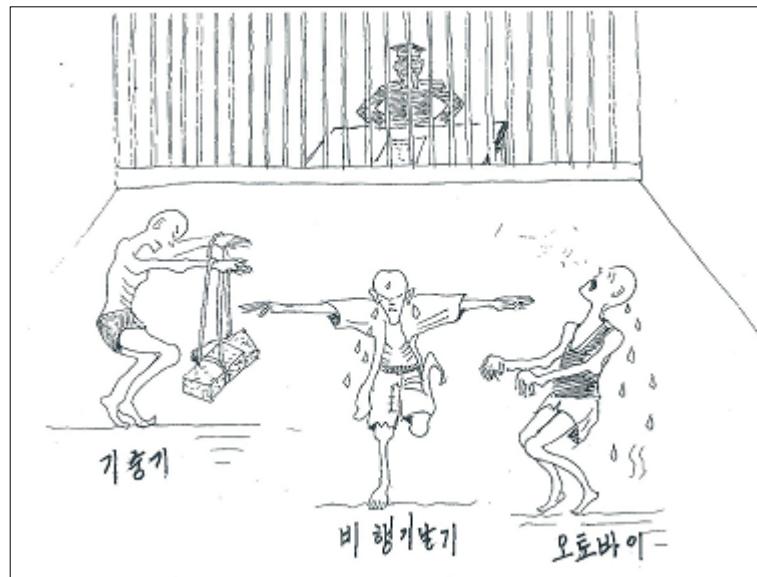
3. 증거자료

- 남한에 들어 온 전거리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북한인권침해사례집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6. 21.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중앙검찰소 함경북도 검찰소 검사
○○○
- 전거리 교화소 초병 ○○○(3급 병사, 당시 나이 약23세, 신장 약
160cm 정도)

마. 신고요지

- 별목 작업중 다리가 부러지고 옆구리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꾀병을 부린다면서
구타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5. 8. 재판소
- 2005. 9. ~ 2007. 2. 전거리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신고인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2005. 8. 경성재판소에서 부당하게 교화형을 선고함.

(2) 구타 등 가혹행위

2006. 2. 경 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잘린 나무에 밭혀 왼쪽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치료를 해주지 않아 늑막염으로 고생을 함. 지금도 감기 증세만 있어도 심한 통증에 시달림.

2006. 12. 경 산 아래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도 산 위에서 쌓아둔 목재를 아래로 굴려서 이를 피하지 못한 신고인이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함. 그럼에도 치료는 고사하고 초병 ○○○(3급 병사, 당시 나이 약23세, 신장 약 160cm 정도)은 신고인이 꾀병을 부린다며 구타함.

(3) 전거리 교화소의 실상

전거리 교화소에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용자로 약 10평 거실에 5~60여명을 수용하여 화장실 사용, 취침시 항상 다툼이 발생하고 기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함.

식사도 매끼 거칠게 부순 옥수수 가루에 콩을 약간 썩어 마치 두부 반모 정도 량과 된장국을 주는데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영양 결핍으로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허약 체질이 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12. 22.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지인의 오빠)

라. 가해자

- 전거리 교화소장

마. 신고요지

- ○○○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사망 등의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7. 3. 전거리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2007. ○○북도 ○○시에 살던 신고인 지인의 오빠(당시 28세)가 가족들을 읊여 살리기 위해 중국 사람과 밀수를 하다 적발되어 그해 6.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어 일주일 만에 간복수(간암)로 임산부처럼 배에 물이 차올랐

교화소

지만 계속되는 강제노동으로 결국 사망함.

가족들이 시신을 인수받으려고 하였지만 죄인의 시신은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가산을 정리하여 뇌물을 주고 시신을 수습하려 교화소에 가니 사망 후 8일동안 사체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가족까지 죄인 취급을 당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6. 21.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2007. 1. 청진시 인민재판소 판사 ○○○, 검사 ○○○
- 제12호 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구내반 담당지도원 ○○○

마. 신고요지

- 제12호 교화소에서는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음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7. 1. 청진시 재판소
- 2007. 8. 전거리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신고인이 중국에 갔다가 북송된 것을 이유로 2007. 1. 청진시 송평구역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음. 당시 판사 1명, 검사 1명이 있었으며, 변호할 권리가 없다며 변호사는 있지 않았음. 재판은 3명이 함께 받았는데 10~15분 정도 걸렸으며 기록을 줄줄 읽어주고 끝났음. 형기는 3년형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1~2년의 단련대형(공민증 박탈 없음)을 내렸으나 신고인 때부터는 처음으로 교화형(공민증 박탈)에 처해 교화소로 보냄.

(2) 구타 등 가혹행위

제12호 교화소는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어기면 죽도록 구타하고 하루 종일 무릎을 끊고 머리숙이고 앓아있게 만들고, 그러다가 일어서라고 하여 일어설 때에 다리가 아파서 비틀거리면 왜 비틀거리냐고 또 구타를 함.

거리를 오고갈 때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마주 오는 민간인도 마주볼 수 없으며 눈빛이 마주치면 또 죽도록 구타를 함.

배가 고파서 쥐를 잡아먹으면 규율을 위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불러내어 또 때림. 그때에 맞은 어혈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귀가 손상되었음.

(3) 부당한 처벌

수용자들이 간혹 이전에 중국에서 살았던 때에 쓰던 중국말을 주고 받으면 자유주의 풍을 불어넣는다고 비판서를 쓰게 하고 일주일 동안 독방 처벌을 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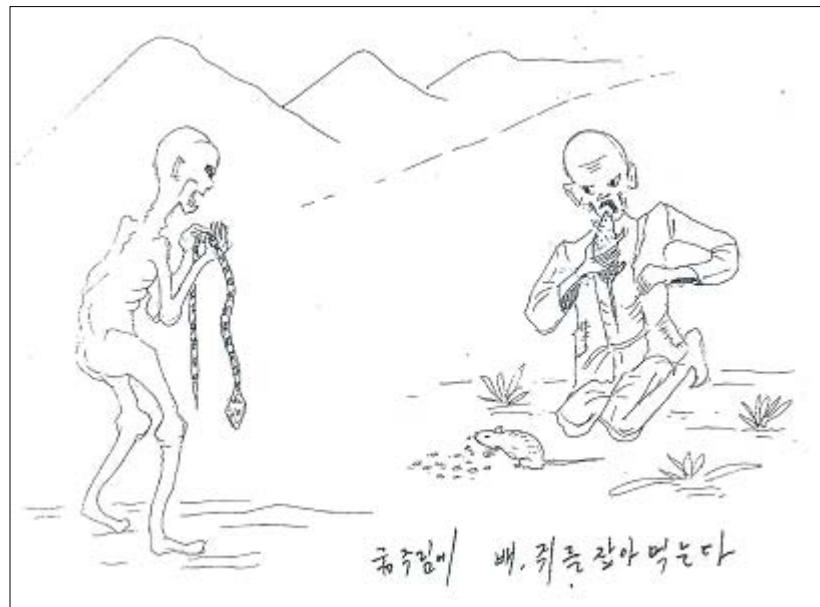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 있는 상처
-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 신고인과 동갑내기이며 북한에 남아있었음, ○○○ 신고인보다 1~2살 아래며 다시 탈북하여 중국으로 넘어

와서 팔려간 곳이 서로 달라 연락이 끊어짐)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2. 3. 13.

나. 신고인

- 이숙향(가명,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제12 교화소 소장 ○○○, 부소장 ○○○, 안전원 ○○○, 군의○○○ 등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어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7. 9. ~ 2010. 3. 까지 제12 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인민재판소

신고인은 1998. 경 탈북하였다가 2007. 경 중국 심양에서 공안에 체포되

교화소

어 신의주 보위부 등을 거쳐서 2007. 8. 경 ○○ 인민재판소에서 노동교화 형 3년을 선고받고 2007. 9. 경 제12 교화소에 수용됨.

(2) 제12 교화소

(가) 교화소의 규모 등

제12 교화소는 여자 비법월경자(도강자)가 증가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해 2007. 3. 말부터 제3과를 신설하여 여자 죄수를 수감함. 신고인이 있을 당시 여자 죄수만 1,200명 가량 되었고, 남자는 1과, 2과, 4과, 5과에 모두 2,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음. 70~80%가 비법월경자(도강)이고, 나머지는 인신매매, 매음, 마약, 사기, 절도 등의 순이었음. 한국행을 기도한 비법월경자는 2007. 까지는 신고인처럼 노동교화형 3년에 처했으나, 2008. 이후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음.

(나) 박해 및 비인도적 행위

병방에는 1달에 아스피린 20알, 진통제 20알, 설사약 100~150알 정도밖에 없는데 그나마 군의(안전원)가 다 가져가서 환자들에게는 처방할 약이 없었음. 식사량은 1끼에 140g 정도로서 강냉이, 콩, 모래 등을 섞어서 찐 단지밥에 멀건 소금국외에는 반찬은 없었음. 수감자들은 허약에 걸려 닥치는 대로 먹기 때문에 변을 보면 기생충(회충)이 사발로 나왔음. 10평 정도 감방에 50여명씩 수감하여 1, 2층으로 나누어 빽빽하게 썼고, 변기도 감방에 낮은 칸막이로 함께 있어 악취가 심하고, 이, 빈대, 벼룩, 바퀴벌레가 들끓었음. 안전원(선생님으로 호칭)은 기분 내키는대로 죄수들을 구타하였음.

여자 수감자들은 보통 매일 1명씩은 죽어나갔고(많을 때는 3명), 남자가 더 많이 죽었는데, 허약과 질병으로 남녀 합치면 1달에 70~80명의 사망자가 생겼음. 시체실은 무장경비가 지키는데, 남자 죄인 3명이 대차에 20~30 구씩 시체를 싣고 매일 불망산에 옮겨서 태웠음.

도망친 사람(40대 남자)을 허벅다리에 총을 쏴서 잡은 다음 모두에게 구경시켰는데, 치료 받지 못해 곧 사망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전거리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Ⅱ. 증산 교화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증산 교화소(제 11교화소) 계호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증산 교화소에서는 구타와 굶주림
과 병으로 고통을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9. 9. ~ 2000. 2. 증산 교화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재판도 없이 교화소 수감

중국을 갔다가 왔다는 죄로 민족반역자라며 재판도 없이 교화소에 수감함. 당시에는 김정일이 북송된 사람들은 민족반역자라며 재판없이 감옥으로 쳐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북도 도집결소에서 각자의 이름이 있는 명부에 손도장을 찍고는 교화소로 보내어 졌음. 신고인은 도집결소에서 3개월 있다가 중산교화소로 수감됨. 일반범죄자는 재판을 받았으나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재판이 없었음.

(2) 중산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중산 교화소에서는 구타와 굶주림과 병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총창이나 구둣발로 수시로 가격 당하였음. 그곳에서는 대략 이틀에 한 사람씩 사람이 죽어 나갔고, 교화소 안의 공동묘지에는 죽은 사람이 많아 제대로 매장을 못하였음.

강제노동을 할 때 물을 안 줘서 더러운 도량물을 먹었으며, 촌총 등 기생충에 감염되어 탈북 후 12번 적출 수술을 받았음. 지금도 손발이 저리고 잠을 잘 못 잡.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교화소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6. 21.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증산 교화소장

마. 신고요지

- 중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을 한 것을 계기로 2,600달러를 바치지 않는다고 보위부에 수차례 잡아들이고 인신공격, 모욕을 하였으며, 증산 교화소에 수감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 2005. 증산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재판도 없이 부당한 교화소 수용

신고인은 중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신고인의 한국에 있던 어머니가 북

교화소

한의 아버지를 중국에서 만나게 함)을 한 것을 계기로 2,600달러를 바치지 않는다고 보위부에 수차례 잡아들이고 인신공격, 모욕을 하였으며, 재판이나 판결, 변호사도 없이 증산 교화소로 보내었음.

한국에서 보내온 가족사진을 주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교화소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충격으로 2003. 사망함.

(2) 증산 교화소 실상

증산 교화소에서 재소자를 굶겨 죽이기도 하며 시체를 싸지도 않고 꽂동 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30여 cm 깊이로 겹겹이 시체를 매장하고 시체를 네 겹으로 쌓기도 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보안원 ○○○, 검사 ○○○, 변호사 ○○○(신고인을 담당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 당비서 ○○○, 청년동맹비서 ○○○
- 증산교화소 보안원 ○○○(당시 59살, 제11호 증산 교화소에서만 30년 이상 근무), ○○○ 보안원(당시 28세, 미혼)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후 2005.에서 2006.까지 증산교화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5.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 2005. ~ 2006. 증산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인민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 재판받을 권리 침해

신고인은 예심소와 보안소 등에서 총 9개월간 수감되어 있다가 2005. 공개 재판(인민재판)에 회부됨. 공개재판은 신고인이 다니던 회사(군수공장)에서 열렸음. 회사 강당에서 열린 공개재판에 거의 사람이 가득 찼던 것으로 미루어 약 1천명 정도 방청객이 모였음. 이들은 모두 공장 직원으로 인근 주민 등 외부 사람은 없었음. 재판은 6명의 판사의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6명의 재판관은 인민재판원 1명, 보안원 1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당비서 1명, 청년동맹비서 1명으로 구성되었고, 재판 시간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음.

신고인에게는 형식적으로 변호사가 있어 재판 3일 전에 신고인을 만나려 와서는 “예심 과정에서 때린 사람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담긴 질문지에 모두 “아니오”로 표기하도록 시키고, 신고인의 사진을 찍고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갔으나, 정작 재판 당일에는 신고인의 변호사 모습을 볼 수 없었음.

재판 과정에서 신고인에게는 딱 한번, 남한여권을 소지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여권인 것을 알고도 고의로 남한으로 탈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질문을 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 신고인은 누가 만들어주어 소지하였을 뿐, “남조선”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른다고 변명을 하여 총살은 면하고 노동교화형 13년 형을 선고 받음.

아마도 사전에 누가 시켜서 각본을 짠 것이겠지만, 총살이 아닌 13년 형이 선고되자 뒤에서 누군가가 일어나 “처단하라, 처단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선동을 함.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서류에 신고인의 지장을 찍게 하고 이를 교화소 계호에게 넘겨 신고인의 신병을 인수케 함.

(2) 증산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가) 교화소의 규모와 일상

- ① 공개재판에서 13년을 선고받고 2005. 경 제11호 교화소(증산 교화소)

로 이송됨. 교화소에 들어가면 흰 벽에 검은 글씨로 “도주는 자멸이다”라고 써 있고, 물지는 않도록 훈련시킨 것 같지만 커다란 개(흰색) 7~8마리가 있었음. 교화소는 흙집(진흙으로 지어짐)인데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많았음. 도착하자마자 여자 계호 두 명이 와서 여자 죄수들을 다 벗으라고 하고 손을 목 뒤에 깍지끼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게 하며 몸수색을 함.

증산 교화소에는 1과~12과까지 있었고, 남자는 1과, 4~5과, 7~12과, 여자는 3과, 6과로 구성됨. 신고인은 3과에 소속되어 들어간지 약 4달 만에 3과 총반장을 맡게 되어 명수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3과에 인원 수가 최고 많을 때가 683명, 적을 때는 480명 정도였음. 1과~12과를 다 합치면 교화소의 총 인원은 만 명가량임.

증산 교화소는 학교, 보안원 가족들이 사는 큰 마을같은 형태로 개천 교화소와 합병한 것으로 규모가 상당했음. 진정인이 속한 3과는 다시 1반~10반까지 나누어져 각 반에는 반장이 있음. 1개 반이 1방을 쓰는데 1방에 50~60명 정도 들어감. 반에 속하지 않고 식당, 창고 등에 직속된 재소자도 소수 있음.

② 증산 교화소에서 하는 일은 거의가 벼농사였음. 모내기, 잡초뽑기, 추수, 거름주기 등. 1개 반이 가꾸는 벼밭(논)이 20정보. 50명 여자가 소 달구지로 힘들게 20정보를 가꾸는 것임. 바다가 인접해 있어 배타는 일을 하는 재소자도 가끔 있었음. 보통 놈물 수뢰 등 경제범은 약한 강도의 노동을 하기도 함.

교화소 기상시간은 오전 5시, 농사일을 마치고 밤 9시에 들어와 10시에 취침함.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는 자는 것 외에 따로 시키는 일은 없었음. 점심의 경우는 반에서 한 두명이 교화소로 들어가 밥을 타오면 밖에서 농사일 하다가 이동식사를 함.

(나) 강간

교화소 안에서 특별히 악랄했던 계호는 ○○○(신고인이 출소 당시 약 59살로 지금 정년퇴직 하였을 것)이라는 자임. 증산 교화소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계호 들 중에서는 그나마 모범이라고 할 만한데, 계급은

줄2+별2임.

교화소에서는 “막갈리”라 하여 여자들 4명씩 조를 짜 밤에 논을 지키려 막을 쳐놓고 밖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위 ○○○이라는 자가 젊은 여자(○○○출신)를 임신시켰고, 이 여자는 임신 6개월째에 병보로 나감. 보안소에서 이 사실을 듣고 검열을 나와 ○○○이 여기저기 조사 받으러 불려 다녔으나 이 자의 형이 ○○○ 부소장이어서 전드릴 수 없었음. 교화소 안에서 계호들이 여자 수감자들을 겁탈하는 일은 수시로 일어남. 단, 피해 당사들은 어차피 신고할 테도 없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그 계호가 신고인의 노동분량을 줄여주거나 반장을 시켜주거나 하는 등 편의를 봐 주었으므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음.

(다)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위 ○○○는 재소자들을 때릴 때 삽을 이용, 삽날 등으로 사람을 때림. ○○○ 뿐 아니라 모든 계호들이 재소자를 일상적으로 구타했는데 대부분은 손도 대기 더럽다며 군화 또는 천신발을 신은 발로 얼굴, 몸통 등을 가리지 않고 발로 찼음.

또한, ○○○(여자, 보안원, 당시 28세, 미혼, 줄1+별4)도 재소자들을 많이 구타를 함. 중국 갔다 온 재소자들의 좋은 옷 등을 다 빼앗아감. 이 자의 구타 방법은 주로 각자(각목)로 특히 어깨 부위를 때리는 것임. 기분이 안 좋으면 “야, 반장, 가져와”라고 하여 각자를 달라고 한 뒤 재소자들을 각자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음. 맞은 재소자들은 소화를 못시켜 먹은 것을 토하곤 하여 더 허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음. 또 머리채를 잡아 흙벽에 부딪히게 하는 구타 방법도 사용하였음.

(라) 노예화

신고인은 총반장이 되어 소 직속이 된 후에는 구타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어짐. 반장에게는 보안계장 ○○○, 교양과장 ○○○ 등 특정 인물에 대해 밀정 임무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음. 총반장은 저녁 9시면 각 반 반장들에게 인원보고를 받음(예: 막갈리 4명인데 오늘은 5명 나갔음 등). 계호들은 다 교화소 단지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함. 따라서

재소자들을 불러 개인 머슴처럼 교화소 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음. 또 계호들의 횡령이 빈번한데, 벼 생산하는 곳 담당은 벼를 횡령하고, 식당 담당은 콩을 횡령하는 식임. 이럴 때 죄인들을 동원, 벼 가마 등을 지어다가 자기 집에 부리게 함. 내부에서 근무하는 여자 계호들은 횡령이 어려우니, 죄인들을 시켜 농사일 하고 들어올 때 주머니에 벼 이삭 등을 넣어오게 한 뒤 이를 빼앗아가는 방법을 사용함. 내부에서 근무하는 계호는 여자 3 남자 1이 있었음.

(마) 비인도적 행위

식사는 통강냉이 간 것과 콩(일명 단지밥)으로 되어있고 소금국이 같이 나옴. 국가에서 정한 분량이 있어 한 끼에 콩이 136알 이상(136~150알)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계호들이 중간에서 빼돌리는 것이 많아 실제로 밥을 풀어서 세어보면 40~50알 정도 들어 있었음. 가끔 겹열이 나오는데, 이 때만 콩 개수가 제대로 나오고, 계호들이 재소자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늘 이렇게 나온다고 해라”고 명령하였음. 재소자들은 식량이 모자라 밖에 나가 농사일을 할 때, 벼 이삭을 몰래 주워 생으로 먹기도 하고, 모내기 중 개구리가 나오면 껌질을 벗겨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고, 뱀도 잡아서 주머니에 식량으로 넣고 다니고, 쥐 잡은 것을 가지고 재소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였음. 교화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고 보통 하루에 2~3명, 여름에는 하루 6,7 명씩 죽어나감. 사망원인은 주로 혀약(영양실조)으로 특히 중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잘 먹다가 갑자기 줄어든 식사량 등에 적응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았음.

교화소에서 면회는 들어와서 1달간의 면회 금지기간이 지나면, 매주 수요일 한 차례 가능함. 원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교화소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고 소문이 나니 2003. 8. 경부터 면회를 가능케 함. 단 무기형을 받은 죄수들은 면회가 일절 허용되지 않음. 이들은 밖에 농사일도 못 나가고 안에 갇혀있음.

전거리교화소는 가족이 동반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중산교화소는 불가능함.

(바) 살해

신고인이 교화소에 들어가자마자, 밤 11시 넘어 재소자들을 다 모이라고 함. 모여보니, 19살 남자 재소자(성명불상)가 도주하다 21살 안전원에게 총에 머리를 맞아 죽었음. 사지는 멀쩡한데 시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 다 날아감. 재소자들에게 도주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 시체를 두루 보임.

또, 함께 수감되어 있던 20대 초반 아가씨(성명불상)가 병에 걸려 눈에 구더기가 슬고, 옷도 거의 헬벗은 채 누워서 헛소리로 “내 밥 달라, 내 밥 달라”고만 중얼거림. “단지밥”이 나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후 몇 시간 만에 죽었음.

사람이 죽으면 담요가 없어 시체를 담요에도 못 쌈. 증산 교화소 단지에는 “꽃동산”이라고 불리는 민둥산이 있는데 여기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 묻는 곳임. 신고인이 직접 남자 재소자들과 함께 묻은 시체 중에 기억나는 것은 2005. 6. 경 소달구지를 끌고 가 묻은 시체임. 죽은 사람의 이름은 ○○ ○(사망 당시 29살, ○○출신, 혀약 3도로 죽었으나 병명은 심장마비로 기재, 교화소 안의 모든 죽음은 다 심장마비로 기재함. 부검 등을 통해 영양실조를 밝혀내거나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임)였는데 당시 이 시체에 부여된 번호는 3721번이었음. 뜻을 물어보니 그 해 1. 1. 부터 죽은 숫자를 세어서 3721번째라고 함.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증산 교화소가 서해 쪽이라 해안에 둑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던 재소자들이 넘어온 파도에 휩쓸려 천명 가까운 숫자가 죽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함.

시체는 보통 우마차에 대충 실어 얇게 판 구덩이에 묻고 평평하게 함. 화장을 하지는 않고 묻는 곳도 폭을 좁게(30cm 정도) 파서 시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꾹꾹 눌러서 넣을 정도임. 꽃동산은 풀 한포기 없는 민둥산(붉은 진흙산)으로 시체를 얇게 파서 온 산에 묻었기 때문에 발을 디디면 물컹 물컹 함. 증산 교화소 있는 마을에 들어서면 꽃동산만 풀 없는 산이라 유독 눈에 들어옴.

한번 시체를 묻으려 다녀오고 나면 정신적 충격이 커서 다시는 가기 싫었으나, 신고인은 반장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생기면 시체를 묻고 소에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음. 신고인이 직접 묻으

러 간 경우만 해도 7회 정도 됨. 묻으러 갈 때는 내부 선생이 남자 1명, 여자 3명이 같이 감. 지금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으로 꿈에 꽃동산을 보고 악몽을 꾸는 바람에 칼을 베고 자기도 함.

증산 교화소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시체고에 넣어 석회를 채우고 6~7구 모일 때까지 보관하며 어느 과 시체 바치는 날이 오면 시체를 소달구지에 싣고 꽃동산에 가서 묻음. 사망자가 많을 때는 소달구지 4대에 시체 10구까지 한 번에 싣고 간 적 있음. 다만 여름에는 시체를 모으지 않고 그때그때 묻음. 시체는 가마니로 말아 들 것에 두 구씩 실어 나름. 워낙 사람이 먹은 것이 없어 시체가 가볍기 때문에 두 구씩 들것에 얹어도 남자 둘이서 들고 갈 만 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교화소 3과에 함께 있었던 ○○○(○○출신, 당시 약 28세), ○○○(○○출신, 신고인보다 약 10살 연상, 6번째 북송이었음), ○○○(출신지 미상, 신고인보다 연상, 현재 대한민국 입국)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g) 강간,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화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7.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중앙검찰소 함경북도 검찰소 검사
○○○, 변호사 ○○○
- 증산 교화소 과장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복송 되어 증산 교화소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6. 12. 재판소
- 2006. 12. ~ 2009. 3. 증산 교화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06. 12. 사회안전부 구류장에 있을 때 변호사가 있었지만 신고인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국 판사에 의해 3년형을 선고받음.

(2) 구타 등 가혹행위

2007. 증산 교화소에서는 생활반장이 독방에 수용되었다가 풀려나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 보안원을 의도치 않게 밀치고 안아 주었는데, 이로 인해 보안원이 신고인을 발로차고 때려서 얼굴 등 온몸에 명이 들었음. 2007. 탈곡을 할 때 동료 수용자가 벼 한가마니와 무우 하나를 바꾸어 먹은 것이 발각되어 ○○○과장이 갈구리를 가지고 마구 때림. 갈구리가 부러지자 더 구타하기 위해 신고인의 갈구리를 가지고 가려고 해 신고인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몽둥이로 신고인도 죽탕되게 마구 때림. 증산 교화소에서 사망의 원인은 전염병과 영양부족임. 보통 한 달에 30명 정도를 허약반으로 보냄. 같이 입소한 6명 중 4명이 사망함(3개월 만에 3명이 열병으로 죽고, 1명은 허약으로 죽음).

(3) 증산 교화소의 실상

증산 교화소에 도착하면 영수증을 주고받은 후 입소 온몸검사를 받음. 이후 1개월 동안 신입생활을 하는데 10여평 공간(추정치임)에 56명이 생활했음. 규모는 1개과 당 500여명으로 9개과(남성 5개과, 여성 4개과)가 있어 4,500여명 정도 수용되어 있었음.

농사를 짓는 곳이라 모내기철에는 04시에 기상함. 일반적인 일과는 05:30 기상(하게 05:00), 점검, 아침식사, 점검, 노동(농사), 점심(배달), 노동, 저녁 9시 식사, 공부(생활준칙, 김정일 말씀 등), 밤 10시 취침으로 되어있었음.

식사는 종이컵 정도의 ‘단지밥(통곡, 강냉이 등으로 밥을 해서 물과 섞은 뒤 휘저어서 종이컵 모양으로 찍어냄)’을 수용자들의 급수별로 증감해서 주

며, 반찬은 소금국, 간혹 염장한 시래기를 줌.

신입이 끝나고 반이 배정된 이후 좁은 거실에 6~7명이 수용되었는데 창문이 있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더워서 죽을 지경이며, 이와 벼룩이 많고 세수도 시키지 않음. 면회는 가능하고 외부음식은 반입은 되지 않고 면회장에 가서 먹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교화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화소



■■■ 제3부 ■■■

기타 구금시설



2012. 3. 15.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 주제발표

기타 구금시설

I . 국가안전보위부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2011. 3. 15.

나. 신고인

- 김태진(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회령시 보위부 담당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함북 회령시 보위부 감방에 수감되어 고문을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987. 8. 경부터 1988. 3. 경까지 약 8개월간 함북 회령시 보위부 감방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신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6살 때 함북 청진으로 이사하여 북한에서 성장했으나 1987. 3. 경 살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탈출하였다가 1987. 8. 경 중국 공안에 체포돼 청진에 있는 무산군 인민보안성 소속 집결소에 강제송환됨.

(2) 구금 및 고문

(가) 인민보안성 집결소에서 심한 고문과 심문을 받고 4개월 후 청진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구류장에 보내짐. 피해자는 중국에 있는 동안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데, 갖고 있던 성경책이 들통 나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종일 정좌한 채 같은 자세로 있어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구둣발과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였음.

철창에 수갑을 채우고 매단 뒤 권총으로 빼 부위만을 골라서 때렸음.

(3) 비인도적 행위

(가) 추운 날씨에도 발가벗긴 채 잠을 안 재우고 감방에 앓아 있게 하였고, 용변을 볼 때 방안의 온도가 너무 차서 변기통 주변이 얼어붙어 그 위에서 일을 보기에 고통스러웠음. 위생관리가 안 되고 씻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방 내에 득실거리는 이와 벼룩들도 고문이나 지독한 추위 못지않은 고통이었음. 앓아 있으면 얼굴로 이가 기어 다녔음.

(나) 수감자들끼리 말을 하다 걸리면 마주 세워 놓고 서로 짜 때리기를 시키는 비인간적 처벌과 고문을 당하였음. 조사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쇠못을 집어 삼켰는데,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중 배를 째기 전에 못이 변으로 나온 적도 있었음.

기타 구금시설

(4) 자의적 구금

1988. 3. 경 재판도 없이 당 정책훼방죄, 불법월경에 의한 국가 반역죄, 반혁명분자라는 죄명을 씌워 요덕 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에 강제 수감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및 남아 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북한인권침해사례집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정광일(남)

다. 피해자

- 신고인, 안권순, 최상수

라. 가해자

- 회령시 보위부 담당 보위원 ○○○, 함경북도 도보위부 반탐처장 윤○○, 함경북도 도보위부 반탐지도원 홍○○ 등 2명

마. 신고요지

- 보위부 지하 감방에 강제로 연행한 다음 9개월간 구금하고 모진 고문을 가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999. 7. 22. 부터 2000. 3. 까지 8개월간 회령시 보위부 지하 감방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구금(국가안전보위부 지하감방)

1999. 7. 22. 회령 친구 집에 있는데 갑자기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쳐 신고인이 1998. 11. 조선평양무역회사 청진지사장으로 임명받아 중국에서 근무 중 한국인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로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회령시 보위부로 강제연행해서 지하 감방에 감금.

(2)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조사과정)

(가) 지하 감방 감금 1주일 후부터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 윤○○의 지휘 하에 회령시 곡산공장 보위부장 지○○와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지도원 홍○○ 등 2명이 고문. 첫 조사에서 간첩혐의를 부인하자 가로세로 5cm 굵기의 각목으로 2시간동안 온몸을 구타하여 머리에는 지금도 흉터 3곳이 남아있음.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이가 모두 부러져 4년간 치아 없이 생활하다가 이후 중국으로 탈북해서 5년만에 병원 치료. 조사 중 구타 및 수면방해는 일상적으로 반복됨. 고문 중 “비둘기 고문”은 양손을 뒤로 빼서 쇠창살 밖에 수갑으로 채워놓는데 앓지도 서지도 못해 하루가 지나면 어깨 근육이 굳고 가슴뼈가 새가슴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몸 전체가 굳어버림.

(나) 지하 감방에 같이 갇혀있던 다른 2명은 수감 중 고문 때문에 사망하였는데, 그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안권순(남, 당시 29세) : 전 회령시 유선탄광 성남갱 노동자로 식량난 때문에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 중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잡혀 와 오래 고문을 받은 끝에 2000. 1. 6. 지하감방에서 사망. 당시 매우 추운 날씨로 땅이 얼어 매장할 수가 없자 시신을 마대에 꺾어 넣어 보일러 화구에 넣어 소각처리.
- ② 최상수(남, 당시 65세) : 회령시 원산리에 살던 국군포로로 중국으로 탈북했던 아들 최○○을 통해 한국의 친척 소식을 듣고 탈북하여 중국 연길에서 한국에 가려 했으나 출발 하루 전에 윤○

기타 구금시설

○와 지○○의 지시를 받은 납치조(박○○, 김○○, 김○○, 지○○, 유○○)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옴. 1999. 11. 초경 보위부의 모진 고문으로 사망. 시신은 어디론가 실어감.

(3) 비인도적 행위(열악한 의식주)

- (가) 보위부 지상 감옥에는 탈북자들이 수감되고, 간첩죄 혐의자나 정치범들은 지하 감방에 수감됨. 지하 감방에는 간수도 없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아 앓은 자리에서 그냥 바지에 용변을 봤으며 아무리 소리치고 비명을 질러도 위에서는 들리지 않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테니 죽어라”는 말도 들음.
- (나) 식사는 보위부원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줬는데 제대로 주지 않고 이틀에 한 번 줄 때도 있었음. 그래서 수감 중 몸무게가 75kg에서 38kg으로 감소.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보위부 조사원들에게 밥을 주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해서 먹을 것을 많이 받아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간첩혐의를 부인해버렸더니 더 심하게 구타당함.
- (다) 옷은 한 번도 갈아입지 못해 7. 끌려갈 때 입었던 여름 남방을 한겨울에도 그대로 입음. 열이 심하게 난 적이 있으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음. 억지로 간첩혐의 시인 후 지상감옥에서는 학경북도 보위부에 있던 친구가 집에서 덮던 이불을 갖다 놓아 줘서 얼어죽지 않고 살 아남을 수 있었음.

(4) 자의적 구금(재판이나 기타 사법절차의 부재)

절대로 간첩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 계속되는 구타와 “인정하지 않으면 죽어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보위부원들의 말에 살기 위해 협의를 시인. 마지막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보위부 검사가 와서 조사를 했는데 구타 때문에 협의를 인정한 것이고 억울하다고 했더니 조사원들이 다시 구타. 보위부 검사는 보위부 조사원들과 미리 입을 맞춰 놓으므로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음. 지하 감방에서 간첩혐의를 시인한 후로는 재판이나 다른 어떠한 사법절차도 없었고 지상감옥으로 보내졌다가 2000. 4. 6. 요덕수용소로 보내짐.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과 남아 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анд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제8조 제2항(전쟁범죄) (a) (ii) 고문, (iii)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vi)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vii)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9. 6.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27~8세 정도,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길었음, 아버지가 평양에서 안전부 근무한다는 소리가 있었음)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북송되어 ○○군 보위부와 ○○○보위부 등에서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9. ○○군 보위부,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부당한 신체수색

감방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도 옷을 다 벗기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여러 번 시킴. 감방에 들어갈 때는 허리를 숙이고 뒤로 들어가게 됨.

(2)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의 머느리가 면회를 와서 강냉이밥을 조금 숨겨 들어와서 이를 정도 있다가 먹었는데, 상해서 설사가 나서 계호원의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적발되었음. 열이 너무 나고 하여 작은 수건을 머리에 올리고 있었는데 보위부 ○○○가 신고인에게 창살 구멍에 발을 내밀라고 하고 발을 마구 비틀고 구둣발로 마구 밟음. 잠을 자지 말라고 하고 손을 위로 올리고 3~4시간 동안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함.

신고인의 아들(○○○)은 ○○군 ○○보위부로 이송되었는데 안전원이 아들이 똑바로 걷지 않는다고 길에서 마구 때리고 보위부 마당에서도 구타를 함. 3~4일 있는 동안 아들은 장작몽둥이(길이 1m정도)를 가지고 사정없이 맞았음. 너무 때리니까 배고픈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함. 원래 신고인을 내보내고 3일 후에 내보낸다고 했는데 한국 선교사 만난 것을 이유로 내보내지 않아 ○○군 보위부에서 설사가 심해 죽었음.

신고인은 너무나 신경적 타격을 입어서 그런지 하나원에 있을 때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할 때가 많았고, 퇴소하여서도 한동안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허리, 다리와 온몸이 아픔.

(3)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감방바닥은 마른 널(나무판자)이 깔렸는데 틈이 벌어져 벌레가 들어오고 구석에는 변기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낮게 벽을 쌓아 엉덩이만 가리게 함.

식사는 콩알이 한 두알 의무적으로 있고, 강냉이 밥이고, 국은 배추 멀건 소금국임.

기타 구금시설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지도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9.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은 ○○○보위부에 수감될 때에 성기에 숨긴 것을 찾아낸다는 빌미로 옷을 벗기우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고문을 당하였고, 성기를 들여다보는 가혹행위도 경험하였음. 다른 일행과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수히 폭행당하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고문(움직이면 무자비한 구타를 당함)을 당하였음.

○○○안전부의 집결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과 구타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며, 그곳에서 같이 수감된 23세 ○○○(여)가 고문과 영양실조로 죽었고, 또 다른 26세 여자가 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죽는 것을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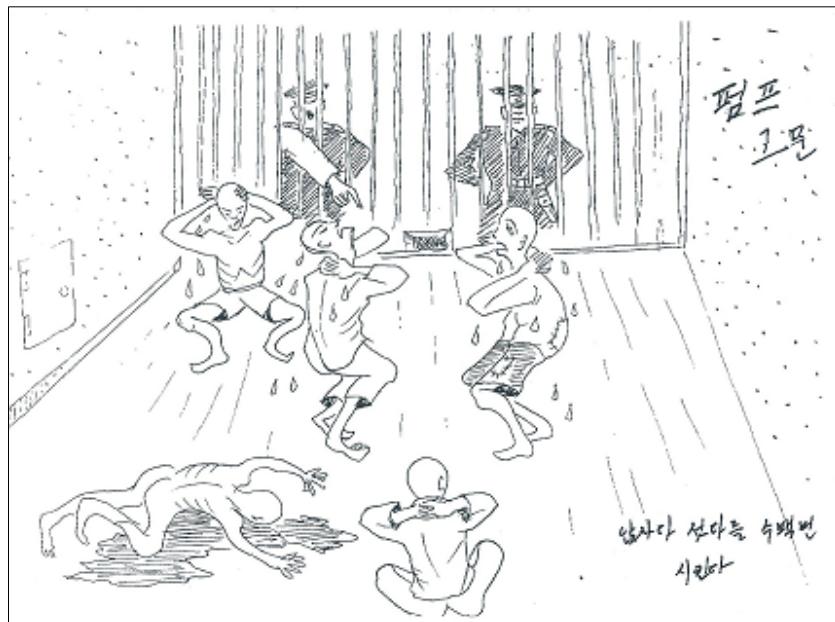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북한인권침해사례집



기타 구금시설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5. 24.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시 보위부 반탐과장 ○○○, 지도원 ○○○등 7명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국군포로를 탈북시켰는데 이로 인해 ○○시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1. ○○시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2001. 보위지도원 2명이 와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보위부 반탐과에 가니 반탐과장 ○○○이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하고, 구둣발로 차면서 너희 때문에 공화국이 좀 먹는다고 하면서 구류장에 쳐 넣으라고 소리침.

구류장에서 5일 후 반탐과 지도원 7명이 들어와서 신고인을 대기실로 불러서 국군포로를 어떤 방법으로 중국으로 보냈는지를 취조하며 7명이 달라붙어 때리고 밀대로 구타하여 머리가 터져 2~3cm 상처가 났음. 상처를 꿰메어 주지도 않고 계호들을 시켜 식당에서 된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머리에 붙여 놓았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타 구금시설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구류장 반장 ○○○(같은 동료 수용자, 37~8세 정도, 일명 '강타기죄'로 불림), ○○보위부 간수 ○○○(하사 계급, 25~6세, 1m 65cm 정도 키)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복송 되었을 때 ○○보위부 구류장 등에서 구타와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2. ○○보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이 ○○보위부 구류장 거실의 좁은 입구로 처음 거실에 들어 갈 때였음. 신고인은 겨울에 입으려고 괜찮은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거실 안에서 동료수용자가 바꿔 입으려고 신고인의 옷을 잡아채서 싸움이 붙었음. 그러자 간수 ○○○(하사 계급, 25~6세, 1m 65cm 정도 키)가 수용거실 반장 ○○○(37~8세 정도)에게 ‘이 새끼 교정주라’고 하자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신고인을 집단으로 구타해 정신을 잃었음. 계호원이 반장을 시켜서 들이차고 내리차고 사정없이 때림. 이로 인해 왼쪽 눈옆(2cm 정도 상처)과 오른쪽 광대뼈 옆, 윗입술부위가 찢어져 상처가 났으나 치료도 받지 못함. 계호원은 신고인에게 손을 쇠창살 밖으로 내밀라고 한 후 불갈구리(갈탄난로의 불쏘시개, 7~80cm 약지손가락 굵기)로 손톱을 내리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위쪽이 찢어지고, 이로 인해 지금도 글씨를 쓸 때면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이 부르르 떨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사용을 못하고 있음. 가운데 손가락 손톱 윗부분에 작은 흉터가 있음. 또 뿐뿌질(앉았다 일어서 기)를 3,000개 하도록 시킴.

이송 도중의 인권유린 사례로는 조사가 끝나고 ○○시로 이송될 때 ○○시 ○○역에서 단체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 기차 길에 한 줄로 늘어서서 남자는 서서, 여자는 앉은 자세로 다 같이 소변을 누게 하여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음.

2002. 10. 말경 ○○도 안전부 집결소에서 목격한 사례로서, 임신한 여성(성명불상)이 1명 들어왔는데 복도 끝이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호원이 ‘중국 갓나이 죽이 그렇게 좋데’ 등등의 말이 들리더니 ‘아구’ 하는 여성의 비명이 들렸음. 아마 배를 걷어 찬 것으로 보임. ○○출신 남성(성명불상, 45~6세)이 설사로 죽게 되자 묶어서 산에다 갔다가 버림.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수감시설 내에서는 조사이외에는 정자세 유지, 움직이면 움직인다고 때림. 의복은 신고인이 입은 그대로 입고 있고, 식량은 쌀 강냉이죽으로 종이

기타 구금시설

컵 1개 정도, 알루미늄 밥그릇이며, 숟가락 꼭지는 제거하고 지급함.

○ ○ 구류장의 경우 거실 구석에 엉덩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벽돌을 쌓아 놓고, 휴지는 작은 천조각을 사용하는데 한 사람이 사용하고 물에 씻어서 놓으면 다음 사람이 다시 사용. 화장실 갈 때도 ‘수교인 ○○○ 변소 갈 수 있습니까’라고 반장에게 물어보고 반장(같은 동료 수용자)이 허가해야 가능함. 목욕은 불가능하고, 구류장은 노동 등 일과가 없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7. 13.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의 부), ○○○(신고인의 모), ○○○(신고인의 여동생)

라. 가해자

- 수용소 미상(직장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국가보위부 5~6명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연행했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로 갔을 거라고 함)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의 부모와 여동생은 국가안전보위부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음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부) : 2002. ○○북도 ○○읍 ○○공장
- ○○○(모), ○○○(여동생) : 아버지가 연행된 지 1주일 후, ○○읍 자택

기타 구금시설

나. 인권침해의 내용

북한 무역업에 종사했던 아버지는 1994. 해외에서 귀국 후 1998. ‘성경책’, ‘단파라디오’, ‘성경구절’ 책자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주었고, 외국생활을 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밝히기도 했으므로 아마 이로 인하여 국가보위부에 연행되어 갔고 가족들도 함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생사를 알 수 없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계호원 ○○○, ○○보위부 계호원 ○○○
- 시 ○○군 노동교양소 계호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2. ○○보위부 및 ○○보위부
- 2003. ○○시 ○○군 노동교양소

기타 구금시설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은 2002. ○○보위부에 15일간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보위부원들이 열 순가락도 채 되지 않는 국수 죽을 먹이면서 심한 고문을 하였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협박하고, 얼굴과 머리, 온 몸을 봉동으로 때리고 구둣발로 짓밟았음.

이후 ○○보위부에서 ○○보위부로 이송하여, 훨씬 더 강한 폭행과 고문을 하였는데, 특히 돈을 숨겼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신고인의 자궁까지 벌려 보고, 신고인을 비롯한 여성들을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여 시키고, 거꾸로 엎드리게 해서 자궁을 벌려보고, 손을 자궁에 넣어 뒤집어 보는 것은 예사였으며, 안전부 구류장에 40일 정도 있으면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도록 강박하면서 봉동으로 심하게 매를 때렸는데, 구두 발로 차고 나무 봉동으로 두들겨 팤음.

2003. 신고인은 ○○시 ○○군 소재 ○○교양소로 이송되어 1년동안 강제 노동을 하였음. 강냉이 농사를 하면서 강냉이를 숙소까지 옮겨야 되는데, 힘들어서 조금 적게 지고 가다 걸리면 봉동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거나 마구 들고 때리고, 발로 찼으며, 장마철에는 강에서 마데 작업을 하였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죽지 않을 만큼 때렸으며, 힘들어서 울면 더 무거운 것을 들게 하였음.

너무나 배고파서 배추밭을 지나다가 이를 뜯어 먹다 걸리면 봉동으로 매를 마구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음.

(2) 구금시설에서의 생활

강제 노동단련소에서 배급되는 식사량은 턱없이 적어 배고픔에 항상 시달렸으며,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보위부 반탐과장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군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군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이 탈북 하였다는 이유로 보위부 반탐과장이 교대로 취조를 하면

서 발로 차고 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밤이면 잠을 재우지 않고 한 달리로 서 있게 하는가 하면 뒷짐을 지고 허리를 굽히고 벽에다 이마를 대고 몇 시간씩 서있는 기합으로 고통을 주었음.

11m² 정도의 방에 약 30명 정도 감금한 뒤 앉을 자리도 없어서 이들을 6열로 세우고 절반을 쪼그리고 앉아 있게 하면 나머지 절반은 서 있는 것으로 별을 주고, 한 사람이라도 말을 하면 서로 마주 세우고 때리기를 시키고, 몇 시간씩 앉았다 일어섰다 기압을 주고 지쳐서 쓰러지면 마구 밟고 때림.

이로 인해 겉지도 못하는 신고인을 ○○북도 안전국 집결소로 이송하였다가 다시 약 두 달 뒤 ○○남도 ○○시 안전부 구류장으로 이송하여 그곳에서 재판을 한 뒤 ○○남도 ○○교화소에 보냈고, 교화소에서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수시로 때렸음.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낮에는 불러내어 일을 시키고 밤이면 조사를 하였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시 보위부 군관 ○○○등 4명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시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시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은 ○○시 보위부에 수감되었음. 그곳에서 이유도 없이 말을 안

듣는다고 손을 내놓게 하여 보위부 군관 ○○○ 등 4명에게 짓밟혔음(지금도 상처나 남아 있음). 특히 ○○○으로부터는 이유 없이 이마를 각목으로 구타당하여서 이마에 흉터가 남았고, 옆사람과 이야기한다고 ○○○이 신고인의 머리에 도끼를 던져 아직도 정수리에 도끼 자국이 남아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타 구금시설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17.

나. 신고인

- 이○○(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원 중좌 ○○○(당시 33세)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북한을 탈북하려다 북송되어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군 보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및 가혹행위

보위부 여자 교환수(전신전화 교환원)들이 옷을 모두 벗기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10명 정도씩 항문, 자궁에서 손을 넣어 돈을 검색하고 뽑뿌질

을 50개씩 시켰음. 보위부 보위원 중좌 김○○(당시 33세)이 1주일에 2-3번 조사하면서 “한국가자고 했다는 말”을 자백하지 않는다고 30cm 정도 각목으로 팔, 다리를 때렸고, 책으로 머리도 치고, 따귀도 치고 했음. 코피가 터지고 팔다리에 피멍이 들었었음. 머리채를 채고 혼들었음. 또 수감자 일행 중 한명이 방귀를 뀌었다가 뒷짐지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소위 뽑뿌질을 100명씩을 한꺼번에 300개씩 시켰음.

후유증으로 지금도 두통이 오고 자다가 헛소리를 치고, 팔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듦. 만약 자백했으면 영영 못나왔을 것임.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조그만 방에 100여명이 수감되고, 난방도 없고, 장판바닥에 사람이 겹쳐서 잠을 잤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보위부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 후 강제북송되어 ○○군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군 보위부, ○○군 단련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부당한 신체검사 등

- 보위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도 옷을 내복만 남기고 벗게 한 후

짐은 모두 한 켠에 놓게 함. 내복만 입힌 채로 여자들을 복도에 쭉 앉힌 후 4~5명씩 한 방으로 불러들여 몸수색을 했음.

북송된 탈북 여성 중에는 당시 최고령이었던 분으로 81살 할머니도 있었고, 3살된 아이도 있었는데 전부 몸수색을 거침. 방 안에는 17살~20살 밖에 안되어 보이는 여자 두 명(군인 같으나, 당시는 사복을 입고 있었음. 후에 계급장이 두 줄인 군복을 입은 것을 본 것 같기도 함)이서 몸수색을 했는데, 방에 들어온 4~5명의 여자들에게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나체로 한 줄로 세운 후 다리 벌리고 뛴뛰기를 100번 시켰음. 자궁에 숨긴 돈 등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함. 직접 다가와서 젖가슴 밑까지 뒤집.

(2) 구타 및 가혹행위

뛴뛰기 도중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100번을 다 못 뛰고 중간에 쓰러졌다. 그러자 감독을 하던 젊은 여자 두 명이서 죄수들이 벗어놓은 옷 중에 혁대를 빼내어 그 할머니를 마구 내리침. 신고인이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를 감싸며 막으니 대신 신고인을 그 혁대로 때림. 신고인은 반사적으로 웅크린 자세에서 등 부분을 중심으로 약 50대 정도 맞았음. 지금은 흉터는 없으나, 당시는 살이 시퍼렇게 맹이 들다 못해 툭툭 터졌었음. 이렇게 맞고도 또 뛴뛰기를 해서 100번을 채워야 함. 이런 몸수색이 통과되면 나와서 2차로 짐 검사를 함. 간수들이 죄수들의 짐 중에서 자기네가 쓸 만한 것은 다 꺼내감.

몸수색과 짐 검사가 끝나면, 45인승 버스의 약 반 정도 되는 크기의 방에 수용자 60명 가량을 집어넣음. 너무 좁아 다리를 무릎 한쪽을 세워 상체에 불인 자세를 만들어야 겨우 앉을 수 있음. 이 방의 명당자리는 변기 위였음. 변기 옆에 낮은 담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 위에 앉으면 그나마 다리를 펼 수 있기 때문. 수감자 중 제일 힘이 센 이가 여기 앉았음. 서로 불편하니 수시로 수감자들 간 싸움이 남.

여자 감방이므로 이 비좁은 와중에도 수감자들은 생리를 함. 신고인은 잡혀갈 때 짐을 못 챙겨가고 잡힐 당시의 여름 옷 그대로 몸만 들어왔음. 자기 짐 속에 옷가지가 있거나 여름이지만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었던 수감자들은 그나마 그 옷을 벗어 생리대로 쓰지만 없으면 그냥 피가 흐르는 대

로 둘 수밖에 없음.

워낙 비좁아 여기서의 운동은 기껏해야 제자리에서 잠깐 일어서는 것. 이것조차 간수들에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선생님(간수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불러야 함), 잠깐 일어나도 되겠습니까”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그러나 일어나는 것 자체도 고통임. 일어서거나 앓는 등 누군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악취가 더욱 진동을 하기 때문.

감시가 삼엄하여 밖(야외에 파 놓은 구덩이)에 대변을 보러 갈 때에도 군대가 지킴. 식사는 그릇과 숟가락은 있지만 그 내용은 국수 몇 올이 든 죽 같은 것임.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한 사람씩 불러내서 취조를 하고, 취조가 끝나는 대로 단련대로 보내짐. 신고인은 이 ○○보위부에 10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고 취조를 받고 단련대로 보내짐.

(3)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2003. ○○단련대로 보내진 이후 단련대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밤 10시 넘어서까지 단련을 받음. 당시 단련대에는 만삭의 임산부와 할머니까지 잡혀왔었음. 여기서 가장 불쌍한 것이 임산부임. 중국 종자를 받아왔다고 단련대 안전원들로부터 갖은 천대를 받음. 생활하면서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안전원들에게 매를 맞는 일이 다반사.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가는 사람도 보았는데 관도 없이 거적에 말아 산에 아무 곳이나 묻었음.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렇게 묻는 것을 “직파”라고 하였음.

단련대에서는 고된 노동을 시키는데, 밭에 가서 여름 뼈약볕에서 밭일을 하게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재우지도 않고 공부(김정일 말씀 암송 등)를 시키며, 시킨 것을 못 외우면 얻어맞거나 벌칙으로 팔을 펴서 뒤로 맞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를 100번씩 시킴. 이렇게 괴롭히다가 12시쯤 되어야 취침할 수 있게 해 줌.

식사는 “송치”라고 하는, 옥수수 알을 다 먹고 남은 옥수수 대를 가루낸 것과 풀을 섞어서 죽을 쑤워 줌. 반찬은 소금임. 여기서도 씻지도 못하고 심

지어 아침에 세수도 안 시켰음. 씻지 못해서 가렵고 답답하니, 여자들은 밖에 밭일하러 나갔다가 물 고인 곳만 보면 가서 목 등을 씻었음.

당시 4살~5살 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수감된 여자(약 30살쯤 되어 보임)가 있었는데, 아이 먹일 것이 없어 그 속에서 애가 죽었음. 애 엄마는 울지도 못하고 죽은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음. 사람이 너무 슬퍼도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걸 그 때 알았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지도원 ○○○(나이는 약 28~29세. 당시 미혼이라고 들었음. 키는 크고 마른 체력, 여자처럼 곱상하고 말쑥한 인상에 흰 피부)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 후 강제북송되어 ○○군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군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부당한 신체수색

○○군 보위부에서 취조는 복도에서 하는데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화장실 냄새가 진동함. 이 복도에 여자들 한 줄로 세워 속옷부터 생리대까지 다 벗게 한 후 이 잡듯이 벗어둔 옷의 고무줄 사이까지 다 뒤지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30개씩 시켰음. 신고인은 몸이 불편하니 이것은 시키지 않고 세워만 둠. 몸수 색을 진행하는 자는 무전소(무선전보 업무)에서 근무하는 여자였음.

(2) 구타 등 가혹행위

잠을 잘 때도 공간이 좁아 다리를 벌리고 앉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앉고 하는 식으로 겹쳐져서 잠을 잡. 약 보름을 ○○보위부에서 씻지도 못하고 지냄. 낮에도 무릎꿇고 앉아야 하고, 공간이 너무 좁아 재소자간 “할머니, 좁으니까 당겨 앉으세요”등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음. 그러자 보위부 직원이 신고인을 불러 1m가 조금 넘는 굵은 나무 봉둥이로 뒤통수 중간을 때림. 신고인은 순간 쓰러져 의식이 없었는데 때린 ○○○이 신고인을 일어나라고 쿡쿡 찔러봄. ○○군 보위부에서 신고인을 때리는 등 가장 악랄했던 것은 당시 가장 나이가 젊은 남자였음. 나이는 약 28~29세. 당시 미혼이라고 들었음. 키는 크고 마른 체력, 여자처럼 곱상하고 말쑥한 인상에 흰 피부였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기타 구금시설

-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보위부 지도원 ○○○(군인, 사복차림의 남자), 과장 ○○○
(당시 50대 중반, 남자, 늘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는 약 167cm, 퉁퉁하고 눈이 컸음)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여러 차례 탈북하여 중국에서 강제북송을 당해 ○○군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군 보위부, 2004. ○○군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비인도적 행위 – 부당한 신체수색

몸수색을 할 때 20대 중반의 남자 5~6명이 여자 직원이 입회하지도 않은 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복도 양 옆에 한줄로 세운 후, 여자들을 옷을 전부 벗게 하고 손을 머리위로 올리고 뿌뿌질(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고 사타구니를 만지거나 하며 머리카락 속부터 발 끝까지 검사. 몸수색 중 값나가는 물건(가락지, 목걸이 등)은 가져감. 바로 맞은 편의 아이들 줄에서 자식들이 엄마가 몸 수색 당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음. 벗어놓은 옷은 아기 기저귀 끈까지 다 펼쳐서 수색함. 몸수색 중 나이어린 처녀들이 부끄러워서 반항하면 각자로 몸통, 사지 등을 때림.

몸수색이 끝나면 옷을 주워입고 방으로 감. 방은 성냥개비 통처럼 8평짜리 한 방에 인원이 빽빽하여 들어가자마다 앉아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자기 앉을 자리는 없는 것임. 임산부가 두 명 있었는데 면적이 크니 수감자들에게 눈총을 받았음. 방 안에 수세식 나무뚜껑 덮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임산부들은 여기로 밀려남. 수세식 변기이나 물은 새벽에 잠깐, 적은 양만 나옴. 이 때까지는 변이 꽉 차있어 냄새가 심하고 물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물이 내려가면 이 물을 식수로도 이용했음. 순간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수전을 적셔 저장용 물통 대용으로 사용하여 나중에 수전을 짜서 아기를 먹이고 하였음.

(2)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가) ○○군보위부에 이송되니 보위부 직원 ○○○(군인, 사복차림의 남자)로부터 책상다리 같은 “각자(각목)”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머리는 때리지 않고 주로 무릎과 손가락을 때렸음. 특히 책상에 두 손을 올리게 하고 손가락을 각자로 때림. 무릎이 골절되어 무릎관절을 잘 쓰지 못하는 후유증이 남은 사람도 있다고 함. 이렇게 때려 죄수가 죽어도 때린 자는 처벌을 받지 않음. 감옥 안 바닥은 마룻바닥인데 씻지 못해 이, 빈대가 극성이어서 밤에 불을 끄면 가려움에 잠을 이

루기 힘들었음.

- (나) 보위부 생활때 임산부에게 낙태주사를 한 것을 목격했음. 중국에서 아이를 배어오면 낙태를 시키는데, ‘리바놀’이라는 용액 20cc를 임산부 배(태아 머리부분)에 주사하면 주사 후 다음날 아침에 진통이 시작됨. 5~6개월 넘으면 살아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신문지로 아이를 싸서 감방 바깥으로 건네고, 보위부 사람이 양동이에 담아 복도에 놔둠. 아이 엄마는 감방 안에서 밥주는 구멍으로 밖(아이가 담긴 양동이)만 쳐다보고 있는데 양동이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림. 얼마 후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보위부 직원이 양동이를 들고 나간 것임. 들고 나간 아이는 ○○보위부 앞마당 포도나무에 부었음. 거기를 파보면 아기 시체가 많이 나올 것임.
- (다) 반장(성명불상)이 보위부직원보다 더 무서웠음. 같은 탈북자인데 규율을 잡는다고 남의 옷을 뺏거나 행패를 부리고 다른 재소자들을 구타함. 물론 반장도 여성이므로 주먹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는 것은 아니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함.
2004. 겨울에 북송되었을 때 ○○시 보위부의 ○○과장(당시 50대 중반, 남자, 늘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는 약 167cm, 통통하고 눈이 컸음)이 당시 열이 나고 아픈 아기를 데리고 있던 신고인을 오전에 조사실로 불렀음. 과장과 함께 보위부 직원 남자 2명(젊은 총각이었음)이 후에 조사실에 들어왔음. 과장은 신고인의 옷을 다 벗기고 무릎 끊리고 뒷짐을 지게하고 아기는 뒤에 앉히고 조사를 받게 함. 책상 바로 옆은 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물이 끓는 주전자가 있었음. 과장이 “너 좀 맞아볼래?”라고 하여 신고인이 “잘못했습니다” 하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 했는데) 왜 말이 길어지느냐?”고 하여 신고인이 “이제 죽어도 (중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럼 죽어봐라. 넌 죽어야 안간다”하면서 난로 속에 꽂혀있던 갈고리(불소씨개)를 뽑아 신고인의 오른쪽 가슴 부근을 찌름(신고인의 오른쪽 가슴에 약 10cm 길이, 폭 1~2cm 가량의 화상흉터가 남아있음). 신고인이 아파서 바닥을 구르자 “아직 죽을힘이 있다”고 함. 뒤에서 두 돌 지난 신고인의 아이가 이를 보고 마구 울자 낡은 걸레로 아이 입을 틀어

기타 구금시설

막음. 조사 과장이 위에 언급한 남자 두명을 들어오라고 불렀음. 이 중 한명이 주전자의 물을 컵에 따라 책상에 놓으니 과장이 컵을 치우고는 주전자 끓는 물을 뚜껑 덮인 채로 신고인의 뒷목에 쏟아 부음. 물이 한 번에 쏟아져서 목에서 어깨로 흘렸음. 이로 인해 신고인의 뒷목 위쪽부분에 화상으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자리부터 오른쪽 어깨 뒤쪽에 한일자로 남은 화상 흉터가 있음. 그 후에도 과장은 불쏘시개로 신고인의 오른쪽 발목 안쪽을 찔러 화상을 입혀 현재 오른쪽 발목 안쪽 복사뼈 부근에 얇은 켈로이드 흔적과 검게 색상이 변한 반원형의 화상흔적 다수가 겹쳐져 있음.

신고인이 화상 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이 책상에 앉히더니 손을 펴라고 함(손바닥이 위로 가게). 본래 조사를 받으려올 때마다 신고인의 소지품(가방 등)도 들고 들어와 “이 물건은 어디서 구한거냐?” 등 취조를 받는데, 과장이 신고인의 가방에서 중국 장백현 쓰레기통에서 주은 모(wool)로 된 텔실 뭉치와 코바늘을 발견하고는 코바늘로 신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을 뜯어냄(오른손 3,4,5번째 손가락 아래쪽 손바닥에 코바늘 눈 크기의 작은 흉터 다수 남아있음). 아파서 과장 손을 붙들고 애원하니 아이 입에서 결례를 빼서 신고인에게 물게 하고 밖에 서있으라 함. 화상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너무 아파 제대로 서지 못하자 팔을 구부린 채 위로 들게 하여 뒤쪽으로 족쇄를 채워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방치함. 이 때도 신고인은 계속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음. 저녁에 풀어주었을 때는 관절이 빠질 듯 아파서 손을 바로 내릴 수 없는 상태였음. 조사실에 들어간 것은 오전이었는데, 점심은 조사받느라 먹지 못하였음. 풀려 난 후 옷을 주워 입고 들어가 울었는데, 운다고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가함.

- (라) 보위부에서의 식사는 통강냉이인데 바가지에 퍼주면 감방 안의 반장이 알수로 세서 배급함. 어른은 30알, 어린이는 15알임. 모두들 배가 너무 고파서보위부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며칠간은 신고를 안 하고 죽은 사람 몫까지 식사를 받곤 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 ○○○(현재 48세가량) 이라는 여성으로 현재 탈북하여 ○○광역시에 거주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 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21.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키 175cm 이상, 표준몸매에 40대 정도) 잘생겼다고 이야기 되었고, 당시 ○○보위부를 거친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임. 신고인을 구타한 며칠 후 ○○보위부로 옮겨갔음
- ○○집결소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이 탈북하였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 되었을 때 ○○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보위부, 2005. ○○집결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부당한 신체수색

2003. 과 2005. 강제북송시 보위부로 이송되어 이송된 탈북여성 4~5명씩 이 1조가 되어 여자 보안원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함. 몸수색은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생식기나 항문에 돈 등을 숨기지 않았는지 검사하게 위해 10여차례 이상씩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게 함. 이때 의심이 가면 보안원이 위생장갑을 끼고 미흔, 기흔 여성 등에 관계없이 직접 항문이나 질 안에 손을 넣어 검사를 하기도 함.

간혹 검사를 피해 일단 돈을 삼킨 후 배설물에서 이를 회수, 비닐에 싸서 항문에 넣어 숨기는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를 적발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감시를 함.

화장실이라는 것은 바깥에 땅을 크게 파고 만든 구덩이이며, 수용자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여기서 용변을 보게 함. 이 때 여성수용자들이 용변을 보는데도 화장실 주변을 남자들이 둘러싸고 감시를 함. 이들 남자들은 보안원은 아니고, 일반 죄수, 즉 탈북 시도자가 아닌 절도 등의 일반 죄수들임.

이처럼 탈북자들이 돈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감방 안에서도 수감자끼리 돈으로 옷 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임.

(2) 구타 등 가혹행위

2005. ○○보위부에 있을 때에 많이 맞았음. 중국에서 북송될 때에 돈을 몰래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 서로 싸움이 있었고 동료들도 많이 때렸지만 보안원 ○○○이 신고인을 더 심하게 때림.

당시 신고인이 수용된 거실은 대변은 외부에서 보고, 소변은 거실내에서 한쪽에 만들어진 조그마한 장소에서 해결하는데, 신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신입을 신고인의 자리에 들여보내었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리도 좁은데 자꾸 들여보내 내자리에 앉힌다’고 이야기 하자, 보안원 ○○○이 족쇄(수갑)를 던졌음. 신고인이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맞아 피가 났음. 그러자 ○○○이 신고인을 복도로 나오라고 해서 나무로 된 의자가 다 박살

기타 구금시설

이 나도록 마구 때리고 발로 참. 이로 인해 신고인의 온몸이 멍들고 딱딱하게 굳었음. 신고인이 일어나지 못하자 거실로 들여보냈는데, 너무 아파서 앓아 있지 못하자 동료들이 신고인을 빙 둘러앉아 도와주어서 보안원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누워있을 수 있었음.

의료조치는 전혀 없었고, 장티푸스가 2/3정도 걸렸고 장티푸스 걸린 허약자는 끌어내어지거나 규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맞아 죽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장티푸스로 죽었다고 함. 신고인도 장티푸스로 인해 입천장이 불어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설사가 겹쳐도 약도 주지 않음.

당시 ○○보위부에는 남자 2칸, 여자 3칸이 있었고 신고인 거실에는 34명이 수용되어 있어 비좁아 잠을 자려면 한명이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또 1명이 들어오고(이 사람의 머리는 또 다른 사람의 배에 겹치게 됨) 하는 등 줄을 지어야만 했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정도임.

2005. ○○집결소에 2개월 정도 있었는데 동료 수용자가 보안원에게 신고인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려 ○○집결소 발전 건설대 보안원이 신고인을 반장을 시킴. 그런데 반장을 시킨 것은 신고인이 돈을 바칠 것을 바라면서 한 것으로, 결국 돈을 바치지 않자 집결소에 들어간지 1주일정도 만에 보안원 ○○○이 발전소 건설장 침실로 신고인을 불러내어 직경 10cm정도, 길이 삽자루 길이의 불쑤시게 막대기로 신고인의 온몸을 마구 때림. 처음에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몽둥이로 다리와 온몸을 때림. 이때 척추를 맞은 것으로 인해 온몸에 열이 나고 해서 계속 아프다고 하자 의사진단을 받았는데 왼쪽 늑막염진단을 받았음.

이후로는 반장이니 작업을 더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여 수시로 신고인을 구타함. 하루는 나무뿌리를 패라고 해서 신고인이 아파서 못하고 있자 보다 못한 다른 보안원(총각이고 어립)이 대신 패주었지만 결국 다 못하자 보안원에게 돈을 주었다며 몽둥이로 때림. 2~3일에 한번씩 매를 맞았고, 이로 인해 쓰러져 있으면 발로 밟았음.

당시 구타당한 것으로 인해 왼쪽 늑막(2005년도 늑막염)에 늑막염이 생겼고, 탈북 후 중국에서도 북송 두려움으로 치료를 못 받아 결핵으로 발전. 국내입국해서 하나원에서 결핵치료 받았음. 아직도 척추가 휘어 있고 늑막이 아픔.

(3)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수감시설 내에서 규율은 엄격함. ○○보위부는 정자세로 앉아 있고 조사 받음.

의복은 자기 옷을 가지고 들어감. 남편이 돈을 써서 옷을 보내왔음. 한글이 있는 옷과 청바지는 빼앗김. 샴푸 등은 보위부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겠단다며 빼앗아감.

식사는 형편없고 ○○보위부는 3식을 주는데 국수죽임. 숟가락의 꼭지를 자른 둥근 것으로 3스푼 분량. 집결소는 ‘북한식기(군대도 동일하게 사용, 알루미늄 밥그릇에 조금 줌)’ 국은 멀건 소금국. 다팡(무우절임)을 주기도 하는데 없을 때가 더 많음. 화장실, 목욕 등 위생상태는 열악하여 목욕은 전혀 못함. 수면 취침은 10시경인데, 수용자들이 너무 빼곡히 많아 다리 벌리고 연결하여 배에 다른 사람이 눕고 잠을 잡.

노동 등 하루 일과로 보위부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음. 집결소에서는 기상 후 겨울에는 눈을 가지고 세수하거나, 차가운 발전소 물을 가지고 세수함. 아침식사 이후 백두산에서 나온 조그마한 돌(보석 유사한 돌) 고르기 작업, 점심식사 후 다시 작업. 작업량이 각 조별로 마대단위로 정해지는데 채우지 못하면 저녁에 잠을 재우지 않음. 작업이 없는 날에는 돌 나르는 도구를 가지고 뛰게 하고 몇 초 내에 오라고 하기도 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신고인 1차 북송시 ○○○(신고인보다 3살 아래, 돈을 많이 빼앗김), 2차 북송때 ○○○(동료 수용자).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기타 구금시설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7. 13.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도 구류장 안전원 ○○○ 등 3명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시 소재 도 구류장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보위부, 2005. ○○집결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고난의 행군시대 생활고로 더는 생활하기가 어려워 군대 동기와 함께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려고 겨울에 두만강을 도강하여 식량과 돈을 가지

기타 구금시설

고 오다가 국경경비대에 발각되어 모두 빼앗기고 ○○시 ○○구역 ‘○○시 도 구류장’에 수용됨.

도구류장 안전원 남자 ○○○ 등 3명이 식량과 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월경시 누가 도움을 주었냐며 조사를 시작함.

이들은 신고인의 손과 발을 책상 밑 다리에 묶은 상태에서 구둣발로 마구 차고 신고인의 목을 쥐고 책상모서리에 입을 2차례 세게 부딪치게 하였음. 첫 번째 부딪칠 때 좋고유빨 4개가 부러져 나가고 두 번째 부딪칠 때 나머지 고유빨이 모두 나고 코와 입이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고 신고인은 정신을 잃었음. 가혹행위 시간이 1시간 가량동안 3명에게서 돌아가며 죽도록 맞았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코가 부었음. 맞은 것으로 인해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고 않고, 피곤하면 진물이 나옴. 어금니 이외에 앞니 전체가 부서졌음.

신고인이 구류장에 있는 동안 목격한 사실은 다음과 같음.

여성의 경우 구류장에 입소하면 대부분은 여성 안전원이 성기이나 항문을 조사하지만, 남자가 여성성기와 항문을 꼬챙이로 뒤지는 것을 몇 회 목격했음. 20대 여성이 10여명 임신해서 들어왔는데 만삭인 경우는 어디론가 데려가서 낙태를 시키고 왔으며, 임신 중기의 경우는 단일민족인데 중국 놈을 임신했다고 발로 걷어참. 6개월 있는 사이에 생활을 못 견뎌서 10여명이 순가락을 삼켜 자살을 했음.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보통 구류장 식사는 통 옥수수 삶은 것을 한줌 주고 그 위에다 소금을 약간 뿌려 주면 순가락도 없이 입으로 먹었음. 몸이 허약한 경우 순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순가락을 주는데 이때에 순가락을 삼키면 목에 걸려 숨이 막혀 죽음. 죽은 시체는 마대에 담아서 감옥에서 5리 가량 떨어진 소나무 밭에 땅을 파고 발로 평평하게 묻어버리고 가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신고인과 동갑으로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소재 군

수공장에 배치되어 신고인을 잘 알고 있음), ○○○(같은 구류장에 있던 ○○출신의 당시 23세 정도 총각)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타 구금시설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계호원 ○○○(30대 초반 계급은 중위) 등 2명
- ○○도 보위부 예심처 구류장 계호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사회불만을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4. ○○보위부
- 2004. ○○도 보위부 예심처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은 ○○도 ○○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인 2004.에 머리를 긁었다고 계호원 ○○○(30대 초반, 계급 중위)으로부터 손을 봉동이로 맞았고(흉터 있음) 한숨을 쉬었다고 계호원 ○○○의 권총개머리판에 맞아 머리가 터졌으며 흉터가 남음. 배식구로 머리를 내밀게 하고 군화발로 걷어차는 고문도 수시로 당하였음. 머리를 땅에 대고 머리카락으로 감방안을 닦게 하는 고문, 휴지통에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쳐들게 한 다음 몸을 팽이처럼 돌리게 하는 고문, 수도꼭지 위에 올라서게 하여 발바닥에 고통을 주는 고문도 경험하였음.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꼼짝 않고 조각같이 앓아있는(움직이면 가차 없이 구타를 당함) 가혹행위를 당하였음. 한쪽 다리로 장시간 서 있게 하는 고문, 앓았다 일어섰다를 100번 내지 1,000번 시키는 고문, 변기에 코를 박게 하여 질식시키는 고문,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동생이 남조선으로 갔다가거나 아내가 이혼을 제기했다고 거짓말을 전하는 심리고문 등을 겪었음. 그냥 매맞는 일은 너무 많아서 꿉을 수도 없음.

수도꼭지 위에 올라서 있는 고문을 당하다가 빈혈로 쓰러지면서 허리를 다쳐 현재 육체노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의자에 오래 앓아 있기도 어려워 사무직으로 일할 수도 없음. 수감생활 중 위장이 잘못되어 식생활에도 애로 사항이 많음.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2004. ○○보위부에서 먹은 것은 옥수수 한 줌 남짓에 양배추를 넣은 소금국이 전부였으며, 이후 ○○도 보위부 예심처 구류장에 수감되었을 때에는 소금국도 없이 멀건 된장물을 받아먹었음. 구류장 안은 난방이 없어 귀가 헐어 물이 흘렀음.

기타 구금시설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소좌 ○○○(눈이 부리부리하고 잘 생김, 키는 보통, 당시 35~6세 정도)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강제북송되어 ○○보위부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4.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부당한 신체검사 등

○○보위부는 옷을 다 벗기고 검사를 하며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당함.

(2) 구타 및 가혹행위

안전원이 중국에서 잘 쳐먹어서 머리도 길어지고 기름이 번지르 하다며 신고인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임. 또한 구둣발로 차고 빨래방망이처럼 생긴 막대(40cm 정도로 울퉁불퉁하게 자기들이 깍아서 만들)로 마구 때려 코피가 터지고 명이 들었음. 다행히 상처는 나지 않았음.

보위부 조사시에는 1:1로 조사를 받는데 정자세로 앓아 있다가 이틀에 한번씩 조사를 받고 조사시에는 무조건 마치 볼(축구공)을 차듯이 차고 때림.

(3)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10평정도 되는 방에 50명이 수용되어 있어 잠을 잘때도 앓아서 자고 3개월 수용기간동안에 목욕은 전혀 하지 못함. 순가락은 꼬지를 떼고 지급함. 당시에 수용자들이 넘쳐서 여성들은 복도에 앓혀 놓고 화장실은 120명이 1개를 사용.

수용실 구조는 앞면은 철창이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조그맣게 되어 있어 구부리고 들어가야 하며, 밥그릇을 넣어 주는 곳이 있음. 조사실은 2평 정도이며 의자 1개와 책상 1개가 놓여 있으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고 때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건물의 구석에 위치하고 있음.

3달간 보위부에 있는 동안 옥수수죽 1종지만 주기 때문에 근육이 다 풀리고 해서 걷지도 못하고 먹은 것이 없어 대변을 보름이나 20일에 한 번씩 볼 지경임.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도 보위부 계호원 ○○○(당시 21살), 여자 계호원 2명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북송 되었을 때 ○○도 보위부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4. ○○북도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3개월간 보위부 수감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북도 보위부는 총 9개방이 있었고 여자방은 그 중 2개임. 2개 여자방 중 1칸에는 4명(10년 등

장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들), 또 다른 한 칸에는 6명(1년짜리 단기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었음.

감방에 부동자세로 앉혀놓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철창살 밖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하고 쇠로 된 열쇠뭉치로 손을 때림. 수차례에 걸친 이와 같은 구타로 신고인은 10개 손톱이 모두 한 번씩 빠졌고 지금도 손등과 손톱 뿐 리부분의 피부에 흉터가 남아있음. 당시 신고인을 구타한 자는 ○○○(당시 21살)라는 계호원임. 다른 재소자를 구타하는 일도 많아, 한번은 남자 재소자(성명불상)를 거꾸로 매달게 함(이를 “개 체조”라 함. 개를 잡을 때 거꾸로 매달기 때문). 15분만 매달려도 머리로 혈액이 쏠려 매우 괴롭다고 하는 데, 신고인이 거꾸로 매달렸던 남자를 다음날 면회 나올 때 다시 보았더니 머리에 피가 쏠려 흰자위가 시퍼렇게 막이 들어있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타 구금시설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계호원 ○○○
- 집결소 계호원 ○○○
- 노동교양소 계호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4. ○○보위부 및 ○○집결소
- 2005. ○○노동교양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부당한 신체수색 등

신고인은 2004. ○○보위부에 15일간 조사를 받을 때에,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수색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보위부원들이 신고인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검은 장갑을 끼고 신고인의 성기를 벌여서 확인 하였고, 나중에는 남자 보위부원들이 신고인을 시멘트 바닥에 눕혀 성기를 벌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음. 이에 신고인이 무엇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에이즈나 성병에 걸렸는지 확인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에이즈나 성병은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러한 평계로 신고인의 성기를 벌여보는 것에 신고인은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

(2) 구타 등 가혹행위

○○보위부에서,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다고 뺨을 세게 맞았고, 너무나 무서워서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었음.

이후 신고인을 ○○집결소(여자들이 50여명 있었음)로 끌고 가서 약 6개 월간 죽지 않을 만큼 강제노동을 시켰는데, 10~11층 정도되는 안전부 건물을 짓는 작업을 하면서 지시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매를 심하게 때렸음.

○○교양소로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할 때에 각 반마다 반장을 뽑아 통제에 동원하였는데 신고인이 대리반장을 할 때, 감시원 2명이 자는 것을 신고인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잠에서 제대로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호원이 군홧발로 신고인의 가슴을 강하게 차는 바람에 약 6개월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몽둥이로 맞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음.

(3)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교양소는 일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시키면서, 기름기가 전혀

기타 구금시설

없고, 소금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음식과 시궁창 냄새가 나는 국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항상 깔주림의 나날을 보냄.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9. 14.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2007. ○○군 보위부 반탐과장 ○○○(계급 소좌, 키 작고 다부지고
딴딴한 체격)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북송 되었을 때 ○○군 보위부와 ○○교화소 등에서 구
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7. ○○군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2007. 처남이 탈북하기 전 신고인의 집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이

기타 구금시설

로 인해 ○○군보위부에 잡혀가 ○○군 보위부에서 1개월 취조를 받고, 구류장에서 3개월 살았음.

보위부 반탐과장이 처남의 탈북을 도우지 않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말하면서 손을 뒤로 묶어 매달아 놓는 비둘기고문을 하고, 의자에 손을 매어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눕혀 놓는 고문을 했음.

구류장에서는 언성이 높거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철창에 손을 내밀게 하고 총쏘시개(총구를 청소하는 긴 도구)로 때림. 손을 구두 발로 밟아서 아직도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

신고인은 구류장과 교화소 생활의 끔찍함으로 인해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꿈자리에 교화소 생활이 나기도 하여 신고인도 모르게 소름끼치는 증상이 나기도 함. 무릎관절이 아파서 단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못견딜 지경이고, 손가락 활용을 잘 못하고 떨림 증상이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Ⅱ. 사회안전부(인민보안부)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9. 6.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남편 ○○○, 언니 ○○○, 큰딸 ○○○

라. 가해자

- 남편(○○○)에 대한 가해자 : ○○도 ○○군 보안서 계호원 ○○○
(당시 예심과 비서, 나이는 약 50대)
- 언니(○○○) : ○○교화소 계호원 ○○○
- 큰딸(○○○) : 2006. ○○시 ○○동 보안소 ○○○(당시 약 40대, 계급 :
대위, 보통 키에 땅딸막한 체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구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남편(○○○) : 1996. ○○도 ○○군 보안서 구류장 등

언니(○○○) : 2005. ○○시 구류장, ○○교화소

큰딸(○○○) : 2006. ○○시 ○○동 보안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1996. 신고인의 남편(○○○) ○○도 ○○군 보안서 내 구류장에서 사망함.

신고인의 남편이 주거지를 떠나 있을 때, 신고인은 보위부 담당자의 선처해준다는 말에 속아 남편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음. 남편은 붙잡혀 구류소에 3달간 수감되었음. 남편은 구류소에서 탈출을 감행하였으며, 탈출 몇 시간 만에 잡혀서 구타를 당하고 형기가 더 늘어났음. 남편은 구류소에서 살이 너무 빠져 얼굴뼈가 다 드러나 성성이(원숭이) 같았음. 얼마나 구타를 당했던지 남편은 구류소에서 사망하였음. 남편의 사망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신고인은 나중에야 남편이 일하던 기업소 비서를 통해 알았음.

사망소식을 듣고 신고인이 구류소에 찾아가자 처음에 구류소 측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잡아떼었고 남편의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물어보았으나 가르쳐주지 않았음.

남편과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성명불상)에게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남편이 너무 맞아서 2번 졸도를 했다고 하며, 2번째 졸도 했을 때에 병원에 실려갔으나 원인을 몰라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함. 사망한 후에 남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급성 폐농양이었다고 함. 구류소의 계호원 1명(성명불상)에게 나중에 돈을 쥐어주고 남편의 묘를 물어보자 묘는 없고 시신은 대강 파서 사지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만 묻었다고 함. 남편의 담당 계호원은 ○○○(당시 예심과 비서, 나이는 약 50대)임.

신고인의 큰언니(○○○)는 중국에 넘어갔다가 세 차례 북송됨. 마지막으로 2005. 중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2006. 마지막 전화 통화 이후 현재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음.

1차 북송은 1997. 이었으며, ○○역전에 7층짜리 여관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3층~5층까지를 여행자 집결소로 사용하였음. 큰언니는 여기에 잡혀 조사받을 당시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었으며, 3개월 만에 탈출하여 중국에 갔음. 2차 북송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수감됨.

언니가 3번째 북송 되었을 때 2005. ○○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음. 재판은 판사가 1명, 신고인의 언니, 언니의 변호사 1명, 보안소 담당예심원 등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신고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재판소에 있었음. 재판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는 하지만 변호의 기회는 없으며 판사의 일방적인 질문에 모두 긍정으로 대답할 뿐임. 재판결과 언니는 ○○교화소에서 노동교화형 3년을 받았음. 그러나 수감기간 중 건강이 악화되어 배에 복수가 차서 배가 임신한 사람만큼 불러오자, 2005. 교화기간 도중에 병보로 나왔음. 언니가 나올 때 보니, 수감 기간 중 구타를 당해 다리의 살이 뭉그러져 있었음.

2006. 신고인의 큰 딸이 중국에 갔다가 잡혀 북송되었음. ○○○보위부로 이송되어 예심을 받은 후 ○○○ 집결소에 수감되었다가 ○○산에 있는 보안소로 이송(○○시 ○○동 보안소). 이 보안소 ○○○(당시 약 40대, 계급은 대위, 보통키에 땅딸막한 체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은 신고인에게 뇌물도 몇 차례 요구하였음, 주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넣을 휘발유, 고양이 담배(북한의 담배 중 최고급품) 등도 요구함. ○○○은 모(신고인)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무릎 끊고 앓히고 구둣발로 허벅지를 찼음. 또한 나무 장작으로 손바닥을 심하게 때려 딸은 손이 너무 부은 나머지 나중에 손톱 10개가 모두 빠졌음. 또한 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쳤음. 신고인이 이런 구타를 보다 못하여 울면서 들어가니 ○○○이 “나がら”며 방안에 있던 집기를 신고인에게 집어던졌음. 딸은 약 1달간 ○○ 보안소에 있었음. ○○○의 딸에 대한 가혹행위가 너무 심하여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기타 구금시설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3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지도원 ○○, ○○○(현재, ○○시 순찰대 대장), ○○○(당시 ○○시 안전부장, 현재 계호원), ○○○(○○시안전부 예심과 지도원)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북송 되었을 때 ○○시 안전부 구류장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8. ○○시 안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혐위사실을 이유로 가족체포

신고인의 오빠들이 중국의 한국대사관과 연결된 간첩이라는 혐위사실로 북한 보위부에 체포됨.

이로 인해 신고인과 어머니는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못살겠다는 생각에 탈북을 하다가 체포되었음.

(2) 구타 등 가혹행위

1998. 신고인과 어머니는 ○○시 보위부로 이송되었는데 이미 오빠들이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어서 ○○시 안전부 구류장으로 수감되었음.

보위부 지도원 ○○(50세 가량이며 얼굴이 검고 목소리가 쉰소리임. 셋 째오빠도 취조한 사람임.)이 시퍼런 하늘을 보겠으면(즉 살아서 나가고 싶으면) 사회적 불만 등에 대해서 쓰라고 강요를 하고, 주먹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인의 오른쪽 머리를 강하게 때림. 맞는 순간 명하더니 빙빙 돌아가는 느낌이 났는데 지도원이 달귀병(간질)을 한다고 하며 모욕을 주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세수를 하게한 다음 다시 취조함. 이때 맞은 것으로 인해 신고인은 지금도 자주 까무라치는 경우가 발생함.

○○○(현재, ○○시 순찰대 대장)은 신고인의 두 손을 나란히 들게 하고 총쑤시개(총기를 청소하는 도구)로 신고인의 손가락을 강하게 때림. 그러자 손가락이 통통부어 올랐고 너무 아파서 없는 것도 고백을 하게 됨.

○○○(당시 ○○시 안전부장, 현재 계호원)은 신고인의 두 손을 몸 뒤로 하여 90도 각도로 하고 별을 3시간 주었음. 신고인이 갖고 있던 시계도 빼앗아감. 신고인이 혀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갔다 온 것을 이유로 구류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치 연습용 발차기를 하듯이 신고인을 발로 참.

○○○(○○시 안전부 예심과 지도원, 당시 총각)은 신고인이 예심을 받고 오면 몸수색을 한답시고 가슴부위까지 수색하고, 수용되어 15일되었을 때에 생리를 할 때였는데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신고인의 생리하는 곳까지 수색을 하여 수치심을 느꼈음. 어느 날은 수면시간 이전에 졸았

는데 김○○이 신고인을 앞쪽으로 오게 하여 살창사이로 주먹으로 때려서 아랫입술이 터져 피가 사방으로 튤 정도 있음. 치료는 없었고 입술이라 상처가 아물어 지금은 상처는 없음. ○○시 안전부에는 의사는 없고, ○○시 소재 도 보위부 구류장에는 군의사 ○○○가 있는데 설사나 급성열병 정도의 응급처치를 하는 정도임.

당시 신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구류장은 12명이 있었고, 좁아서 다른 수용자 머리와 발이 엇갈리도록 재웠음. 화장실 갈 때도 계호원에게 허락을 얻은 후 계호가 기분이 좋으면 화장실을 보내줌.

(3)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수감시설 내에서는 조사를 받을 때 이외에는 정자세 유지, 머리 숙이고 손은 무릎위에 놓음.

의복은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있고, 식량은 통강냉이로 꼭꼭 누르면 4숟가락 정도임. 국은 염장배추인데 돼지 뜯물 냄새가 나서 처음에는 못먹음.

화장실, 목욕 등 위생상태는 불량하여 3m×2m 정도 공간에 12명 수용, 구석에 화장실이 있는데 50cm×50cm 정도라서 엉덩이만 가리도록 되어 있음. 목욕은 못하고 이와 벼룩이 많고 옴도 있음.

수면시간은 계호원들이 2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술먹고 기분이 좋으면 잠을 재우고 그렇지 않거나 다음 교대가 늦으면 그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음. 수용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졸고 있거나 하면 사정없이 때림.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공장 보위부 부장, 현재 경기도 거주), 당시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 ○○○(당시 ○○구 ○○동 ○○중학교 경리) 등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7.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안서 ○○○(당시 37세 정도)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북송 되었을 당시 ○○보안서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8. ○○보안서

나. 인권침해의 내용

○○보안서 김○○(당시 37세 정도)이 막대기(지름 5cm, 길이 50cm)로 자백을 강요하며 전신을 구타하였으며, 이틀에 하루 꼴로 구타하였음. 신고인

기타 구금시설

이 계속 지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니 원발로 신고인의 오른쪽 눈 주위를 가격하여 피가 나고 시커멓게 맹이 들었음. 나중에 혁대(약 10cm 넓이)로 20여 차례 종아리를 때렸으며 신고인과 같이 수용되었던 한 사람은 100여대를 맞는 것을 목격함. 손을 들고 새끼발가락으로 서 있게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고문을 수시로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권총을 빼서 신고인의 이마에 들이대며 ‘총살 시켜버리겠다’며 위협함.

조사기간 중 약 일주일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신고인을 세워둬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안전부 감시인 중 특사 ○○○, 소위 ○○○(2001. 당시 31~32세. 결혼하여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함. 얼굴은 동글납작하고 곱살하게 생겼으며 키는 보통키, 약간 마른 체형)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북한을 탈북하려다 북송되어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1. ○○군 안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및 가혹행위

○○군 안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을 당시, 방에는 신고인을 포함 3명의 여성이 수감되어 있었음.

신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곳은 소위(별 하나, 막대기 하나의 계급장)와 특사, 상사, 세 명이 교대로 감시근무를 하였음. 특사의 이름은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 자가 밤마다 신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의 쇠창살 앞에서 긴 싸리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신고인을 툭툭치며 일어나라고 함. 시키는 대로 일어나면, 체포될 당시의 옷(치마와 짧은 소매 상의, 갈아입을 옷도 구할 수 없었음)차림 그대로인 신고인을 긴 막대기로 툭툭치고 건드리면서 치마를 올려라, 가슴띠를 올려라, 팬티를 내려라 등등을 시키며 성추행을 함.

신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특사는 쇠창살 밖에서 신고인의 머리(뒤통수 또는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끌어당겨 수차례 쇠창살에 심하게 머리를 짚음. 신고인은 코피가 줄줄 흐르고 폭행에 못이겨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닌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반항할 때마다 쇠창살에 얼굴을 짚어 폭행함. 이로 인해 코피 뿐 아니라 눈주위가 시커멓게 멍이 들고 눈이 붉게 충혈 되었음. 밤에 잘 때는 반드시 쇠창살 쪽으로 가까이 나와서 누우라고 함. 감방 안쪽에서 자려고 하면 긴 막대기로 찔러 나오라고 하므로 제대로 잘 수가 없음.

3명의 수감자 중 먼저 들어온 2명이 나가서 마지막 며칠간은 신고인 혼자서 수감되어 있었음. 그러자 하루는 감시인 중 소위 ○○○(2001. 당시 31~32세. 결혼하여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함. 얼굴은 동글납작하고 곱살하게 생겼으며 키는 보통키, 약간 마른 체형)가 밤에 신고인을 감방의 작은 개구멍(철문으로 되어있음)으로 기어 나오라고 시킴. 신고인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자꾸 나오라 협박을 하므로 기어나감. 그러자 소위가 신고인을 강간하였음. 강간 후 원래 감방으로 다시 들여보내졌고, 어떠한 의료적 조치 등도 불가능하였음.

이곳에서 있다가 노동단련대로 이송되기 전, 지문을 찍고 ‘이 곳에서 있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었던 일체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엄수를 맹세시킴.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아느냐'고 또 신고인의 얼굴을 쇠창살에 박으며 폭행함.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식사는 강냉이밥이나마 3끼가 나왔음. 씻거나 할 수 있는 위생시설은 없었으며, 식기그릇은 세면그릇 대용으로도 사용됨.

3. 증거자료

- 신고인 진술
- 같은 동료수감자 ○○○(○○남도 ○○),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g) 강간 등,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타 구금시설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시 ○○구역 보안소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남한영화 CD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시 ○○ 구역 보안소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5. ○○시 ○○구역 보안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2005. 신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남한영화 CD를 보던 친구가 발각되어 신고인도 조사를 받게 됨.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을 담당하던 ○○시 ○○구역 보안소 ○○○(당시 32세, 계급은 상위)라는 자가 구두를 벗어 귀 부분을 때리고 신고인이 넘어질 때까지 머리채를 잡아채거나 손으로 머리를 때렸음. 이 때 맞은 후유증으로 아직도 왼쪽 귀가 아픔. 밤에는 새벽 두시까지 벽을 보고 부동자세로서 있게 함. 조사과정에서 계속 조서를 쓰게 하고 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깎고 또 쓰게 하는 등 괴롭힘.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이 구타를 당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살이 많이 빠졌고 나중에 중국에 가서 재어보니 6~7kg이 빠져있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보안서 예심과 비서 ○○○(대위, 워낙 지독하고 악랄함. 이제는 제대 했을 것임), 계호책임자 ○○○(27세, 당시 총각)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반탐원으로 일했는데 반탐사건에서 ○○에 거주하는 여성 을 도와준 것으로 인해 ○○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5. ○○군 보안서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및 가혹행위

2005. 새해를 맞아 새해를 준비한다고 5호 감방(각 방에 10~15명 수용, 여자감방 2개)까지 모두 일어나 아침청소를 하고 아침 강냉이밥(30알 정도의 양)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음. 계호들은 명절이라 모두 집에 가고 군관들이 근무를 섰음. 예심과 비서(계급 대위)가 들어오면서 소리치며 ‘야 이 새끼들아 왜 서서 질서 없이 그러냐. 모두 일어서라. 정신을 못차렸다. 모두 살창살에 붙어라.’고 했음. 모두 창살에 붙자 추운 겨울에 찬물을 3~4양동이 뿐였음. 그러고는 모두들 옷이 젖은 채로 물로 흥건한 차가운 마루바닥에 정자세로 앉아 있도록 함.

구류장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함. 나이 등에 관계없이 ‘야. 이새끼야’ 등으로 호칭하고, 정자세로 고개 숙이고 있어야 하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살창에 머리를 붙이게 하고 나무막대로 창살을 때리면 창살이 울리게 되어 직접 머리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함. 단체벌은 300~500개의 뾰부질(앉았다 일어서기)을 시킴.

계호책임자 ○○○(27세 당시 총각)는 조금만 잘못을 하면 ‘오라’고 하여 배식구에 두 손을 내밀게 한 후 각목 같은 나무로 손등을 내리쳐 철창까지도 땅땅 울림. 보통 까무라칠 정도로 때림. 신고인도 5대를 맞고 손이 뻣처럼 부풀어 오른 적도 있음.

구류장에 있을 때 성명불상의 ○○거주 아이가 규율을 어겼다고 수갑을 채우고 나무로 때려 이발 3대가 나가고 먹지도 못함.

○○군 거주 남자 ○○○은 ○○군에서 소를 훔쳐서 잡아먹고 잡혀왔는데 정자세를 취하지 않는 등 규율위반을 했다고 맞아서 죽었음. 계호책임자가 허약에 걸린 수용자를 철창에 머리를 닿게 하고 각목으로 뻣하고 치자 나자빠지니 또다시 머리를 닿게 하고 뻣치자 넘어져서 죽었음. 계호책임자가 굶어서 죽었다고 처리 함.

북한은 인권자체가 없음. 북한을 잘 모르겠으면 전체를 하나의 감옥으로 취급하면 됨. 북한에서는 죽여야 겠다는 놈은 증거조작 등을 통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음. 불법도청은 물론이고 사상이 병들었다고 하는 경우는 2중

기타 구금시설

3중으로 감시를 하게 됨.

신고인의 처(○○○)는 증명서 없이 ○○군을 가다가 열차안전원들에게 잡혀서 ○○역 안전부에 인계되어 무릎을 꽂아앉힌 상태에서 발에 차여 왼쪽 옆구리 갈비뼈가 나가고 왼쪽 어금니 1대가 나감. 당시 머리 타박 어혈로 머리가 아프고 목디스크도 오고 유팔도 아픔.

신고인은 아직도 꿈에 반탐부장 등이 돌격해 오는 꿈을 자주 꾸고 있음.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구류장 내 의복은 주위에 부모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전부에 연락해서 들여보냄. 담요는 구류장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한번도 세탁을 하지 않고 햇빛 일광도 시키지 않음.

식사는 통강냉이 불린 것 3~40알 정도 양임. 국은 돼지 먹는 뜯물 같은 멀건 국이며,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못먹음.

취침은 밤 10시에 하고 아침 5시에 기상함. 그런데 규율을 위반하면 차려 자세로 11시까지도 세워 놓음. 취침은 수용자들이 서로 어긋나게 잠을 잡.

구류장은 예심을 받는 곳이므로 노동은 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며, 그 외의 시간은 정자세로 앉아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7. 20.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시 ○○분주소 오○○(당시 30대 후반, 요즘은 예심과로 가 있다
고 함)
- 시 안전부 구류장 예심원 ○○○(당시 30대 중후반 정도)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강제북송 되었을 때 ○○시 분주소, ○○시
안전부 구류장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6. ○○시 ○○분주소, 2006. ○○시 안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2006. ○○시 ○○분주소에 1개월 있는 동안 조사를 받을 때 ○○분주소 안전원 ○○○이 신고인에게 손가락 족쇄(양쪽 손의 엄지손가락에 채우는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잘못한 것에 없냐고 물으면서 진술을 강요하고, 진술을 조금씩 쓰니까 바로 안 쓴다고 발로 허리를 차고, 얼굴을 참. 이로 인해 코뼈에 흉터가 생김. 또한 길다랗게 생긴 분주소의 열쇠로 허리를 찍는 등 가혹행위를 함.

2006. ○○시 안전부 구류장 예심 조사시에 예심원 ○○○가 분주소에서의 진술과 다르다고 때리고, 불렀는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때림. 어머니가 1주에 1회 정도 면회를 왔었는데 어머니를 통해 담배를 반입하다가 적발되자 계호원 ○○○이 구류장안에서 신고인을 옮겨차고 내려 차고 함. 1m 정도의 박달나무 같은 둥동이로 때림. ○○○은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림. 이로 인해 머리에 피가 나고 아직 흉터가 있음.

(2) 수감시설내 생활

수감시설 내에서 규율은 구류장의 경우 일단 들어가면 17~8세 정도의 계호원들이 머리를 땅바닥에 박게 하고 때리고, 2~3명이 발로 차는 등 군기를 잡음. 이후 감방장이 교육 잘 시키라고 하면서 수용실 맨 앞자리에 앉히고 잘 못한다고 때림. 번호를 부르게 하고 담요 하나를 주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게 함.

의복은 지급되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생활하며, 분주소는 대기실이기 때문에 면회가 안되고 밥은 집에서 가져온 것을 먹음. 밀폐된 공간에 대소변은 거실 내에서 해결하고, 바깥출입은 금지되고, 취침은 3~5시간 재우며, 노동 등 일과는 없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리 분주소 담당보안원 ○○○(키가 작고 45~6세 정도)

마. 신고요지

- 피해자는 ○○리 분주소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6. ○○리 분주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자식 3명이 굽는 것을 보다 못해 농장에서 강냉이 몇 개를 절취했는데 ○○리 분주소에서 1주일 동안 매를 맞았음. 담당보안원이 신고인에게 족쇠를 앞으로 채우고 각목 몽둥이(1m 50cm정도)로 계속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음. 이로 인해 오른쪽 무릎에 상처가 났고 아직도 무릎이 아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2011. 12. 13.

나. 신고인

○○○

다. 피해자

○○○과 그의 가족

라.加해자

인민보안부 담당자 ○○○

마. 신고요지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고문에 의해 생명권 침해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목격한 날짜와 장소

2009. 8. 경 강원도 통천군 ○○○에서 발생한 억울한 죽음에 관한 사건임

나. 인권침해의 내용

신고인의 남동생과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남, 당시 23세)의 누나 ○○○(당시 29세)가 2009. 6. 경 살해당했는데 옷을 다 벗긴 채로 신발끈에 목이 졸린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음. 범인을 잡는다고 보안원들이 난리

가 났음.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09. 8. 22. 살인범을 잡았다면 갑자기 집회를 한다고 경기장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라는 통지를 받았음. 강원도 통천의 모든 인구를 경기장에 모이게 하더니 입구를 다 봉쇄해버렸음. 좀 있더니 보안서장이란 사람이 오늘 살인자들을 총살한다고 했음. 키가 좀 작고 다부진 남자 두 명이 끌려나왔는데 반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고,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음. 한명은 친구 누나를 살해한 살인범(피해자)이고 또 한명은 어떤 혼자 사는 아줌마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살인범이라고 했음. 뛰어놓고 보안서장이란 자가 판결문을 읽더니 바로 사형한다며 사수들이 나와 각각 총9발씩 쏴버렸음.

그로부터 한 달 뒤 진짜로 친구 누나를 살해한 살인자가 함흥 쪽에서 강도 사건으로 잡혔는데 조사과정에서 친구 누나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했음. 보안서에서 총살당한 피해자의 4촌형이 있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피해자 어머니께 알려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집 어머니는 바로 친구 누나 집으로 달려와 자기아들 살려내라고 반정신이 나간 상태로 난리를 쳤다고 했음.

사실인즉 친구 누나가 살해당했을 당시 여기저기서 나오는 살인사건들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나빠지자 보위부와 보안서에서는 친구 누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 누나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고 용의자라며 보안서 유치장에 끌고 들어가 마구 고문하자 피해자가 고통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함. 북한에는 일단 보안서 유치장에 들어가면 당장 사형에 처해지더라도 안한 것도 했다고 할 정도로 고문이 심함. 보안서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며칠 뒤 바로 총살한 것임.

피해자 어머니가 아들이 총살당하기 전 감옥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어머니 저 진짜 그 여자 안 죽였어요.”라고 말했지만 당시 어머니도 진짜 아들이 살인을 한 줄로 알았다고 함. 그 후에 보안서 간부들이 그 집에다 집재산 다해주고 쌀이랑 가져다주면서 하는 말이 아들은 어차피 간복수로 죽을 고비가 거의 다 왔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복잡하게 하면 안 좋다고 타일러 어머니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배가 고프니 이제 와서 항의해 봤자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한 많은 세상 살기로 했다고 함.

기타 구금시설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III. 노동단련대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7. 2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시 단련대 보안원 ○○○(김일성 호위 근무하다가 제대, 당시 45세 정도, 이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맞았음)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친구들과 시장에 갔다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분주소에 연행되어 ○○시 단련대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9. ○○시 단련대

기타 구금시설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및 가혹행위

1999. ○○시 단련대에서 신고인이 일하던 중 생리로 인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보안원 ○○○이 길이 1m 30cm 정도의 봉동으로 왼쪽어깨를 여러 차례 심하게 때리고 좋아리도 때림. 이로 인해 왼쪽 어깨 쇄골이 부러져 현재는 어긋나게 붙어 있고, 흐린 날은 저림.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의복은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생활. 식사는 염장무우와 시래기밥임.
화장실, 목욕 등 위생상태는 한심하고, 잠을 재우지 않음.
노동 등 하루 일과는 하루 종일 일만 시킴.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17.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노동 단련대 ○○○(대위, 35~6세 정도, 키가 크고 허리가 구부러짐)
- 보위부 계호원 ○○○(보통체격, 마르고 25~6세 정도), 특별히 악랄하고 근무시간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임, 신고인이 수용된 당시에 신고인이 당한 것과 동일한 피해를 3명이 당함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북한을 탈북하려다 북송되어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9. ○○노동 단련대
- 2003. ○○시 보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및 가혹행위

1999. ○○노동단련대 이○○이 신고인에게 신고인이 하지 않은 물건 중 개를 했다라고 자백하라며, 주먹으로 배를 때려 앞으로 꼬꾸라지자, 발로 걷어차서 신고인은 뒤로 넘어져 철제로 된 네루(철길선로 모양)에 뒷머리가 부딪혀 피가 나고, 4시간동안 의식을 잃어버렸음. 피가 나고 의식이 없는데도 의료조치가 전혀 없어 신고인의 집에서 약을 가져다가 치료를 했음. 이로 인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충격을 받아 어지럽고 명했음.

2004. ○○보위부에서 동료들을 위한다는 좋은 일로 통하는 계호들을 통해 외부에 쪽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를 안 계호원 ○○○(보통체격, 마르고 25~6세 정도)이 신고인을 수용거실 창살 앞으로 불러내어 처음에는 막 대기(교실에서 사용하는 지시봉 정도)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자백을 강요함. 아파서 신고인이 조금 피하자 가해자가 신고인의 앞 머리카락을 잡고 철창으로 잡아당기면서 여러 차례 세게 부딪치게 해 이마 위쪽피부가 찢어져 피가 났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 뽑혔으며, 정신이 혼미해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에 앉아 있었음.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의료처방은 전혀 없고 스스로가 소금을 상처에 갖다 붙이는 정도임.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수감시설내 규율은 보위부에서는 하루 종일 정자세 유지, 취조, 규정 학습, 단련대에서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나무베기 등을 함.

의복은 속옷등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만 의류지급이 없어 신고인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생활함.

식사로 3식을 주기는 하지만 국수로 죽을 끓이거나, 강냉이 알의 껌질이 그대로 있는 강냉이 밥을 한 움큼 정도 줌. 반찬은 전혀 없고 명절 때 김치나 염장무우 1조각 정도를 줌. 국은 소금국을 주는데 무우 시래기라도 들어 있으면 행복한 날임.

북한인권침해사례집

구류장은 화장실이 내부에 있고 변기가 아닌 깡통을 사용, 단련대는 외부에 화장실이 있음. 목욕은 전혀 하지 못해서 이가 바글거림. 구류장 거실은 마루바닥이고, 단련대는 1, 2층 침대 구조임. 침대는 나무바닥에 벼의 껌질을 넣은 마다라스(메트리스)로 이루어 짐. 원래 모포와 베개가 지급되어 야지만 먼저 들어온 수용자들이 차지하거나 지급되지 않아서 입은 옷 그대로 잠을 잡.

수면은 취침 10시, 기상 5~6시에 하며, 노동 등 하루 일과로 단련대에서 낮에는 공사장에서 나무베기 등을 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단련대, ○○보위부 지도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단련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1. ○○단련대
- 2004.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부당한 신체 수색

2004. 신고인은 ○○○보위부로 이송되던 첫날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이 몸속에 감춰 놓은 돈이나 물건을 찾아낸다고 하면서 신고인을 발가벗긴 다음 알몸으로 100회씩 높이뛰기를 시키고 남자 간수들이 신고인의 질과 자궁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수색하였음.

(2) 구타 등 가혹행위

2001. ○○단련대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신고인을 포승줄에 묶어 끌고 다니면서 강제로 무거운 돌을 들고 다니게 하였음.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온 몸을 내리치고 주먹과 봉등으로 신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신고인으로 하여금 뚱을 싸고 혼절하게 만들었음. 북한 당국은 신고인을 수감하고 있으면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굶주리게 하여 신고인은 두엄 속에서 썩은 배춧잎을 주어다가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였음. 심지어 마실 물조차 주지 않아 신고인은 자기 오줌을 받아 마신 적도 있었음. 신고인은 단련대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핀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음. 수감자들에게 철창 밖으로 손이나 얼굴을 내밀게 하고는 닥치는 대로 때렸음. 신고인은 단련대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폭행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겨우 생명만 보전하였고 걸을 수 없어서 바닥을 기어 다녀야 했음.

2004. ○○○보위부원들은 신고인을 조사하는 동안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인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짓이겨 머리가 깨져 피가 나게 하고,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치료도 해 주지 않았음. 보위부원들은 신고인에게 50kg짜리 시멘트 자루를 지고 달리게 하였고, 달리지 못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음. 또한 이들은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치다가 신고인이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때린 다음 며칠씩 빛이 없는 지하 감방에 가두기도 하였음.

기타 구금시설

3. 증거자료

- 신고인 진술, 남아 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9. 6.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단련대 계호원 ○○○, 단련대 반장 ○○○(당시 28세 가량, 중간키에 보통체격)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북송 되었을 때 ○○군 단련대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2. ○○군 단련대

기타 구금시설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 ○ 군 단련대 반장이라는 자가 신고인과 수용자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밭로 차는 등 구타를 하였음. 신고인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사온 약이 있었는데, 이 반장이라는 자가 신고인의 짐 속에서 약도 훔쳐갔음.

노동은 돌을 깎고 돌·나무 등을 나르고, 겨울날씨에 5~6명씩 큰 통나무를 지고 날랐음. 노동강도가 심하여 나무를 나르다가 쓰러지면 감독하는 자가 밭로 차고 수감자 중 1인(성명불상)이 도망을 치다가 잡히자 뾰족한 기둥에 2시간 동안 앉아있게 하였음. 2시간 후에 이 수감자는 너무나 힘들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을 보았음.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단련대에서의 식사는 3끼가 나오지만 처음에는 알랑미 밥이었다가 나중에는 묽은 국수죽이었음. 신고인도 3차 북송 기간 중 몸이 아팠었는데, 보위부, 단련대 등에 의사도 없고 약도 없지만 신고인 자신이 중국에서 가져간 약이 있어 그것을 먹고 버텼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7.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종합지도원 ○○○(당시 마흔살 가량)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북송 되었을 당시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2. 도단련대(집결소), 2006.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2002. 도집결소(○○소재)에서 파라티푸스를 앓고 있는데도 강제노동을

기타 구금시설

시키고 너무나 아픈데도 시범으로 마대 2개를 머리에 이게 하고 행렬에 앞장세워 노동을 시킴. 보안원들은 자기의 기분상태가 나쁘거나 점검 등에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림. 때릴 때에는 현장에 있는 곡괭이 등 보이는 대로 사용함. 수용기간 중에 1명의 도주자가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눈이 평평 오는데 7시간 동안 모든 수용자(4~50명)를 운동장에 모으고 머리 위 손깍지를 하게 해 끓어 앓혀 놓음. 수용실이 너무 좁아서 다른 수용자들의 배 위에 머리를 올려 놓고 잠을 자는 실정임. 거실 바닥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음. 다른 도로 보내기 위해 임시집결하는 곳이라서 보안원들이 죽이지 못해 살린다는 등의 말을 공공연히 함.

2006. ○○보위부에서는 11명이 한 조가 되어 있었는데 많이 맞았음. 안전원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수시로 뾰족질을 시킴. 어린 여성들은 관리소로 가지 않기 위해 몸도 바치는 경우가 있음. 중국에서 임신을 해서 함께 잡혀온 ○○○(당시 21세)는 임신 5개월 이었는데 ○○군 ○○구 보안서장이 유산시키라고 하여 산부인과 산대에 올려놓고 유산을 시켰고, ○○○는 이로 인해 몸이 부어 결국 구류장에서 사망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A)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7. 25.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노동 단련대 ○○○(상무로 호칭되며, 당시 30대 제대군인이었음)

마. 신고요지

- 피해자는 탈북하였다가 강제북송되어 ○○노동 단련대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단련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부당한 신체검사 등

- 보위부로 이송될 때에는 70명이 함께 이송되었는데 신체검사를 할

기타 구금시설

때에 70명을 한줄로 나란히 세워 옷을 모두 벗은 채 앉았다 일어나 등을 시켜 돈 등을 숨기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조사를 받을 때에는 중국에 왜 갔는지, 기독교를 접했는지, 한국사람을 만났는지 등을 캐물음.

(2) 구타 및 가혹행위

보위부 조사이후 ○○노동단련대로 갔는데 보름정도 있는 동안에 죽도록 일하고 많이 맞기도 함. 옥수수 밭일을 할 때면 풀을 제대로 메지 못한다고 발로 차고, 벽돌공장의 경우 10리를 뛰어가서 일을 시킴. 어떤 때는 사회주의 선전간판이 있는 곳까지 100번을 돌게 하기도 함. 당시 함께 이송되었던 같은 동료언니가 생리를 해서 조금 쉬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자 상무 ○○○이 어디서 아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신고인을 때리고 발로 차고, 작업반의 남자 수용자를 시켜 신고인의 머리에 막대기를 올려놓고 널처럼 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당시 ○○군 출신 동료 수용자 ○○○(28세)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IV. 국경경비대 등 기타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국경경비대 ○○○ 상사

마. 신고요지

- 피해자는 북한을 탈북하려다 국경경비대에 잡혀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2. ○○군 국경경비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및 가혹행위

2002. 신고인은 음력 설 전일 두만강을 통해 두 번째 탈북을 시도하였음.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산달이 가까웠음. 국경을 넘다 군인 (계급은 상사인 것으로 기억, 이름은 ○○○)에게 발각됨. 신고인의 (산달이 가까워 부른) 배를 보고 “배에 뭘 차고 있느냐”고 하며 긴 총의 총대로 신고인의 배를 때림. 맞은 직후 신고인은 잠시 의식을 잃었었음.

○○○은 신고인을 연대 창고(초소 비슷하게 생긴 작은 건물)로 데리고 들어감. 초소 안에는 땅 밑으로 저장용 구덩이 같은 것이 파져 있었고, 구덩이의 크기는 2명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쪼그리고 앉으면 꽉 찰 정도임. 역시 국경에서 잡힌 신원불상의 남자 1명과 신고인이 함께 이 구덩이에 들어가 있고 위에는 보위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음.

신고인은 만삭인 배를 맞았기 때문에 진땀을 흘리면서 진통을 느끼는 상태였으나, ○○○ 등 감시하는 군인은 어디서 꾀병을 부리느냐며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음. 보다 못해 함께 구덩이 안에 앉아있던 신원불상의 남자가 안쓰러운 마음에 신고인을 내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부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음.

이와 같이 복통에 시달리며 하루를 갇혀 있다가 신고인을 분주소(지금의 보안소)로 데려감. 신고인은 진통으로 가만히 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조사를 한다며 무언가를 자꾸 계속 쓰게 함. 너무 통증이 심해 뭘 쓰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음. 신고인의 상태가 도저히 안 되자 그 다음날 분주소에서 내보냄.

신고인은 분주소에서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양수가 터졌으며 어떻게든 참고 오다가 집에 도착하자 집 마당에서 사산을 했음. 낳아놓고 보니, 죽은 아이는 머리부터 한쪽 팔, 상반신 반쪽이 피멍으로 시커먼 상태였음. 총대로 맞은 부위로 추정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타 구금시설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3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시 ○○집결소 감독원 ○○○(특무상사)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강제북송 되었을 때 ○○시 ○○집결소 등에서 구타와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7. ○○시 ○○집결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신고인은 ○○시 ○○집결소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경비장 자리를 얻었

음. 감독원 ○○○(특무상사)라는 자가 악랄하여 집결소 오빠시라 불렸는데 수감자들의 따귀를 심하게 때려 여러 여성 수감자들이 고막이 파열되었음. 구타에 이유는 없어서, 예를 들어 아침 기상시간에 웃지 않으면 왜 안 웃냐고 때리는 식임.

신고인이 경비장이었을 때, 새로 들어온 ○○출신의 19살 여성 수감자가 소변을 보고 싶어 신고인 뒤에 숨어 볼 일을 보는데, 김○○가 “누구 혀락 받고 소변을 보는가”라며 혼내기에 신고인이 “내가 혀락했다”고 역성을 들어주었으나 해당 수감자들이 온 밭을 굴러다니도록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려 볼과 입주변 등이 붓고 이가 부러졌음.

신고인에게도 대답을 제 때 안했다고 따귀를 때렸는데 맞고 나서 약 10일간은 계속 귀가 명명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음.

(2) 구금시설에서의 생활

집결소는 약 8평의 귀틀집이며 한쪽 편은 도강죄 집결소(25명), 다른 편은 여행자집결소(10명, 통행증 없이 다니거나 통행증 범위/기간을 벗어나 여행한 자들) 등 35명이 수감되어 비좁은 나머지 옆으로 누워 머리와 다리를 엇갈리게 두어야 했음.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여 보리알만한 이가 극성이어서 밤에 가려워 잠을 자기 어려웠음.

기상시간은 5시이며, 아침식사 전에 식전 작업이 있고, 이를 감독원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하면 식전작업이 연장됨.

식사는 깽보리밥 1공기씩 3끼. 식사량이 모자라 밖에서 작업할 때에 9.에 나는 북한 달래, 풀, 생버섯, 뱀 등을 먹는데 감독원이 달래 뜯어 먹는 것을 발견하면 더러운 짓을 한다고 뺨을 때리곤 하였음.

작업량은 통나무 하루에 몇 통과 같이 할당량이 있음. 이를 채우지 못하면 제 시간에 잠을 잘 수 없음. 반장이나 경비장은 책임이 있어 취침시간 등이 더 늦어짐.

감독원들은 저녁에 얼굴이 반반한 여자 수감자들을 불러 안마를 시키기도 하였음. 김○○가 특히 이러한 일을 시킴.

기타 구금시설

신고인은 2007.에 반장이 되었으며, 반장은 처우가 좀 나았기 때문에(식당에 남은 누룽지 등을 몰래 밤에 먹거나 할 수 있음) 빠졌던 살이 11.에는 조금 붙었음.

신고인이 반장을 하던 당시 수감자 중에 “파리잡이 선수”를 차출해 가던 것이 있었음. 신고인은 정말로 파리를 잡는 것인 줄 알았는데, 파리잡이 선수들은 저녁에 감방에서 나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음. 반장은 이들이 새벽 1시 경 들어와야 문을 잠글 수 있음. 하루는 밤 늦도록 들어오지 않아 파리잡이 선수들이 무엇을 하는가 들여다보니 감독원들에 안겨 기쁨조 노릇을 하고 있었음. 파리잡이 선수로 차출된 여성 수감자들은 20대 4명 정도. 용모가 단정해야 하고, 이것도 돈을 쥐어줘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쁨조가 되면 대우가 좀 나아지기 때문에임.

11월에는 탈곡이 주요 노동인데 당시 비가 눈과 섞여 내렸기 때문에 배추가 썩지 않도록 눈비를 맞으면 빨리 캐내는 작업을 했음. 비옷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감자들은 몰래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뜯어다 둘러쓰고 작업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아무 장비 없이 작업을 하여 독감이 걸리고 손발이 얼어서 부어오름. 작업 당시 아침에 나가 밤 10시에 흙투성이로 돌아왔음. 옷은 다 젖었는데 하나의 방에 30~40명 수감자가 있어 매우 비좁으므로 옷을 벗어 말릴 공간이 없음.

당시 전체 인원은 약 145명 내외(출소하는 자와 새로 들어오는 자가 있어 인원은 계속 변동이 있음)였는데, 방에 자리가 없어 나머지 수감자는 복도에서 자고, 이도 모자라 세면장까지 누워서 잤음.

집결소는 판결을 받기 전 죄인이므로 옷 등도 지급이 안됨. 교화소보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길고(8시간 노동이 지켜지지 않음)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집결소 3개월은 교화소 1년으로 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g) 강간 등,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7. 13.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의 첫째 딸)

라. 가해자

- 북한당국(아버지가 탈북했으므로 아마 요덕수용소에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

마. 신고요지

- 피해자는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려다가 ○○○국경부근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된 후 생사를 알 수 없음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4. 강제북송 이후 북한(상세한 장소는 모름)

나. 인권침해의 내용

2004. 피해자는 당시 여러 명이 함께 중국국경을 거쳐 입국하려다가 국

북한인권침해사례집

경근처에서 체포되었음. 신고인이 1년 후에 알아보니 당시 여러 명 속에 간첩이 끼어있어서 밀고하였다고 함.

피해자의 남편 ○○○(당시 북한군 대위)은 이미 피해자가 탈북하기 이전에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총살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곧바로 요덕수용소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신고인의 막내처제도 탈북하여 중국에 나와 있는데 행방을 모르고 있으며, 삼촌도 북한 요원에 의해 맞아 죽었음.

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잠을 잘 수 도 없을 지경임.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북녘고향으로 보내는 편지(2005. 10. 15)'의 기재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수감시설 지도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북송되어 ○○○수감시설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0. ○○○수감시설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구타 등 가혹행위

2000. ○○집결소에서 다른 5~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눈을 가린 채 약 4시

간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인가가 전혀 없는 ○○○수감시설에 수감되었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몽둥이, 주먹, 군화발로 사정없이 폭행을 가했으며, 물탱크에 머리를 쳐 받게 하는 물고문을 가했음. 또한 배식구멍에 손이나 발을 내밀게 하여 군화발로 손발을 짓밟아 손톱,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음. 또한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권총 손잡이로 복사뼈를 때리는 고문을 가하였음.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수감시설은 3동의 건물이 있었고, 그중 신고인이 수감된 건물의 1층은 돈사와 축사로 이용되었으며, 지하에 감방을 두었는데, 벽과 천장이 맞닿은 부근에 약 5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곳으로 빛이 들어왔음. 지하에는 5개의 감방과 여려 개의 조사실로 구성되어 있었음. 감방에는 5~6명 정도의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그중 여성용 감방이 있어서 여성 수감자도 1명 있었으며, 대부분 수감된 지 5~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였음.

신고인은 조사를 받을 때에는 항상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쇠로 된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을 신을 경우 무릎을 굽힐 수 없어서 제대로 걷을 수도 없었고, 바닥에 앓을 때에는 뺨정다리를 하여 항상 편 채로 앓을 수밖에 없었으며, 혼자서 일어설 수도 앓을 수도 없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 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앤도 범죄) (e) 자의적 구금, (f) 고문, (i) 강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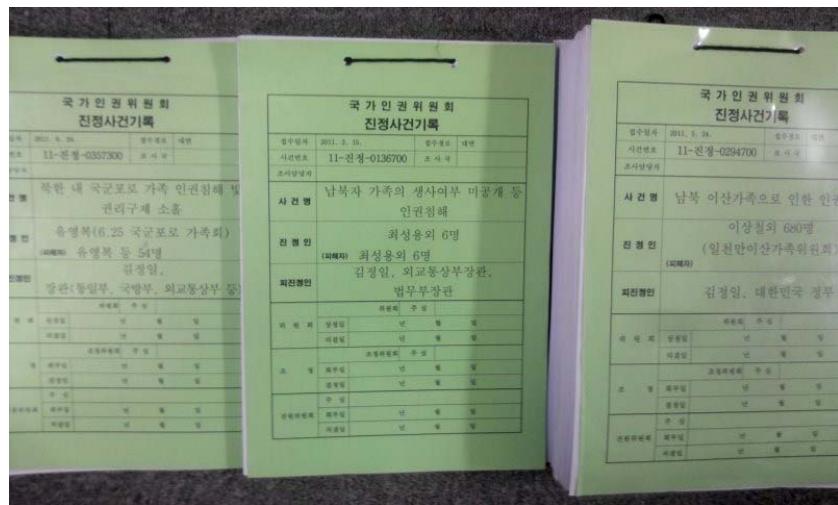
기타 구금시설

종, (k) 기타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4부 ■■■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북한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I . 국군포로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2. 20.

나. 신고인

- ○○○(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대한민국에 입국한 국군포로 가족 57명
- 북한의 가족들 ○○○

라. 가해자

- 북한 당국의 책임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6·25전쟁 발발로 1953. 7. 4.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음. 1953. 7. 27.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었음. 1954. ○○○부터 함경북도 은덕군 아오지 포로수용소 탄광에서 강제노역과 차별에 시달리다가 2000. ○○○ 탈북하여 한국에 귀환하였음.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 가족상봉, 자유왕래, 서신교환, 피해배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함. 국가가 국군포로를 챙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총 들고 나라 위해 싸우겠는가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의 내용

(1) 불법 억류 및 이송

신고인은 1952. 3. 말경 소집영장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 전방사단인 ○○○에 배치되어 최전선인 ○○○ 전투에 투입되었음. 1952. 12. 경 화랑무공 훈장을 받고 하사로 승진하였는데, 1953. ○○○ 최전방 ○○○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음. 1953. 7. 27. 오후 ○○○로부터 정전협정 소식을 들었으나 1953. ○○○ 경 평남 ○○○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음. 그곳에 국군포로 500여명과 미군포로 6명 정도가 있었고, 그 중 전우인 ○○○ 등을 만났음. 1개월 후 평남 ○○○ 탄광으로 이송되어 ‘내무성 중앙병원’이라는 곳에 수용되었는데, 그곳에서 전우인 ○○○ 등을 만났음. 1954. ○○○ 열차에 태워져 함경북도 은덕군(해방전 경흥군) 아오지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음. 450명 정도의 국군포로가 있었는데 ‘내무성 건설대 1701부대’라고 불렸음. 북한의 제일 힘들고 위험한 20여개의 탄광, 광산, 제철, 제강소에는 모두 ‘내무성 건설대’로 위장된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5만 여명의 국군포로들이 노동착취를 당했음. 함경북도만 하여도 아오지 탄광, 오봉 탄광, 고건원 탄광, 통북 탄광, 훈릉 탄광, 풍인 탄광, 온성 탄광, 주원 탄광, 상하 탄광, 확포 탄광, 유선 탄광, 무산 광산,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가 있었다. 함경남도 검덕 광산, 룽양 광산도 내무성 건설대 명칭으로 국군포로들을 수용하였음.

(2) 노예화(강제노동) 및 비인도적 대우

아오지 탄광은 메탄가스가 많아 한 번 폭발 사고로 대량 사망사고가 나는 곳이므로 최소한 15일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국군포로들은 아무 교육 없이 바로 간속으로 밀어 넣는 바람에 첫날부터 사망자가 속출 했음. 탄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음. 식사는 아침, 저녁 턱없이 부족한 졸쌀밥 반 그릇에 식은 소금국을 맙아서 홀홀 마시고 나면 끝이었음. 2,000m 내지 4,000m 지하막장의 온도는 영상 40도 이상 올라가 숨쉬기도 어려웠음.

일반 노동자들은 도시락을 싸와 작업 중에 식사를 했지만 국군포로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음. 하루 실적은 8톤으로서 8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작업량이었음. 작업량을 계속 완성치 못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고 가곤 했음. 지하 막장에서 땀을 뺏끌 흘리고 밖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영하 35도 강추위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음. 저녁 식사가 끝나면 김일성 가계에 대한 학습을 2-3시간 하고 비판서를 쓰다보면 11시가 넘어 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음. 항상 굶주렸고, 의복도 1년에 작업복 2벌밖에 공급받지 못했고, 린닝과 팬티도 1년에 한두 개 배급받았을 뿐이었음. 일반 광부들에게는 매분기별 작업복 한 벌과 신발 두 켤레씩 주는데 비하여 차별이 심했음. 국군포로들은 아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야 내무성 건설대 안의 의무실에 보내주었는데, 그곳은 침대 4개에 의자도 없고 약도 없어서 몇 시간 누웠다 오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음. 내무성 경찰들은 항상 총부리를 겨누고 따라 다니며 간내에서의 포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감시하여 포로들 상호간은 대화조차 할 수 없었음. 휴식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밖에 없었음. 북한정부는 1956. 6. 경 내각 결정 143호를 내려 450명의 국군포로에게 공민증을 주어 사회에 내보낸다 했으나, 공민증만 주는 것일 뿐 같은 탄광에서 같은 작업에 시달렸음. 이전에는 포로 수용소 안에서 내무원들의 감시만 받았지만, 나와서 부터는 북한의 안전부, 보위부, 마을 단위 인민반 감시까지 받게 되었음. 북한의 전후 복구 건설에 국군포로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음. 단천 용양광산, 함경남도 검덕 광산, 유선 탄광 등에서는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공민증은 필요 없으니 남쪽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수백명이 보위부 수용소로 끌려가 소식이 끊어졌음. 또한 국군포로들 전원을 민주청년동맹(민청)에 가입시켜 놓고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노동을 착취했음.

(3) 극심한 차별대우

신고인이 있던 곳에서 국군포로 출신은 ‘똥간나 새끼’로 천대받았음. 신고인은 ○○○ 북한 여성과 결혼하고 나중에 입당도 했으나 허울만 당원일 뿐 대우는 달라진 것이 없고 계속 감시와 차별을 받았음. 대부분 단칸방에

서 생활하는데 일반 노동자의 경우 식구가 5명 이상 될 경우에는 2칸짜리 방을 주었으나 국군포로인 신고인은 8식구나 되지만 단칸방에서 생활했음. 아들은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나이 40이 넘도록 입당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했음. 국군포로 가족들은 성분이 좀 좋다는 집안에는 혼사말도 해보지 못 했음. 주로 옛날에 북한 정부에서 성분이 나빠서 처단된 가족, 자주 자본가의 가족, 정치범 가족, 사회주의 건설에서 교화소에 갖다 온 자녀 등 불이익을 받던 처녀와 총각들과 결혼을 했음. 국군포로 출신 자녀는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했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을 받지 못했고, 반대로 광산의 모든 사고에 대해 의심을 받고 처벌을 받았음. 1958. 경 어느 날 메탄가스 폭발로 국군포로 39명의 사망과 함께 수십명의 화상자가 발생했는데, 제일 먼저 굴밖으로 나온 사람이 국군포로 백○○이라고 사고의 주모자로 몰아 공개처형을 해버렸음. 그 후 20여명이 죽은 1961. 경의 회암2갱 가스폭발사건, 40여명이 죽은 1985. 7. 경의 화재사건 등으로 처음 450여명이 아오지 탄광으로 갔는데 지금 20여명만 생존해 있음.

나. 탈북 및 귀환, 송환요구

김일성이 죽은 1994. 경부터 배급이 중단되어 식량대란이 발생했고, 신고인 가족도 먹을 것을 찾아 모든 곳을 해맸고, 풀이란 풀은 독풀을 제외하고는 다 먹어 보았음. 2000.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귀환하였음. 대한민국은 북한에 억류된 6·25전쟁 국군포로의 송환, 가족상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인의 저서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8조(노예제도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제23조(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c) 노예화, (e) 신체적 자유의 박탈, (i) 강제실종, 제8조 제2항(전쟁범죄) (a) (ii) 고문, (vi) 재판 받을 권리의 박탈, (vii) 불법적인 감금, (viii) 인질행위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2008. 9. 11. 국군포로문제 간담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2. 13.

나. 신고인

- 안용수(남)

다. 피해자

- 안학수(1943. 9. 23. 생)
- 안영술(아버지, 사망), 남금순(어머니, 사망), 안성수(형), 안인수(동생), 신고인(동생), 안철수(동생)

라. 가해자

- 북한 인민무력부 및 대남 공작부서 책임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1966. 9. 9. 베트남에서 군 복무 중 베트콩에 포로로 잡힌 뒤 북한에 의하여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납치되었음. 그러나 북한은 피해자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보도한 후 일체의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인 가족들은 남한의 공권력에 의해 간첩의 가족으로 몰려 갖가지 인권유린을 당하고 사회적 차별을 겪는 등 극심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2. 신고내용

(1) 강제실종 및 살해,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

피해자 안학수는 1963. 9. 30.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4. 8. 31. 베트남에

파병되어 봉파우의 주월한국군 사령부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제1이동외과병원에서 복무하였음. 1965. 10. 1. 하사로 진급하였고 1966. 9. 20. 전역예정이던 피해자는 1966. 9. 9. 마지막 공무 출장으로 의약품을 가져오기 위해 사이공(현 호치민) 미군 보급창에 갔다가 행방불명됨. 사실은 피해자는 그 무렵 베트콩들에게 포로가 된 후 비밀 활동 중이던 북한 군사고문단원들에 의해 중국을 거쳐 납북되었고, 1975. 말경 중국으로 탈출하려다가 체포되어 평양에서 간첩죄로 총살형을 당했음. 그러나 북한은 피해자를 고문 한 끝에 1967. 3. 20. 평양 대남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후 일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2) 가족들의 피해상황

- (가) 신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은 장기간 극심한 경제적 ·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정부는 피해자가 탈영한 뒤 자진 월북한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경북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강제 사직당하고 항일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독립 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됨. 신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도 사찰과 감시, 우편검열, 잠복 수사, 강제 연행 및 구금, 강제 가택수색, 구타, 고문 등을 비롯해서 대학 진학과 취업 제한, 직장에서의 보직과 진급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고, 사회적 차별을 겪었음. 신고인은 지금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애3급 판정까지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1. 6. 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임.
- (나) 신고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2008. 정부의 베트남전쟁에 관한 기밀문서의 공개 등에 따라 정부는 2009. 4. 28. 피해자 안학수를 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로 인정하였고, 2009. 8. 28. 피해자를 국군포로로 관리하기로 했으며, 그 후 관계법에 따라 피해자 안학수에 대하여 전사한 것으로 병적을 정정하고 하사에서 중사로 추서했음.

3. 증거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련 판결
- 피해자 안학수를 납북피해자로 인정한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단의 제16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 자수한 북한 대남공작원 김○○, 정○○의 각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신체적 자유의 박탈, (i) 강제실종, 제8조 제2항(전쟁범죄) (a) (i) 고의적 살해, (ii) 고문, (vi) 재판 받을 권리의 박탈, (vii) 불법적인 감금, (viii) 인질행위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II. 납북자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남)

다. 피해자

- 최원모(1910. 2. 23. 생)와 그 아들인 신고인과 가족

라. 가해자

- 북한 대남공작부서 책임자 ○○○, 무장 간첩선 담당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의 아버지가 납북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내용

신고인의 아버지 최원모는 평북 정주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치안대를 이끌며 공산군에 맞섰음. 전쟁이 끝난 뒤 신고인의 아버지는 1967. 6. 4. 풍복호를 몰고 선원 7명과 함께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1967. 6. 5. 08:00경 북한 경비정 10여척에 포위돼 총격을 받고 납북됐음.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다른 선원 5명은 풀려났지만 신고인의 아버지는 공산군에 맞선 전력이 드러나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음.

신고인이 최근 확보한 정부 기록에는 신고인의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 남하하면서 원적지에서 좌익분자를 살해한 것이 발각돼 억류되었다고 적혀 있음. 이후 신고인의 아버지 행적은 알 수가 없음.

신고인이 귀환 납북어부나 탈북자 등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신고인의 아버지는 1970. 경 처형됐다고 함. 장기간 부친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신고인 등 가족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이 2008. 10. 경 작성한 통보서
- ○○○이 2007. 5. 경 작성한 확인서
- 인터넷 조선일보 기사(2012. 3. 19.)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납북 사건 관리 카드				
풍복호				
납북일자	납북장소	납북인원	귀환인원	억류인원
67.6.5	서해	8	6	2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67.6.4 18:00경부터 연평도 도에서 어로 작업중 - 67.6.5 08:00경 북한무장선 10여척에 포위당해 총격을 받고 납북 o 선적지 : 전북 군산, 승선인원 8명 			
대북조치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67.9.25 인천항으로 선박 및 5명 귀환, 3명 억류 * 최초 억류자 중 1명(양 우)은 70년 간첩으로 침투하여 검거됨 			
귀환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선장 : 김 우 o 선원 : 김 우, 강 우, 서 우, 지 우, 양 우(간첩으로 남파) 			
귀환자 증언 및 조사기록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납북자들은 정치교양, 경제학 등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으며, 군산지역의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o 북한 찬양선전, 지하당 조직,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빠라 살포 등의 지령을 받았음 			
억류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최원모(10.2.23생, 전북 군산) - 풍복호 선주 최원모는 6.25 전쟁 당시 남하하면서 원적지에서 좌익분자를 살해한 것이 발각되어 억류됨 o 우(51.3.10생, 전북 군산) - 북한의 선전술에 넘어가 미귀환 			
억류자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최원모 : 02.4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명단교환시 확인불가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원모 처 김애란은 4차 상봉에서 재북 언니 2명 상봉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재남가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원모 자 최성룡(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 우 등 			

납북피해자지원단의 납북 사건 관리 카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귀하께서 우리 지원단에 요청하신 부친 회원모님 관련사항을 관계기관 조사자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남북상황

- 부친 회원모님은 '67.6.5. 08:00경 서해 연평군해에서 군산 선적 풍복호에 승선·조업 중, 동료선원 7명과 함께 북한경비정에 의해 남북

○ 억류경위

- 남북선원 8명 중, 5명은 '67.9.25. 인천항으로 귀환하였고, 부친 회원모님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미귀환
- 부친 회원모님은 越南 前 재북시 북한에 대한 반역 사실이 발견되어 강제 억류된 것으로 파악

○ 기타사항

- '02년 4월,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명단교환시 부친 회원모님은 확인불가 회신
- 모친 김애란님은 재북 언니 2명 상봉. 끝.

* 상기 내용은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신청 외 목적으로는 활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0월 일

남북피해자지원단장

신고인에게 통지된 납북피해자지원단 통지서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황인철(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남)

다. 피해자

- 황 원(1937. 9. 12. 생), 신고인(아들), 황찬욱(딸, 1969. 생), 양석례(처, 1938. 생)

라. 가해자

-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책임자 ○○○

마. 신고요지

- 아버지가 납북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내용

피해자 황 원은 영동 MBC(현재, 강릉 MBC)의 PD로 근무하던 중 1969. 12. 11. 강릉발 김포행 대한항공 YS-11기에 탑승하였다가 이륙 후 10분만에 강릉 상공에서 북한의 고정 간첩 조창희에 의하여 위 비행기와 함께 납북되었음. 당시 위 비행기에는 승무원과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 총50명(간첩1명 제외)이 탑승하고 있었음. 북한은 납치 후 납북 피해자들에게 4시간 이상 사상교육을 시켰는데 피해자 황 원에 대해서는 그의 이론적인 답변을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못 마땅하게 여겨 2주 동안 어디론가 끌고 가 협박, 고문을 하기도 하였음.
피해자가 2주 뒤인 1970. 1. 1.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고파’ 노래를 부른다고 어디론가 끌고 나간 후 영영 보이지 않았음.

북한은 1970. 2. 14. 당시 탑승객 중 승객39명만 송환하여 승무원 4명과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7명의 총 11인은 미귀환자로 남아 있음. 북한은 2006. 6.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해 ‘생사확인 불가’라는 통지서를 보냈음. 그러나 북한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의 방송인으로 근무하다가 1986. 11. 탈북하여 1992. 귀국한 오길남은 2008. 12. 피해자가 위 ‘구국의 소리’의 방송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1986. 경 보았다고 증언해 주었음. 북한은 일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신고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토록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조선일보 기사(1970. 2. 16. 호외)
- 영동방송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1970. 5. 20.)
- 노컷뉴스 기사(2012. 2. 14.)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KAL기 납북사건 경위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김정희(여)

다. 피해자

- 김경두 (1935. 3. 26. 생, 실제는 1933. 생), 그 딸인 신고인 및 처인 박숙자 (1940. 3. 10. 생)

라. 가해자

- 북한 대남 공작부서 책임자 ○○○, 무장 간첩선 담당자 ○○○

마. 신고요지

- 아버지의 납북과 그 생사불명 상태의 장기간 지속으로 신고인 등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내용

가. 피해자의 납치

피해자 김경두는 1968. 6. 6. 시간 불상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연평도 인근 앞바다에서 ‘부길호’를 타고 기관장으로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납치되었음. 그 때 함께 어로작업 중이던 선장, 부선장, 부기관장 등 선원들도 납북되었음. 당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으며, 경찰이 집에 와서 위 피해자들이 납북되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음. 그 후

북한은 피해자 김경두와 선원 3명은 억류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으나, 위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송환거부는 물론, 납치 사실이나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나. 납치이유

납북되기 전 피해자는 기계를 잘 다루어 전기발전기 기사, 선박 기관장 등을 하였고 영어 · 일본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하였음. 피해자는 육군 수송 부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1958. 경 상사로 전역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 자격증을 따기도 하였음. 1959. 경 박숙자(신고인의 어머니)와 결혼하였음.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전기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발전기 기술이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어김없이 피해자를 찾았음. 동네 사람들과 경찰들은 북한에서도 피해자의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은 피해자의 기술을 부려먹기 위하여 피해자를 절대로 한국으로 안 보내 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였음. 2006. 경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신청이 당첨되어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으나 북한 당국에서는 피해자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불가”라는 통지를 해 오는 바람에 망연자실한 적이 있음.

다. 피해상황

피해자의 납북으로 인하여 신고인 가족은 1960. ~ 1980. 초까지 경찰들의 감시를 받고 살았으며, 할아버지의 사촌까지 연좌제로 큰 피해를 입었음. 당시에는 흑백 TV 등 전자제품을 사도 조사를 받을 정도였음. 피해자의 납북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딸인 신고인과 처인 박숙자와 먼 친척까지 심한 정신적 · 물질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 왔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납북자 단체 대표 ○○○의 진술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2. 16.

나. 신고인

- 이재근(남)

다. 피해자

- 신고인
- 남한의 실종된 아들 이종목(1961. 5. 10. 생) 및 두 형 ○○○, ○○○

라. 가해자

- 북한 대남 공작부서 담당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납북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하여 생환할 수 있었으나, 장기간의 납북기간 중 북한에서 탄압을 받으며 갖은 고생을 다 하였고, 남한의 가족들도 이산가족의 슬픔을 겪으며 역시 말 할 수 없는 재산적 ·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신고인은 저인망 어선인 봉산22호 선원으로서 같은 저인망 어선인 봉산 21

북한인권침해사례집

호와 함께 1970. 4. 29. 02:00경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모두 함께(총 선원 27명, 봉산21, 22호) 납북되었음. 위 두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밧줄로 묶여 30분쯤 북으로 끌려갔을 때 한국함대 1001호에서 조명탄을 쏘고 공포탄을 쏘며 추적했지만 30분 후 위 두 배는 북한 순위도에 도착했음. 그 후 평양에 도착해서 약 6개월 이상의 조사를 받은 후 신고인을 포함한 8명은 강제 억류되어 1970. 11. 15.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간첩양성소인 중앙당 정치학교에 입학되고, 나머지 19명과 봉산 21, 22호는 1970. 11. 29. 송환되었음.

신고인은 그 후 사격, 폭파, 침투, 살상기술을 배우며 남파간첩 특수훈련을 받고 1973. 7. 3. 중앙당정치학교를 졸업했다. 신고인은 하루빨리 남파되어 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훈련을 견뎌냈지만 사상이 불량하고 남으로 파견되면 자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남파간첩에서 제외되어 1973. 8. 경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군수품 공장 선반공으로 배치되어 함흥에서 거주하다가 1992. 경부터는 양수기 펌프장으로 옮겨 근무하였음.

(2) 이동권, 평등권 및 사생활의 자유, 식량권 등의 침해

사회에 배치된 후 너무 힘들었음. 결혼도 하고 아들도 출생하였으나, 신고인을 비롯해 간첩훈련을 받은 납북 어부들은 평생 동안 철저한 감시를 받는 괴로움을 당했음. 보위부, 안전부, 검찰, 공장 당위원회, 보위부 담당지도원, 인민반장, 위생반장 등 7명이나 신고인을 미행하였음. 한국에서 납북돼 온 사람들 중 20~30명은 정치범으로 몰려 지금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 제일 참기 힘든 것은 역시 배고픔이었음. 노동자들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음. 오직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 연명하다가 1995. 부터 배급이 중단되고 식량난이 일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음. 북한에서는 살이 좀 찐 사람들은 혼자 다니기 영 싫어하고 어떤 식당은 사람을 잡아서 독안에 두고 조금씩 살을 꺼내 와서 음식으로 가공하여 팔다 발각되어 공개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음. 신고인은 1996. 11. 경부터 1997. 1. 경까지 함주군 주유천에서 사람을 죽여 사람고기를 먹거나 판 죄로 공개처형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고, 그 이후에도 신고인이 1998. 경 탈북할 때까지 매년 사람을 잡아먹은 죄로 공개처형 또는 비밀처형하는 예를 보거나 들었음. 북한은 1990. 대 식량난때 350~4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

한 것으로 보임. 북한에는 수 백개의 군이 있고, 청진, 온성, 나진에서도 술하게 굽어죽었으며, 신고인이 살던 함주군은 잘 사는 지역이었음에도 10만 명의 주민 중 2,000여명은 굽어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함. 한참 사람이 죽은 1995. ~ 1998.에는 청진역전에 가면 보통 매일 시신 4~5구가 쪼그리고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길거리 모퉁이마다 시체가 널려 있었음.

(3) 가족권의 침해

1990. 대 식량난으로 감시통제의 손길이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에 성공 할 수 있었음. 신고인은 1998. 8. 말 북한을 탈출, 2000. 7.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 6·25전쟁 이후 북한에 강제 납북된 피해자 500여명 중 최초로 탈북에 성공한 사례가 됐음. 그러나 그 동안 남한에 맡겨졌던 신고인의 어린 아들 이종목은 보호자가 없어 행방불명 상태로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음. 신고인의 형제들도 용공분자의 가족으로 몰려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아 큰 고통을 겪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관련 ○○○ 판결
- 1973. 서해 덕적도 앞바다에서 납북되었다가 2003. 탈북하여 귀환한 ○○○의 진술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신체적 자유의 박탈,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김양자(여)

다. 피해자

- 김석만(1946. 9. 23. 생)과 그의 누나인 신고인, 김영희(52세), 김선옥(50세)

라. 가해자

- 북한 대남 공작부서 책임자 ○○○

마. 신고요지

- 동생이 납북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내용

- 피해자는 1972. 경 안양수산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고종사촌 형 박봉만의 소개로 안양수산 소속 고깃배에 탑승하게 되었음. 피해자는 1972. 2. 27. 부산항에서 ‘안양36호’에 탑승하여 동해로 조업 나갔다가 북한에 납치되었음. 그 후 가족들은 피해자의 생사를 모르고 지냈음. 그러다가 1973. 11. ‘대영호’를 타고 서해안에서 조업 중 피납되었다가 2003. 4. 19.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를 통해 피해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었음. ○○○에 의하면 납북자들이 3개월 동안 함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도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인을 비롯한 남은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3. 증거자료

-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의 진술
- 납북자 가족 대표 ○○○의 진술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허용근(남)

다. 피해자

- 허용호(1949. 12. 12. 생), 허정수(1953. 11. 14. 생) 형제
- 신고인(동생), 허성만(부, 1918. 9. 20. 생-음), 허금자(누나, 1959. 생),
허금순(여동생, 1961. 생), 허윤자(여동생, 1968. 생)

라. 가해자

-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책임자 ○○○, 무장 경비선 담당자 ○○○

마. 신고요지

- 피해자들이 납북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내용

피해자 허용호(당시 25세), 허정수(당시 21세) 형제는 오징어잡이 배 ‘천왕호’의 선원 33명의 일원으로서, 1975. 8. 8.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천왕호’의 모든 선원들과 함께 북한으로 납치되었음. 그 후 신고인 등 피해자들의 가족은 2009.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북한으로부터 피해자 허용호는 2001. 11. 경 사망하였다는 통지를, 피해자 허정수에 대해

서는 ‘연락두절’이라는 통지를 받았음. 북한은 그 밖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족들의 송환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납치 사실이나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신고인 등 가족들은 평생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납북되었다가 2005. 경 및 2006. 경 탈북하여 귀환한 ○○○에 관한 인터넷기사
- 납북자 가족 대표 ○○○의 진술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이연순(여)

다. 피해자

- 안승운(1945. 5. 10. 생)과 그 처인 신고인 및 자녀들

라. 가해자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담당자 ○○○

마. 신고요지

- 남편이 납북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내용

피해자 안승운은 1990. 경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족 자치주인 엔볜의 주도(州都)인 엔지(延吉)에서 선교활동에 종사하였고, 1993. 6. 경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되었음. 그 후 1995. 7. 9. 엔지에서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이경춘 등 3명에게 유인되어 택시를 함께 타고 간 후 소식이 없음.

피해자는 평소 북한에 교회 100개를 세우겠다고 말할 만큼 북한 선교에 열정이 많았고, 북한을 드나드는 조선족들에게 쪽 복음(손바닥 크기의 작은

성경책)에 설탕을 동봉하여 교부해 주고 교육시켜 북한에 보내기도 하였음.

납치 직후인 1995. 7. 24. 북한 중앙통신은 “기독교 목사인 안승운씨가 모종의 임무를 떠고 중국 연변지역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망명했다”고 보도 했음. 다음날인 7. 25. 북한 중앙 TV에는 피해자가 기차에서 내려 꽃다발을 받으며 환영받는 모습이 방영됐음. 같은 해 8. 1.에는 피해자가 대남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에 출연해 “안기부원들이 나에게 설교할 때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중국이 해방되고, 북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강요해 입북했다”고 말하기도 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의거입북했다는 위 주장과 달리 1995. 7. 27. 중국 공안 당국은 1994. 11. 경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를 납치한 혐의로 이경춘을 체포하고 범행에 가담한 북한 국적의 조선족(조교) 3명을 추가로 체포하였음. 이듬해인 1996. 7. 경 중국 지린성(吉林省) 법원은 ‘불법감금 및 불법출경죄’를 적용해서 이경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경춘은 형기가 만료된 1997. 7. 28. 북한으로 강제추방되었다. 피해자는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한 재미교포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직접 비치기도 하였음. 2004. 경 탈북한 문기남 전 북한 축구대표팀 감독은 “1997. 쯤 안 목사와 한 호텔에서 함께 머문 적이 있는데, 안 목사는 명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고 전했음. 피해자는 2~3년 동안 북한 TV 방송에 연설하는 모습이 방영됐으나, 2000. 대 이후에는 안 목사가 북한 TV에 나온 적이 없음.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소문도 있으나, 북한은 일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인 신고인과 슬하의 3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월간조선 2005. 2. 호, 월간조선 2006. 7. 호, 조선일보 2010. 3. 10. 자 각 기사
- 납북자 가족 대표 ○○○의 진술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2. 22.

나. 신고인

- 정광일(남)

다. 피해자

- 김동식(목사)와 처 등 가족

라. 가해자

- 윤○○(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 지○○(회령 곡산공장 보위부장, 사망), 박○○(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공작원, 이하 같음), 김○○, 이○○, 지○○, 김○○, 김○○(조선족), 류○○(조선족)

마. 신고요지

- 피해자 등 다수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후 일체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2. 신고내용

(1) 보위부 납치조의 구성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 윤○○와 회령 곡산공장(대규모 담배공장) 보위부장 지○○는 1999. ~ 2000. 사이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 및 탈북자를 지원하는 한국인을 북한으로 납치할 목적으로 박○○(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공작원, 이하 같음), 김○○, 이○○, 지○○, 김○○(조선족), 류○○

○(조선족) 등으로 납치조를 구성하였음.

(2) 인권침해의 내용 – 강제실종(납치)

(가) 2000. 1. 초 윤○○와 지○○는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지○○로부터 피해자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음. 류○○ 등 납치조원들은 그 계획에 따라 2000. 1. 16. 오후 2시 연길시 한복판인 ‘예림불고기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이미 준비했던 봉고차에 강제로 태웠으며 강하게 반항하자 심하게 구타를 하였음. 피해자가 ‘난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박○○은 ‘너는 간첩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또다시 구타하여 실신하게 만들고 그길로 용정시까지 와서 밤이 될 때까지 류○○가 사용하던 용정시 전업국 근처 사무실로 끌고 가서 또 때렸음. 날이 어둡자 다시 봉고차에 태워 북한에 인접한 용정시 삼합진 승적촌 두만강 대안으로 끌고 가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회령시 인계리로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윤○○와 지○○에게 인계하였음.

중국 심양에서 활동하는 ○○○ 선교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0. 11. 경 평양 만경대 초대소에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후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사망하여 유해는 평양 근교 상원리 소재 조선 인민군 91훈련소 구역 내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지나,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바 없음.

(나) 윤○○와 지○○는 그밖에도 국군포로 ○○○ 등과 국군포로 가족 ○○○ 등, 탈북자 ○○○ 등 많은 사람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다고 함.

(다) 2004. 12. 국가정보원은 류○○를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약취) · 제6조(특수탈출) 등 위반혐의로 체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4. 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상소포기로 확정되어 류○○는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임.

(라) 2005. 11. 국가정보원은 김○○를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약취)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3. 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006. 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였음. 그는 만기출소한 후 중국에 추방되었음.

- (마) 피해자의 처 정○○는 2008. 9.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교통상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6. 김 목사의 생사확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그 후속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였고, 통일부장관은 2009. 7. 김 목사 생사확인과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음.
- (바) 미 연방 워싱턴 DC 지법은 2010. 8. “북한은 피해자의 아들과 동생에게 각각 2천5백만 달러의 피해보상금과 3억 달러의 징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3. 증거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 ○○○ 결정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신체적 자유의 박탈,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III. 이산가족

1. 신고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5. 24.

나. 신고인

- 이상철(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남) 등 683명

다. 피해자

- 신고인과 가족, 이산가족 피해 신고인들

라. 가해자

- 북한 ○○○ 등 당국자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은 북한에 의해 가족상봉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 하지 못한 상태가 60여년의 장기간 지속되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내용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북한에 의해 60여년 동안 이산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본적인 생사확인, 가족상봉, 왕래, 결합 어느 하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이산가족 문제는 ‘가족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단위의 보호와 통신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6조 제3항 및 제

1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인권침해임.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이산가족 단체 소속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0조(가족권)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Separated Families

새소식 > 이산가족 > 영상편지 > 자료실 >

홈 > 자료실 > 납북자명부

납북자명부

전체보기 50년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52년 6.25사변 파납치자명부 54년 6.25사변 파납치자명부

번호	이름	생일	직업
109877	장영찬(張永燦)		어업
109877	이상기(이상기)		
109877	이국웅(이국현)(李國雄)		어업
109877	윤영주(尹英轉)		어업
109877	김태순()		
109877	김구양()		
109877	이금석(李金錫)		군인
109877	우자원()		군인
109877	박기찬(朴基燦)		군인
109877	황창섭()		

총게시물: 109876 현재페이지: 1 / 10988

1 2 3 4 5 6 7 8 9

이름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첫화면

... 부 록 ...

1.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278명)]
2. [북한인권 주요 정책권고]
3. [북한인권침해신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첫화면

부 록

부록 1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명단(278명)]

강철환 신고 20명

김태진 신고 32명

안명철 신고 39명

정광일 신고 187명



1991. 1. 경 요덕 정치범수용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숙자와 두 딸 오혜원, 오규원

수감자 명단(신고인 강철환)

No.1	이름	이영보(남)	비고
	나이	1968. 생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평양 련못인민학교 학생	
	수감연도	1977. 8.	
	수감이유	부친이 정치범으로 수감되면서 가족이 모두 요덕수용소 수감	
	수감생활	어머니, 형(이영길, 1964. 생), 누나(이영희, 1966. 생), 동생 (이영미, 1971. 생)과 함께 수감되었는데, 1979. 경 제4작업반(밤나무골)에서 보위원들에 의해 완전통제구역인 용평리로 옮겨졌다.	
No.2	이름	김형락(남)	비고
	나이	1940. 생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1호 비행사(1호 비행기는 김일성 전용기)	
	수감연도	1974.	
	수감이유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을 추종한 죄로 정치적 숙청	
	수감생활	처(성명불상), 아들(성명불상), 딸(김선희)과 함께 수감	
No.3	이름	윤덕우(남)	비고
	나이	90세 추정	
	고향	남한	
	수감 전 직업	전 조총련교토지부 위원장	
	수감연도	1976.	
	수감이유	반 한덕수파로 분류돼 정치적 수감	
	수감생활	본인은 행방불명. 처(고명옥, 1979. 사망), 아들(윤상렬, 며느리 김선희), 아들(윤충성), 딸(윤정희)는 함께 수감됐다가 1986. 경 출소	

부 록

NO.4	이름	강태휴(남)	비고
	나이	1913. 생	
	고향	제주도 북군 한림면 귀덕리	
	수감 전 직업	전 조총련교토지부 상공회 회장 및 평양시 상업관리소 부소장	
	수감연도	1977. 8.	
	수감이유	반 한덕수파로 분류돼 정치적 숙청으로 수감	
	수감생활	본인 행방불명. 처(송옥선)와 아들 2명(리명, 창남), 손자 2명(철환, 미호)은 함께 수감됐다가 1987. 2. 석방됐으나, 그 후 처와 아들 강리명(신고인의 부)은 사망.	
NO.5	이름	이춘용(남)	비고
	나이	1940. 생	
	고향	경상남도	
	수감 전 직업	전 조총련 간부	
	수감연도	1976.	
	수감이유	간첩죄로 수감	
	수감생활	본인 행방불명. 처(이춘월), 아들(철해, 세봉), 딸(미화)는 함께 수감됐다가 1994. 석방.	
NO.6	이름	한학수(남)	
	나이	1925.생	
	고향	경상북도	
	수감 전 직업	전 조총련중앙위원회 교육 위원장	
	수감연도	1977.	
	수감이유	반 한덕수파로 분류돼 정치적 숙청으로 수감	
	수감생활	본인 행방불명. 처(손명옥, 1979. 사망), 아들(성민, 성우)은 함께 수감됐다가 1987. 경 석방.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7	이름	박기현(남)	비고
	나이	1935. 생 추정	
	고향	전라남도 광주	
	수감 전 직업	전 조총련교토지부 위원장 및 황남 평산군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감연도	1976. 체포된 후 행방불명	
	수감이유	반 한덕수파로 분류돼 정치적 숙청으로 수감	
	수감생활	본인과 장남 박태현은 행방불명. 처(1977. 사망), 차남 박태운, 딸(명숙, 인숙, 정숙)은 함께 수감됐다가 1990. 경 석방됨.	
NO.8	이름	최기숙(여)	비고
	나이	1940. 생	
	고향	일본	
	수감 전 직업	북송교포 가정주부	
	수감연도	1983.	
	수감이유	북송교포가족으로 남편(황병욱, 69세)이 북한체제를 비난 하다 체포돼 가족 모두가 수용소에 수감	
	수감생활	본인 1985. 사망. 아들(영호, 영수), 딸(영희)는 함께 수감됐다가 1987. 석방.	
NO.9	이름	김성봉(남)	비고
	나이	1965. 생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평양 영화연극대학 촬영과 학생	
	수감연도	1991.	
	수감이유	대학 재학 중 외국 팝송 및 남조선노래를 라디오에서 녹음해 카세트 테이프를 수백 장 소지했으며 김정일 비난 죄로 수감	
	수감생활	처음엔 혁명화 구역에 수감되어 3년간 복역 후 석방됐으나, 다시 남한노래를 친구에게 들려줬다는 이유로 완전통제구역에 수감	

부 록

NO.10	이름	장병렬(남)	비고
	나이	1934. 생	
	고향	남한	
	수감 전 직업	조총련 간부출신	
	수감연도	1976.	
	수감이유	조총련 교토지부 간부출신으로 김일성이 내세웠던 현재는 사망한 조총련 전의장 한덕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수감	
	수감생활	1983. 영양실조로 사망.	
NO.11	이름	이명수(남)	비고
	나이	1930. 생	
	고향	남한	
	수감 전 직업	조총련 교토지부 간부출신	
	수감연도	1977. 8. 4.	
	수감이유	간첩죄(조총련 교토지부 간부출신으로 김일성이 내세웠던 현재는 사망한 조총련 전 의장 한덕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감	
	수감생활	본인은 승호리 수용소에서 이감돼 왔고, 처(김조이)와 함께 수감됐다가 1986. 사망. 처는 그 무렵 석방됐으나 곧 사망.	
NO.12	이름	신학식(남)	비고
	나이	1934. 생	
	고향	일본	
	수감 전 직업	과학자	
	수감연도	1976.	
	수감이유	북송교포로 자본주의 동경 등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성향 때문에 간첩죄로 가족과 함께 수감	
	수감생활	처(중국교포), 아들(룡범), 딸(도연, 채연, 수연, 서연)과 함께 수감됐다가 본인은 1985. 사망하고 가족은 1989. 경석방.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3	이름	배영삼(남)	비고
	나이	1936. 생	
	고향	일본 오사카	
	수감 전 직업	기술자	
	수감연도	1978.	
	수감이유	북송 후 일본에서의 생활과 다른 북한현실을 비판하다가 간첩죄로 수용소에 수감	
	수감생활	처, 아들(정철, 정광), 딸(영화)와 함께 수감됐다가 본인은 1981. 자살하고 처도 영양실조로 사망.	
NO.14	이름	김영국(남)	비고
	나이	1967. 생	
	고향	함흥시	
	수감 전 직업	함흥시 OO인민학교 학생	
	수감연도	1979. 5. 경	
	수감이유	형 김영선이 인민군 정찰국 대남공작 활동을 하다가 남한으로 귀순	
	수감생활	부친(6.25 참전군인, 함흥시 영예군인공장), 모친, 여동생(영미)과 함께 수감됨.	
NO.15	이름	김상홍(남)	비고
	나이	1921. 생	
	고향	평양(행불 전 주소: 평양시 중구역 창전동)	
	수감 전 직업	정전 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총무과장	
	수감연도	1964. 작가동맹 내 사상투쟁 후 체포 구금 후 행불	
	수감이유	당시 반당종파로 몰려 숙청된 작가동맹위원장 한설야 씨와 가까웠다는 혐의	
	수감생활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수감된 것으로 추정.	

부 록

NO.16	이름	한철만(남)	비고
	나이	1967. 생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평양시 OO 인민학교 학생	
	수감연도	1974. 5.	
	수감이유	조부가 과거 땅을 많이 가진 지주였으며 반공화국 활동을 했다는 죄	
	수감생활	부모, 여동생(순희)과 함께 수감됐다가 부친과 여동생은 사망하고, 모친과 본인은 완전통제구역으로 이감.	
NO.17	이름	김수라(여)	비고
	나이	1964. 생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1976.	
	수감이유	북송교포인 부친이 김정일 체제 비난으로 수감	
	수감생활	부친은 행방불명. 모(이성옥), 형제(강남, 문남, 영남) 함께 수감됐다가 본인은 1985. 사망하고 가족은 1989. 석방.	
NO.18	이름	홍만득(남)	비고
	나이	1934. 생 추정	
	고향	일본	
	수감 전 직업	노동자	
	수감연도	1976.	
	수감이유	북송교포 가족으로 북한체제를 비난하고 일본에 가고 싶다고 발언한 것이 고발됨.	
	수감생활	처와 아들(룡원), 딸(성희)과 함께 수감됐다가 본인은 사망하고, 가족은 그 후 석방됨.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9	이름	전진일(남)	비고
	나이	1936. 생 추정	
	고향	일본	
	수감 전 직업	시계기술자	
	수감연도	1976.	
	수감이유	북송교포 가족으로 북한체제를 비난하고 일본에 가고 싶다고 발언한 것이 고발되어 가족모두가 수감	
	수감생활	본인은 1985. 사망했고, 처와 아들(태봉, 태일), 딸(태순)은 1989. 석방.	
NO.20	이름	리성흡(남)	비고
	나이	1939. 생 추정	
	고향		
	수감 전 직업	전 노동당 중앙위 교육부 간부부장	
	수감연도	1989. 7. 예 함남 요덕군 요덕군 읍에서 행불	
	수감이유	김정일 체제를 비판.	
	수감생활	1977. 7. 처, 아들(정모), 며느리(이정숙), 아들(길모, 경모, 룽모), 딸(정순)과 함께 수감됐다가 1983. 출소했으나, 다시 체제비판으로 본인은 행방불명되고, 가족들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	

부 록

수감자 명단(신고인 김태진)

NO.1	이름	0철혁(남)	비고
	나이	1966. 생 추정(20대 초반)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87.	
	수감이유	탈북	
	수감생활	1990. 출소	
NO.2	이름	김홍철(남)	비고
	나이	1960.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86.	
	수감이유	말 반동(취중에 당 정책 비난)	
	수감생활	1989. 박현철과 김홍암이 혁명화 구역에서 만든 기독교 단체를 밀고하여 표창으로 조기 출소.	
NO.3	이름	최영화(남)	비고
	나이	1940.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평양 국제관계대학교 영어 제2 강좌장	
	수감연도	1989.	
	수감이유	말 반동(취중에 “외국작가들은 편하겠다. 우리는 김일성 생각에 맞추어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고뇌가 많다”고 하여 들은 사람이 밀고)	
	수감생활	미국 푸에블로 호 승무원 신문에도 참여했었다. 참여한 4명 중 3명이 영문서적을 읽고 북한체제의 모순을 알게 됨.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4	이름	박익현(남)	비고
	나이	1940. 생	
	고향	미확인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75. 경	
	수감이유	처음 수감이유는 모르고, 그 후 노동신문에 실린 김일성 사진이 찢어진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기간이 연장됨.	
	수감생활	1992. 2. 출소	
NO.5	이름	엄하진(남)	비고
	나이	미확인	
	고향	서성구역	
	수감 전 직업	현재 협주단 작곡가	
	수감연도	1990. 1.	
	수감이유	당 권위 훼손	
	수감생활	김정일을 찬양하는 북한에서 유명한 곡을 많이 작곡하였음.	
NO.6	이름	김성봉(남)	비고
	나이	1965.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평양 영화연극대학 촬영학과 학생	
	수감연도	1987.	
	수감이유	반체제(한국노래를 듣고 공공장소에서 한국노래를 부르다가 잡힘.	
	수감생활	1991. 출소	

부 록

NO.7	이름	김인철(남)	비고
	나이	1961.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구 소련 오데샤 종합대학 유학생	
	수감연도	1988.	
	수감이유	반체제(수정주의)	
	수감생활	1991. 출소	
NO.8	이름	강철웅(남)	비고
	나이	29세	
	고향	형제산 구역	
	수감 전 직업	장철구 대학 학생	
	수감연도	1990. 3.	
	수감이유	반정부 음모(1989. 제13차 축전전 형제산구역 보위부부장 사건 연루)	
	수감생활	혁명화 구역 3반에서 보위원 김형섭을 고발하는 투서를 썼다가 독방처벌을 받았고, 2반으로 옮겨짐	
NO.9	이름	박영수(남)	비고
	나이	1960.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만수대 창작사 사원	
	수감연도	1987.	
	수감이유	반체제 행위(김일성 배지를 팔았다는 이유)	
	수감생활	1990. 출소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0	이름	박현철(남, 부친은 공군대좌, 모친은 김일성 가정부)	비고
	나이	1962.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평양 철도대학 학생	
	수감연도	1988.(1989. 여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곳을 이송됨)	
	수감이유	반체제(대학시절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했는데, 자금모금을 하던 중 내부자 밀고로 체포)	
NO.11	이름	안용선(남)	비고
	나이	1963.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87.(1991. 출소)	
	수감이유	반체제 모임의 연락책으로 밝혀져 수감	
NO.12	이름	유철남(남)	비고
	나이	1961.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구 소련 오데샤 종합대학 유학생	
	수감연도	1988.(1991. 출소)	
	수감이유	반체제(수정주의)	
NO.13	이름	이선화(여)	비고
	나이	1963.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평양 국제관계대학교 프랑스어과 학생	
	수감연도	1987.	
	수감이유	비사회주의(외국인과 사대주의적 요소인 날라리 풍으로 춤을 추었다)	

부 록

NO.14	이름	이주호(남)	비고
	나이	1960.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모스크바 종합대학 유학생	
	수감연도	1987.	
	수감이유	반체제 행위(모스크바에서 대사관 규정을 어기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NO.15	이름	장기택(남)	비고
	나이	1962. 생	
	고향	함경북도	
	수감 전 직업	중국 장춘 공업대학 유학생	
	수감연도	1988.	
	수감이유	반체제행위(중국에서 대사관 규정을 어기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NO.16	이름	홍순호(남)	비고
	나이	1940. 생	
	고향	미확인	
	수감 전 직업	중앙당 군사부 과장	
	수감연도	1986.	
	수감이유	김정일과 김일성대학 동창생으로서 김정일의 믿음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1남3녀가 함께 수감	
NO.17	이름	김일경(남)	비고
	나이	1958. 생	
	고향	함경북도	
	수감 전 직업	보위부 기밀문건 담당 요원	
	수감연도	1988. 3.(1991. 출소)	
	수감이유	기밀누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8	이름	김정명(남)	비고
	나이	1945. 생	
	고향	한국	
	수감 전 직업	북한으로 들어오자 마자 바로 관리소에 수감	
	수감연도	1970. 대 말	
	수감이유	일본으로 밀항한 후 북송되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관리소 수감되었다.	
NO.19	이름	박기영(남)	비고
	나이	1939. 생	
	고향	일본(북송교포)	
	수감 전 직업	학자	
	수감연도	1970. 대	
	수감이유	간첩행위	
NO.20	이름	한창희(여)	비고
	나이	1956.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외교부 지도원	
	수감연도	1988.(1991. 출소)	
	수감이유	외국인과의 관계	
NO.21	이름	김옥량(여)	비고
	나이	1940. 생	
	고향	일본(북송교포)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80. 대(1991. 출소)	
	수감이유	연좌제, 딸3(허민애, 허민향, 허민희)과 함께 수감	

부 록

NO.22	이름	김홍암(남)	비고
	나이	1960.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75.	
	수감이유	할아버지 죄로 인해 수감됐다가 1989. 12. 순 관리소 내에서 박현철과 함께 기독교 모임을 하였다고 용평(완전통제 구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송	
NO.23	이름	김홍옥(여)	비고
	나이	1963. 생	
	고향	함경북도 김책시	
	수감 전 직업	평양	
	수감연도	1975.	
	수감이유	할아버지 죄로 인해 수감됐다가 1989. 12. 오빠 김홍업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송	
	수감생활	미확인	
NO.24	이름	000(NO. 22 김홍암의 어머니)	비고
	나이	미확인	
	고향	미확인	
	수감 전 직업	주부	
	수감연도	1975.	
	수감이유	시아버지 죄로 인해 수감됐다가 1989. 12. 아들 김홍암, 딸 김홍옥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송	
	수감생활	미확인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25	이름	이명호(남)	비고
	나이	68	
	고향	황해북도 황주시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재러시아 림업 대표부 정치부장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비자금 형성(러시아에서 체류 중 뇌물을 많이 받은 이유)	
NO.26	이름	박순옥(박기영의 딸)	비고
	나이	1963. 생	
	고향	일보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70. 대	
	수감이유	아버지가 간첩죄로 수감되어 연좌죄로 함께 수감	
NO.27	이름	손구(남)	비고
	나이	1960. 생	
	고향	일본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80. 대(1990. 출소하여 특이하게 평양으로 감)	
	수감이유	아버지가 죄로 인해 어머니, 동생(손 정)과 함께 수감	
NO.28	이름	강필수(남)	비고
	나이	1956. 생	
	고향	황해도	
	수감 전 직업	미확인	
	수감연도	1984.	
	수감이유	미확인	

부 록

NO.29	이름	박동진(남)	비고
	나이	1940. 생	
	고향	평안남도	
	수감 전 직업	평안남도 남포시 안전부 과장	
	수감연도	1985.(1990. 출소)	
	수감이유	미확인	
NO.30	이름	염철수(남)	비고
	나이	1960. 생	
	고향	미확인	
	수감 전 직업	UNDP 사무원	
	수감연도	미확인(1988. 출소)	
	수감이유	미확인	
NO.31	이름	오희성(남)	비고
	나이	1954.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학부 교수	
	수감연도	1989.(1992. 출소)	
	수감이유	미확인	
NO.32	이름	자성호(남)	비고
	나이	1962. 생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4군단 보위부원	
	수감연도	1987.(1992. 출소)	
	수감이유	미확인	

수감자 명단(신고인 안명철)

NO.1	이름	최명희(여)	비고
	나이	당시 26세 추정	
	고향	평안남도 순천시	
	수감 전 직업	대학생	
	수감연도	1975. 정도	
	수감이유	전 인민무력부장 김창봉의 수하였던 부친이 숙청되어 수감	
	수감생활		
NO.2	이름	최OO (여)	비고
	나이	미확인(50대 추정)	
	고향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1975.	
	수감이유		
	수감생활		
NO.3	이름	송애희(여)	비고
	나이	미확인(30대 추정)	
	고향	함북 온성군 종성 로동자구 장생마을(보위부)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제7국(농장지도국) 13호 관리소 통신원 직급 상사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의 간첩혐의로 가족 모두 수감됨	
	수감생활		

부 록

NO.4	이름	리경옥(여)	비고
	나이	미확인(50대 추정)	
	고향	북송교포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1970.	
	수감이유	재일교포 가족으로 북한 정권에 반하는 발언으로 가족전체가 수감됨	
	수감생활		
NO.5	이름	변옥숙(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북송교포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정확한 이유는 자신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모두 끌려옴	
	수감생활		
NO.6	이름	안동호(남)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북송교포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가족 모두 끌려옴	
	수감생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7	이름	엄동근(남)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북송교포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북송교포로 북한 사회의 미적응에 따른 가족 모두 수감	
	수감생활		
NO.8	이름	리철수(남)	비고
	나이	미확인(60대 추정)	
	고향	북송교포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수감생활		
NO.9	이름	김복덕(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북송교포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북송교포로 1962. 귀국선을 타고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아버지가 간첩죄에 걸려 관리소에 오게 됨	
	수감생활		

부 록

NO.10	이름	한진덕(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강원도 안면군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1975.	
	수감이유	강원도 안면군 수의사로 있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인민무력부 대좌로 근무할 당시 김일성이 전 인민무력부장 김병하 숙청할 때 같이 숙청되어 1975. 관리소에 오게 됨	
	수감생활		
NO.11	이름	최순애(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안북도 신의주시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인민무력부 소좌)이 당생활총화 시간 김일성의 호칭을 부르지 않아 가족 모두 수감됨	
	수감생활		
NO.12	이름	김경숙(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안남도 신의주시	
	수감 전 직업	재봉사	
	수감연도	1973.	
	수감이유	부친이 무력부 상죄로 있을 때 김창봉 숙청당시 1973. 12호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1987. 5.에 회령22호 관리소에 수감됨	
	수감생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3	이름	엄영옥(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의 간첩혐의로 관리소에 수감됨	
	수감생활		
NO.14	이름	김경환(남)	비고
	나이	미확인(5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트럭 운전수	
	수감연도		
	수감이유		
	수감생활		
NO.15	이름	손명준(남)	비고
	나이	미확인(3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김정일 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수감	
	수감생활		

부 록

NO.16	이름	김복순(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안남도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1993.	
	수감이유		
	수감생활		
NO.17	이름	함복순(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수감생활		
NO.18	이름	강영철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남포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1992.	
	수감이유		
	수감생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9	이름	리영철(남)	비고
	나이	미확인(50대 추정)	
	고향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수감생활		
NO.20	이름	강순희(여)	비고
	나이	미확인(60대 추정)	
	고향	평안북도	
	수감 전 직업	주부	
	수감연도		
	수감이유	아버지가 월남자 치안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감	
	수감생활		
NO.21	이름	리연옥(여)	비고
	나이	미확인(3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반동분자(종파분자)로 몰려 수감됨	
	수감생활		

부 록

NO.22	이름	김영옥(여)	비고
	나이	미확인(30대 추정)	
	고향	강원도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반동분자로 몰려 수감됨	
	수감생활		
NO.23	이름	김순희(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남 개천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의 잘못으로 관리소에 수감됨	
	수감생활		
NO.24	이름	조용필(남)	비고
	나이	미확인(6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김창봉 숙청당시 부친도 함께 숙청되면서 가족 모두 수감됨	
	수감생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25	이름	김복남(여)	비고
	나이	미확인(60대 추정)	
	고향	평남 평성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숙청되면서 수감됨	
	수감생활		
NO.26	이름	김복남(남)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김병하 숙청 당시 보위원 활동하다가 같이 숙청되면서 수감	
	수감생활		
NO.27	이름	김경찬(남)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의 숙청으로 인한 수감됨	
	수감생활		

부 록

NO.28	이름	김성호	비고
	나이	미확인(6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당시 인민무력부 중장이었던 부친이 숙청 때 같이 숙청되어 수감	
	수감생활		
NO.29	이름	최영모(남)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중앙당 간부로 김정일 반대 혐의로 관리소에 오게 됨	
	수감생활		
NO.30	이름	박금려(여)	비고
	나이	미확인(60대 추정)	
	고향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남편이 중앙당 간부로 간첩 혐의로 관리소에 오게 됨	
	수감생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31	이름	정상철(남)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황해북도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6.25때 치안대에 가담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	
	수감생활		
NO.32	이름	김희철(남)	비고
	나이	미확인(3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당 일꾼으로 김정일의 지시를 왜곡 집행하여 수감	
	수감생활		
NO.33	이름	김하준(남)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안북도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의 숙청으로 수감	
	수감생활		

부 록

NO.34	이름	김길하(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김병하 숙청 당시 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관리소에 오게 됨	
	수감생활		
NO.35	이름	장옥희(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만수대 창작사 작가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 하여 수감	
	수감생활		
NO.36	이름	리혜선(여)	비고
	나이	미확인(50대 추정)	
	고향	평양시	
	수감 전 직업	국가대표 배구선수	
	수감연도		
	수감이유	남편의 잘못으로 수감	
	수감생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37	이름	왕금복(여)	비고
	나이	미확인(40대 추정)	
	고향	황해남도 해주시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부친이 6.25때 치안대에 가담하여 수용소에 오게 됨	
	수감생활		
NO.38	이름	조봉화	비고
	나이	미확인(70대 추정)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남편이 일제 때 면당, 1993. 5. 가택수색 중 일본천왕 훈장과 일본도가 발견되어 관리소에 오게 됨	
	수감생활		
NO.39	이름	안OO (여)	비고
	나이	미확인(70대 추정)	
	고향	황해남도 연백군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1992.	
	수감이유	남편이 지주로 1992. 가택수색 중 토지문서와 태극기가 발견되어 관리소에 수감	
	수감생활		

부 록

수감자 명단(신고인 정광일)

NO.1	이름	심철호(남)	비고
	나이	42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체신성 부상	
	수감연도	2001. 9.	
	수감이유	당 권위 훼손(국가보위부 사업방해, 보위부 12국-도청 미 행국에 대해 “간첩도 못 잡으면서 왜 자꾸 도청만 하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가 괘씸죄로 잡혀들어옴)	
	수감생활	심철호는 수감후 체중이 30kg이나 감소되어 허약조에 배속 되여 일하다 퇴소하기 6개월 전 탈곡장에 가서 영양을 회복 시켜 퇴소 시켰으며 그는 김정일이 방침을 받고 퇴소하였다.	
NO.2	이름	윤양권(남)	비고
	나이	54	
	고향	남포	
	수감 전 직업	프랑스 주재 무역참사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간첩죄(프랑스에서 생활하던 중 회의한다고 조선으로 불러 들여 순안 비행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이유는, 프랑스에서 한국제 생활용품을 사용한 것을 문제로 삼았으나 한국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감생활	윤양권은 수감후 외래책임자로 지내다가 2반 사감을 하였다. 그는 비교적 쉽게 수용소 생활을 하였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3	이름	김승곤(남)	비고
	나이	44	
	고향	평안북도 신의주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정찰국 처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체제비난과 반정부 음모(독일 유학생 사건–독일에 유학하던 학생들끼리 술자리에서, 졸업 후 북한으로 들어가면 한 자리씩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소리가 밖으로 알려져 반정부 음모로 와전되었다.)	
	수감생활	김승곤은 수감후 건설분조장을 하였으며 2002. 2. 16. 김정일의 생일에 방침을 받고 석방되었다.	
NO.4	이름	서 진(남)	비고
	나이	44	
	고향	황해북도 황주시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대외사업처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반정부 음모(독일 유학생 사건 연루)	
	수감생활	오랜 감방생활로 인한 영양실조로 2002. 5. 사망	
NO.5	이름	맹경남(남)	비고
	나이	43	
	고향	평안북도 정주시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대외사업처	
	수감연도	2000. 5.	
	수감이유	반정부 음모(독일 유학생 사건 연루)	
	수감생활	맹경남은 수감될 당시 몹시 허약한 몸이었으며 한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였다.	

부 록

NO.6	이름	김건기(남)	비고
	나이	44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정찰국 과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반정부 음모(독일 유학생 사건 연루)	
	수감생활	김건기는 수감당시 반주검이 되어 입소 되었으며 작업장에 질질 끌려 다녔다.	
NO.7	이름	김광식(남)	비고
	나이	46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오지리 대사관 서기관	
	수감연도	2000. 5.	
	수감이유	반정부 음모(독일 유학생 사건 연루)	
	수감생활	김광식은 수감 당시 건강한 몸으로 입소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영양실조로 손톱, 발톱이 모두 빠졌다.	
NO.8	이름	강철호(남)	비고
	나이	39	
	고향	평안북도 신의주시	
	수감 전 직업	평안북도 무역국 지도원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간첩죄(중국 유학생으로 유학기간 안기부와 연계되었다고 허위 날조)	
	수감생활	강철호는 끝까지 살아서 집에 갈 희망으로 죽기내기로 일을 하였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9	이름	김철용(남)	비고
	나이	38	
	고향	양강도 혜산시	
	수감 전 직업	양강도 도무역국 통역원	
	수감연도	2000. 11.	
	수감이유	간첩죄(중국 유학생으로 있던 중 한국 잡지를 전문적으로 봤다는 이유)	
	수감생활	김철용은 보위부 조사를 받으면서 이가 틀니였는데 고문을 받으면서 다깨져 수용소에서 주는 강냉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엄청난 고생을 했다.	
NO.10	이름	심은택(남)	비고
	나이	65	
	고향	양강도 갑산군	
	수감 전 직업	양강도 도검찰소장	
	수감연도	2000. 11.	
	수감이유	당 권위 훼손(1998. 보위사령부 검열 당시 뇌물 수수 혐의)	
NO.11	이름	○○○(남)	비고
	나이	66	
	고향	양강도	
	수감 전 직업	양강도 도보위부장	
	수감연도	2000. 11.	
	수감이유	당 권위 훼손(1998. 보위사령부 검열에서 뇌물 수수 혐의)	

부 록

NO.12	이름	김병남(남)	비고
	나이	66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수감 전 직업	양강도 도당 조직비서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당 권위 훼손(1998. 보위사령부 양강도 검열 당시 뇌물 수수 혐의)	
NO.13	이름	박경수(남)	비고
	나이	50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414연락소 과장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반정부 음모(1998. 러시아 프룬제 군사대학 유학 당시 결의 형제를 맺은 것이 문제가 되었음)	
NO.14	이름	김정민(남)	비고
	나이	48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414연락소 지도원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반정부 음모 박경수와 동일	
NO.15	이름	장춘권(남)	비고
	나이	66	
	고향	평남 강동군	
	수감 전 직업	조선인민 경비대 7총국 여단장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당 명예 훼손(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비자금 형성)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6	이름	송근일(남)	비고
	나이	67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조선인민 경비대 7총국 여단장(노력 영웅)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당 명예 훼손(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비자금 형성)	
NO.17	이름	김영길(남)	비고
	나이	43	
	고향	자강도 강계시	
	수감 전 직업	조선인민 경비대 8총국 체육 지도원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언어 반동(체코에서 태권도 가르치려 갔다온 후 체코와 북한의 비교로 체제 비난)	
NO.18	이름	차광호(남)	비고
	나이	65	
	고향	강원도 원산시	
	수감 전 직업	조선중앙 통신사 기자	
	수감연도	1999. 1.	
	수감이유	언어 반동(김정일이 백성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우상화만 한다고 체제 비난)	
NO.19	이름	김경천(남)	비고
	나이	60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조선중앙 방송위원회 촬영기자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언어 반동(촬영기자로 북한 여러 곳을 TV 촬영하면서 인민들의 참상을에는 안중에도 없고 김정일의 우상화만 한다고 체제 비난)	

부 록

NO.20	이름	염정제(남)	비고
	나이	52	
	고향	양강도 혜산시	
	수감 전 직업	평양 모란봉 구역 검찰소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평양 평천구역 보위부장 사건에 연루(국가 보위부 해외반 탐과 소속 러시아 주재 한 직원이 예멘에 미사일을 판매해 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일부는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고 나머지는 김정일에 바쳐 그 공을 인정 받고 공화국 영웅 칭호 수여를 받았으며 평천구역 보위부장 직책으로 승진한 일이 있었다. 이후 최고 검찰소 해외팀에서 미사일 판매에 문제점을 눈치 채고 조사한 결과, 해외계좌에 개인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김정일에게 보고했다. 이 일로 김정일은 그를 공개처형 했다. 보위부 측에서는 해당 검찰측에 앙심을 품고 보복했고 이 보복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1997)	
NO.21	이름	김윤식(남)	비고
	나이	52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평양 중구역 검찰소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평양 평천구역 보위부장 사건	
NO.22	이름	강학근(남)	비고
	나이	67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평양 서성구역 검찰소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평양 평천구역 보위부장 사건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23	이름	유국진(남)	비고
	나이	55	
	고향	함경북도 김책시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보위부 외사처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간첩죄(보위사령부 활동 성과를 얻기 위해 안기부 연루 사건을 날조했다. 이 사건에는 함경북도 보위부 정치부장, 도급처장, 외사처장이 연루되었다)	
	수감생활	수감 전 기간 동안 자기는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하였으며, 영양실조에 걸려 죽을 번하다가 2002. 2. 석방	
NO.24	이름	안원길(남)	비고
	나이	50	
	고향	남포	
	수감 전 직업	평안남도 보위부 도당 책임비서(서윤석의 부관)	
	수감연도	2002. 5.	
	수감이유	당 권위 훼손(서윤석의 책임 부관으로 비자금 관리를 하면서 일부를 챙겨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발각)	
	수감생활	수감 후 보위사령부에서 고문을 너무 받아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	
NO.25	이름	이명호(남)	비고
	나이	68	
	고향	황해북도 황주시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재러시아 림업 대표부 정치부장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비자금 형성(러시아에서 체류 중 뇌물을 많이 받은 이유)	

부 록

NO.26	이름	김성도(남)	비고
	나이	67	
	고향	함경남도 함흥시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2국(반탐국)신포시 담당 책임지도원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비자금 형성	
NO.27	이름	강영선(남)	비고
	나이	45	
	고향	남포	
	수감 전 직업	남포 보위부 지도원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당 권위 훼손(화교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래)	
NO.28	이름	김창완(남)	비고
	나이	40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2국 지도원(유엔 대표부 통역원으로 1999.까지 미국에서 활동)	
	수감연도	2001. 8.	비고
	수감이유	체제비난(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유엔회의에서 북한인민들이 세계에서 제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유엔 북한 대표가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보내지 않아 못 가지, 안 간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북한 체제와 제도를 비난하는 말을 함으로 고발 당함)	
NO.29	이름	김성준(남)	비고
	나이	40	
	고향	평안남도 덕천시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2국 지도원	
	수감연도	2001. 5.	
	수감이유	국가비밀누설(김창완과 동일)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30	이름	김영철(남)	비고
	나이	43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2국 지도원(만경봉 92호 보위지도원)	
	수감연도	2001. 5.	
	수감이유	국가비밀누설(일본에 갔을 때 북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는 이유)	
NO.31	이름	장기복(남)	비고
	나이	51	
	고향	함경남도 단천시	
	수감 전 직업	회령시 보위부 수사과장	
	수감연도	2001. 1.	
	수감이유	인권유린(회령 창효 농장원 한 명을 취조하다 심장마비로 죽게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	
NO.32	이름	김은호(남)	비고
	나이	52	
	고향	평안남도 용광군	
	수감 전 직업	무역성 과장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제도비난 및 비자금 형성	
NO.33	이름	김철준(남)	비고
	나이	43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조선 상 러시아 대표부 대표	
	수감연도	2001. 9.	
	수감이유	당 자금 횡령(하바롭스크 주재로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부품 수입을 하면서 쟁진 이익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에 구좌 개설한 것이 드러남)	

부 록

NO.34	이름	황성진(남)	비고
	나이	55	
	고향	강원도 원산시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해금무역회사 사장	
	수감연도	2001. 5.	
	수감이유	제도 비난, 당자금 횡령(당자금으로 해군 장비를 싼가격에 사고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하여 남은 돈을 쟁기고 해외출장 기간 동안 다른 나라 수준과 북한의 수준을 비교하는 말을 하다 들켰다.)	
NO.35	이름	한영태(남)	비고
	나이	60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수감 전 직업	해금보위부 부장	
	수감연도	2001. 5.	
	수감이유	당자금 횡령(황성진과 같은 사건으로 보위사령부에 의해 구속)	
NO.36	이름	최영길(남)	비고
	나이	50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조선평양무역회사 유경지사 지도원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당자금 횡령	
NO.37	이름	박영기(남)	
	나이	52	
	고향	신의주시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정찰국 비로봉 무역회사 신의주지사 지사장	
	수감연도	2001. 11.	
	수감이유	언어 반동 및 체제비난(평소에 나라의 책임자가 국민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다고 비난하다 발각)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38	이름	안창남(남)	비고
	나이	51	
	고향	자강도 강계시	
	수감 전 직업	중앙인민위원회 법무부장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당의 권위 훼손(화교들과 거래하다 보위사령부에 걸림)	
NO.39	이름	김종복(남)	비고
	나이	52	
	고향	평안남도 양덕군	
	수감 전 직업	양덕군 인민위원회 사무장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체제비난	
NO.40	이름	김종수(남)	비고
	나이	51	
	고향	함경북도 화성군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작전부 소장	
	수감연도	2001. 5.	
	수감이유	방침 불복종(이상한 말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	
NO.41	이름	김순철(남)	비고
	나이	19	
	고향	평안북도 식주군	
	수감 전 직업	호위국 군인	
	수감연도	2001. 10.	
	수감이유	탈영	

부 록

NO.42	이름	김영춘(남)	비고
	나이	28	
	고향	평양 중화군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국경 경비대 군인	
	수감연도	2001. 7.	
	수감이유	비법월경(무장하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술 먹고 취해 공안에 체포)	
NO.43	이름	○○○(남)	
	나이	62	
	고향	남포 대안구역	
	수감 전 직업	남포 대안구역 안전부장	
	수감연도	2000. 10.	
	수감이유	최문덕 날조 사건(1996. 오대산 유격대 사건 혹은 용성구역 안전부 사건) 사회안전부 정치부장이었던 최문덕이 오대산 유격대가 한 국계릴라, 즉 북한사령부를 치기 위해 남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라고 김정일에게 신소를 올렸다. 이를 받아 들인 김정일은 오대산 유격대와 관련된 간부금 2천여명을 처단했다. 당시 중앙검찰소 조급당 비서였던 김기선, 중앙당 부부장이었던 피창민 등 보위사령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루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김정일에게 다시 방침을 요구해 보위부에서 조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최문덕에 의해 날조된 것으로 김정일이 다시 방침을 내 려 사건을 날조한 최문덕과 연관되었던 사회안전부 관리자 70명이 처형되었다. 남포 대안구역 안전부장, 용광군 안전부장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NO.44	이름	조석천(남)	비고
	나이	65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철도성 보위부장	
	수감연도	2001. 9.	
	수감이유	최문덕 날조 사건-사회안전부 정치부장 사건 날조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45	이름	김봉선	비고
	나이	65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평양 보위부 반탐부부장	
	수감연도	2001. 12.	
	수감이유	최문덕 날조 사건	
NO.46	이름	장치억(남)	비고
	나이	44	
	고향	남포	
	수감 전 직업	남포 대안구역 안전부 예심과 예심원	
	수감연도	2000. 10.	
	수감이유	최문덕 날조 사건	
NO.47	이름	○○○(남)	비고
	나이	59	
	고향	평안남도 봉강군	
	수감 전 직업	봉강군 안전부 안전부부장	
	수감연도	2000. 10.	
	수감이유	최문덕 날조 사건	
NO.48	이름	유순철(남)	비고
	나이	44	
	고향	남포	
	수감 전 직업	봉강군 안전부 예심원	
	수감연도	2000. 10.	
	수감이유	최문덕 날조 사건	

부 록

NO.49	이름	박명철(남)	비고
	나이	40	
	고향	남포	
	수감 전 직업	룡강군 안전부 보안원	
	수감연도	2000. 10.	
	수감이유	최문덕 날조 사건	
NO.50	이름	김광호(남)	비고
	나이	44	
	고향	함경남도 함흥시	
	수감 전 직업	사회안전부 2국 지도원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당 명예 훼손 및 비사회주의(한국 비디오 테이프를 봤다고 이를 아내가 고발했다.)	
NO.51	이름	박시애(여)	비고
	나이	38	
	고향	평양 만경대구역	
	수감 전 직업	평양학생소년궁전 안무가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비사회주의(한 재일교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를 국가 보위부원인 남편이 고발했다. 재일교포는 종신형 완전통제구역 수용소로 보내졌다.)	
NO.52	이름	박순협(남)	비고
	나이	58	
	고향	함경남도 함흥시	
	수감 전 직업	함경남도 함흥 소재 지방자재상사 사장	
	수감연도	2000. 4.	
	수감이유	언어 반동(제도 및 체제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들켰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53	이름	장명화(여)	
	나이	39	
	고향	양강도 혜산시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정찰국	
	수감연도	2000. 4.	
	수감이유	당 자금 횡령	
	수감생활	길정현과 연애를 하였다고 하여 독감방에 갔다온 후 영양 실조로 2003. 4. 사망	
NO.54	이름	박경일(남)	비고
	나이	45	
	고향	함흥시	
	수감 전 직업	함흥시 흥남화학공장 노동자	
	수감연도	2000. 4.	
	수감이유	언어 반동(체제, 제도 비난–김정일이 인민들을 굶겨 죽인다고 말했다.)	
NO.55	이름	이명학(남)	비고
	나이	36	
	고향	함흥시	
	수감 전 직업	함경남도 도 66호 사업소(방공호 사업소)노동자	
	수감연도	2001. 10.	
	수감이유	체제전복 모의(평소 도화선을 가지고 다니며 김정일의 1호 열차를 폭파 시키려 했다가 발각 되었다.) 보위 사령부 유치장에 3년 동안 갇혀 취조를 받았다.	

부 록

NO.56	이름	이 학(남)	비고
	나이	36	
	고향	함경남도 함흥시	
	수감 전 직업	군관 제대군인(7군단 상위)	
	수감연도	2001. 10.	
	수감이유	체제전복 모의(평소 도화선을 가지고 다니며 김정일의 1호 열차를 폭파 시키려 했다가 발각 되었다.) 도보위 사령부 유치장에 3년 있었다.	
NO.57	이름	김병순(남)	비고
	나이	61	
	고향	함경북도	
	수감 전 직업	외교부 부부장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방침거부(외교부에 떨어진 방침을 집행하지 않았다.) 2000. 10. 김정일의 방침으로 석방	
NO.58	이름	허영일(남)	비고
	나이	38	
	고향	함경북도 길주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탈북(러시아 7인 사건-허영일과 그의 일행 6명은 1999. 11. 탈북, 러시아 국경을 넘었다. UNHCR의 정식 난민으로 인정 받아 한국행을 기다리는 도중 러시아 경비대에 의해 2001. 중국으로 넘겨져 북송되었다. 허영일을 포함한 5인은 요덕으로 갔고 나머지 2명은 정확한 생사를 알 수가 없으며 허영일은 현재 탈북하여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59	이름	방영실(여), 허영일의 처	비고
	나이	35	
	고향	함경북도 부령군 고무산구	
	수감 전 직업	길주역 길주 역무원	
	수감연도	2000. 6. (후에 사망)	
	수감이유	탈북(러시아 7인 사건)	
NO.60	이름	이동명(남)	비고
	나이	27	
	고향	평양 만경대구역	
	수감 전 직업	평양시 체육기자재 공장 노동자	
	수감연도	2000. 7.	
	수감이유	탈북(러시아 7인 사건)	
NO.61	이름	장호영(남)	비고
	나이	27	
	고향	평양 만경대구역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0. 7.	
	수감이유	탈북(러시아 7인 사건)	
NO.62	이름	김OO(남)	비고
	나이	23	
	고향	함경북도 무산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2000. 7.	
	수감이유	탈북(러시아 7인 사건),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살고 있다.	

부 록

NO.63	이름	엄철수(남)	비고
	나이	40	
	고향	함경북도 무산	
	수감 전 직업	군관제대 군인(인민무력부 1군단 중대장)	
	수감연도	2000. 7.	
	수감이유	탈북(심양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	
NO.64	이름	김광진(남)	비고
	나이	24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부윤구역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탈북(탈북해 중국 생활 중 기독교를 접했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혔다.)	
NO.65	이름	장 파(남)	비고
	나이	40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반체제(중국으로 김일성 초상화 매매)	
NO.66	이름	손영옥(여)	비고
	나이	36	
	고향	함경북도 화성군	
	수감 전 직업	청진시 수남구역 마름1동 주부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하던 중 길림에서 한국인으로 위장한 보위부원들에 의해 체포)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67	이름	김수원(남)	비고
	나이	47	
	고향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리	
	수감 전 직업	주원농장 농장원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언어 반동(술 마시고 북한 체제와 제도를 비난했다.)	
NO.68	이름	박수현(남)	비고
	나이	45	
	고향	함경북도 무산	
	수감 전 직업	무산광산 노동자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개인적으로 이산가족 찾기 브로커로 활동하다 발각되었다.	
NO.69	이름	김명철(남)	비고
	나이	43	
	고향	양강도 혜산시	
	수감 전 직업	기업소 운전수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	
NO.70	이름	노영기(남)	비고
	나이	37	
	고향	양강도 혜산시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탈북(탈북해 중국에서 생활하며 미국에 있던 삼촌의 도움을 받다가 조선족의 고발로 수감되었다.)	

부 록

NO.71	이름	최광호(남)	비고
	나이	47	
	고향	함경북도 부령군	
	수감 전 직업	부령군 화학공장 자재 인수원	
	수감연도	2001. 4.	
	수감이유	언어 반동(중국을 통해 한국행을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NO.72	이름	박인식(남)	비고
	나이	38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호위국 부업농장 자재 지도원	
	수감연도	2001. 9.	
	수감이유	언어 반동(술 마시고 북한 체제와 제도 비난) 박인식은 2003. 2. 인분조에 동원 되었다가 배가 고파 보위원들이 관리하는 꿀벌통을 훔쳐 먹었다고 하여 수용소에 있는 독감방에서 영양실조로 죽었다.	
NO.73	이름	안성철(남)	비고
	나이	20	
	고향	함경북도 온성군 온탄구	
	수감 전 직업	학생	
	수감연도	2000. 12.	
	수감이유	탈북(한국으로 가기 위해 미얀마까지 걸어서 갔다가 공안에 잡혔다.) 안성철은 수감 당시 16세로 미성년자였는데도 수용소에 수감 시켰다. 그는 어머니가 식량 미 공급으로 사망한 후 홀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너무 배가 고파 탈북하여 중국에서 지내다가 미얀마에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여 걸어서 미얀마까지 갔다가 미얀마 경찰에 체포되어 중국에 넘겨져 북송 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어린나이에 수용소에 수감되어 너무 힘들어 매일 울었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74	이름	김일태(남)	비고
	나이	43	
	고향	양강도 풍산군	
	수감 전 직업	나진 선봉군 수산사업소 노동자	
	수감연도	2000. 4.	
	수감이유	탈북(김동식 목사를 납치했던 보위부 공작조-함북도 보위부 박근춘이 가담-가 실적을 쌓기 위해 한국인으로 위장해 김일태 가족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말로 속여 중국왕청에서 일가족을 차에 태워 밤에 떠난 후 두만강에 인접한 회령시 인계리를 통해 북으로 납치하였다. 함께 들어온 가족은 부인과 9세 딸, 12세인 아들이다. 아들과 딸은 분리시키고 김일태와 그의 처 최경희만 수감 시켰다. 수용소에서 그들은 아들, 딸 생사에 대하여 많은 걱정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NO.75	이름	최경희(여),(김일태의 처)	
	나이	40	
	고향	함경북도 샛별군	
	수감 전 직업	나진, 선봉시 선전대	
	수감연도	2000. 4.	
	수감이유	김일태와 동일	
NO.76	이름	정효숙(여)	비고
	나이	40	
	고향	개성시	
	수감 전 직업	주부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국가 유산 유출(1999. 보위사령부 검열 총화에서 국가유산을 외국에 팔았다는 것이 발각되었다.) 정효숙은 개성에서 살면서 골동품을 도굴하여 팔다 잡혀 왔으나 당시 서림천 혁명화구역 담당 과장이 개성 출신이고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는 과장이 봐주는 덕택으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탈곡장 책임자를 하면서 편하게 지냈다. 당시 탈곡장은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하는 곳이었다.	

부 록

NO.77	이름	김영춘(여)	비고
	나이	36	
	고향	함경남도 신흥군	
	수감 전 직업	신흥기계공장 노동자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	
NO.78	이름	허금주(여)	비고
	나이	29	
	고향	함경남도 함흥시	
	수감 전 직업	함흥히 체육단 태권도 사범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연좌제(어머니가 이산가족 찾기 브로커로 일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 아버지와 요덕에 들어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완전통제구역의 어느 수용소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NO.79	이름	허금주 부친, 허OO(남)	비고
	나이	60	
	고향	함경남도 함흥시	
	수감 전 직업	함흥시 기계공장 지도원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연좌제(허금주와 동일)	
NO.80	이름	신영숙(여)	비고
	나이	38	
	고향	함경남도 신포시	
	수감 전 직업	신포 수산사업소 방송원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언어 반동(술 마시고 북한 체제와 제도를 비난했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81	이름	이은주(여)	비고
	나이	28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 관해동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0. 12.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	
NO.82	이름	김철범(남)	비고
	나이	26	
	고향	함경북도 무산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1. 5.	
	수감이유	탈북(중국에서 기독교 접함)	
NO.83	이름	서명옥(여)	
	나이	38	
	고향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	
	수감 전 직업	남양 체신소 교환수	
	수감연도	2001. 12.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	
NO.84	이름	손기복(남)	비고
	나이	43	
	고향	남포 와우도구역	
	수감 전 직업	해운성 전진호 선원	
	수감연도	2000. 9.	
	수감이유	탈북(1992. 태국 근교에서 전진호를 이탈해 해외에서 1999. 까지 생활하다 중국에서 잡혔다.)	

부 록

NO.85	이름	곽광호(남)	비고
	나이	40	
	고향	함경북도 회령시 동명동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이산가족 찾기 브로커로 활동하다 잡혔다.	
NO.86	이름	김광남(남)	비고
	나이	38	
	고향	함경북도 회령시	
	수감 전 직업	회령역 노동자	
	수감연도	2000. 4.	
	수감이유	간첩죄(중국에서 기독교의 도움을 받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잡혔다. 보위부의 고문으로 남한으로부터 임무를 받았다고 허위자백해 간첩의 누명을 썼다.)	
NO.87	이름	김영숙(여)	비고
	나이	48	
	고향	평안남도 대동군	
	수감 전 직업	함경남도 정평군 주부	
	수감연도	2000. 9.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	
NO.88	이름	유정철(남)	비고
	나이	37	
	고향	남포	
	수감 전 직업	러시아 주재 림업대표부 노동자	
	수감연도	2000. 12.	
	수감이유	탈북(러시아의 사업소를 이탈해 탈북을 시도하다 보위부에 잡혀 온 몸에 긁스를 당해 비행기로 운송되었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89	이름	주 일(남)	비고
	나이	50	
	고향	함경남도 함흥시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공훈합창단 바이올린 연주가	
	수감연도	2001. 5.	
	수감이유	한국에 있는 누나로부터 국경지대인 온성군 삼봉구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NO.90	이름	김정수(남)	비고
	나이	38	
	고향	남포 천리마구역	
	수감 전 직업	천리마구역 청년동맹 학생부부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종교(북한 내에서 기독교를 믿다가 발각되었다.)	
NO.91	이름	장광옥(여), NO.90 김정수의 처	비고
	나이	35	
	고향	남포 천리마구역	
	수감 전 직업	주부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김정수와 동일	
NO.92	이름	염영철(남)	비고
	나이	38	
	고향	남포 천리마구역	
	수감 전 직업	천리마구역 도시건설사업소 청년동맹 위원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김정수와 동일	

부 록

NO.93	이름	김영화(여), NO 92 염영철의 처	비고
	나이	35	
	고향	남포 천리마구역	
	수감 전 직업	주부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염영철과 동일	
NO.94	이름	고은희(여)	비고
	나이	24	
	고향	남포 천리마구역	
	수감 전 직업	도시건설사업소 노동자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염영철과 동일	
NO.95	이름	윤영철(남)	비고
	나이	62	
	고향	일본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호위국 백양회사(외화벌이 사업소)대련지사 지사장	
	수감연도	2000. 12.	
	수감이유	간첩혐의	
NO.96	이름	김익수(남)	비고
	나이	58	
	고향	일본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매봉무역회사 지도원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간첩혐의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97	이름	김덕원(남)	비고
	나이	55	
	고향	일본	
	수감 전 직업	중앙인민위원회 월명산 무역회사 지도원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간첩혐의	
NO.98	이름	천창희(남)	비고
	나이	35	
	고향	강원도 안변군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131지도국(핵시설 건설담당 부대)군인(분대장)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국가비밀누설(현역 군인인 형에게 핵 시설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	
NO.99	이름	윤성민(남)	비고
	나이	40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제2경제위원회 부흥무역회사 부부장	
	수감연도	2001. 9.	
	수감이유	국가기밀누설(군수물자를 외국에 판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	
NO.100	이름	김동호(남)	비고
	나이	64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첨암구역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은덕총국(연유국)국장	
	수감연도	2000. 9.	
	수감이유	김정일의 말을 거역했다는 이유(연유 배정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로 했다는 이유)	

부 록

NO.101	이름	차복순(여)	비고
	나이	58	
	고향	평양	
	수감 전 직업	제2경제위원회 부흥회사 평양지사 지사장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외국인과 부정당한 거래 행위를 했다.	
NO.102	이름	김석철(남)	비고
	나이	30	
	고향	자강도 전천군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131지도국 군인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국가기밀누설(핵시설 관련 정보 누설)	
NO.103	이름	김철민(남)	비고
	나이	35	
	고향	함경북도 회령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0.	
	수감이유	탈북	
NO.104	이름	김호석(남)	비고
	나이	37	
	고향	함경북도 연사군	
	수감 전 직업	온성군 항하탄광 노동자	
	수감연도	2001. 5. (2003. 3. 5. 탈출하다 공개총살됨)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하다 몽골 국경에서 체포되었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05	이름	전만수(남)	비고
	나이	44	
	고향	평양 승호구역	
	수감 전 직업	평양 승호시멘트 공장 사무원	
	수감연도	2000. 4.	
	수감이유	탈북(훈춘에서 한국 사람에게 자신이 미사일기지에서 일했다고 거짓말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됨)	
NO.106	이름	박명희(여)	비고
	나이	35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감 전 직업	주부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탈북(길림성 매화구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	
NO.107	이름	노광철(남)	비고
	나이	37	
	고향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1. 9.	
	수감이유	탈북(2000.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진입하다 체포되었다. 함께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명만 관리소에 들어왔다. 나머지는 완전통제 구역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NO.108	이름	강미숙(여)	비고
	나이	35	
	고향	황해북도 봉산군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탈북(연길에서 공안에 체포되었고 보위부 심문 과정에서 한국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말해서 수감되었다.)	

부 록

NO.109	이름	김경일(남)	비고
	나이	34	
	고향	함경북도 샛별군	
	수감 전 직업	국방 과학연구소 프로그래머(평양 용성구역 소재)	
	수감연도	2001. 8.	
	수감이유	국가기밀누설(프로그램을 중국에 팔다가 발각)	
NO.110	이름	김광연(남)	비고
	나이	32	
	고향	강원도 원산시	
	수감 전 직업	과학원 연구소 연구사(평성시 소재)	
	수감연도	2001. 7.	
	수감이유	언어 반동(체제, 제도 비난-연구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연구를 위한 보장도 해주지 않으니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NO.111	이름	김종석(남)	비고
	나이	60	
	고향	평안남도 평성시	
	수감 전 직업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서경무역회사(평성시 소재)사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당 자금 횡령(당 자금을 남발하였는데 돈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내지 않아 책임을 졌다.)	
NO.112	이름	양원종(남)	비고
	나이	59	
	고향	함경북도 샛별군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반탐과장(중좌)	
	수감연도	2000. 5.	
	수감이유	인권유린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13	이름	김승철(남)	비고
	나이	35	
	고향	함경북도 무산	
	수감 전 직업	무산역 검차공	
	수감연도	2001. 7.	
	수감이유	탈북 해 한국행 기도(몽골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12명과 함께 기다리다 심양에서 공안에 체포되었고 이 중 일부만 관리소에 들어왔다.)	
NO.114	이름	김창록(남)	비고
	나이	35	
	고향	함경북도 회령시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탈북(연길에서 공안에 체포)	
	수감생활	김창록은 오랜 유치장 생활에 병에 걸려 2000. 2. 16. 사망하였다.	
NO.115	이름	엄용연(남)	비고
	나이	45	
	고향	함경북도 회령시	
	수감 전 직업	회령 호텔 운전수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탈북(한국 사람을 상대로 골동품 장사를 하다가 연길에서 체포되었다.)	

부 록

NO.116	이름	김남철(남)	비고
	나이	36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수감 전 직업	무직	
	수감연도	2000. 3.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중국 도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가 주위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밀고했다.)	
NO.117	이름	이금남(여)	비고
	나이	35	
	고향	함경남도 단천시	
	수감 전 직업	주부	
	수감연도	1999. 12.	
	수감이유	탈북(한국행 기도-몽골 국경에서 여럿이 체포 되었다.)	
NO.118	이름	김영준(남)	비고
	나이	35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수감 전 직업	청진역 조차공(각 량을 연결해주는 기능공)	
	수감연도	2001. 7.	
	수감이유	이산가족 찾기 브로커로 활동하다 체포	
	수감생활	영양실조로 수감생활을 제대로 못하다가 2000. 6. 21. 사망하였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19	이름	김근칠(남)	비고
	나이	38	
	고향	자강도 전천군	
	수감 전 직업	자강도 강계시 구두 수리공	
	수감연도	2001. 11.	
	수감이유	당 명예 훼손(평양에 가서 중앙당 지도원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다 두 번째 다시 평양에 갔다 걸렸다.)	
	수감생활	영양실조로 2002. 6. 21. 사망하였다.	
NO.120	이름	염준식(남)	비고
	나이	60	
	고향	평안북도 피현군	
	수감 전 직업	노동자	
	수감연도	2000. 7.	
	수감이유	언어 반동(체제 비난–술 먹다 김정일이 인민들을 짚거 죽인다고 말했다.)	
NO.121	이름	김용일(남)	비고
	나이	42	
	고향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수감 전 직업	김책제철소 노동자	
	수감연도	2000. 9.	
	수감이유	탈북(연길에서 자신이 조선인민군 대좌라고 말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이 공안에 밀고하여 체포) 수감 후 보위원을 속였다고 하여 밥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	

부 록

NO.122	이름	김석철(남)	비고
	나이	40	
	고향	평안북도 신의주시	
	수감 전 직업	조선인민군 정찰국 과장 대좌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동독 유학생 사건(김승곤과 같은 사건)	
NO.123	이름	이일남(남)	비고
	나이	41	
	수감 전 직업	청진 철도국 회령역 사령원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임업성 간부가 탈북하려는 것을 도우려 한 혐의가 발각되었다.	
NO.124	이름	김윤길(남)	비고
	나이	43	
	수감 전 직업	평양시 급양관리국 과장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체코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면서 한국을 동경하였다는 이유	
NO.125	이름	김종명(남)	비고
	나이	46	
	수감 전 직업	평양시 체신관리국 수리공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남조선 방송 청취(반도체 라디오를 조립하여 집에서 한국 방송을 듣고 부인에게 이야기 한 것이 가정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보위부에 신고하였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26	이름	정학수(남)	비고
	나이	42	
	수감 전 직업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 노동자	
	수감연도	2000. 9.	
	수감이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제도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NO.127	수감생활	2003. 1.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비고
	이름	신정애(여)	
	나이	50	
	수감 전 직업	청진시 포항구역 남향동 주부	
	수감연도	2000. 4.	
	수감이유	재일귀국자로서 일본에 있는 언니를 중국에 가서 만났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한국에 입국하였다 현재 미국에 이민감.	
NO.128	이름	김순철(남)	비고
	나이	37	
	수감 전 직업	인민무력부 공군사령부 4사단 비행사	
	수감연도	2002. 9.	
	수감이유	국가기밀 유설(새로운 비행기가 들어왔다고 친형한테 이야기 했다.)	
NO.129	이름	황종호(남)	비고
	나이	47	
	수감 전 직업	개성시 인민병원 구급과 의사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제도 비난(의사로 지내면서 열악한 북한 병원실태에 대하여 외국의료봉사단에 이야기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부 록

NO.130	이름	정 호(남)	비고
	나이	44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35호실 공작조 조장	
	수감연도	2000. 7. 4.	
	수감이유	공작조의 공작실패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수감되었다.	
	수감생활	2002. 7. 4. 김정일의 방침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NO.131	이름	정광일(남)	비고
	나이	40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35호실 공작원	
	수감연도	2000. 7. 4	
	수감이유	정광일은 주로 유럽에서 공작하였는데 공작실패로 수감되었다.	
	수감생활	2002. 7. 4. 김정일의 방침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NO.132	이름	조창길(남)	비고
	나이	42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35호실 공작원	
	수감연도	2000. 7. 4.	
	수감이유	중국 상해에서 무역회사를 차리고 공작하다 신분이 노출되어 수감되었다.	
	수감생활	2002. 7. 4. 김정일의 방침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NO.133	이름	김국성(남)	비고
	나이	60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35호실 공작원	
	수감연도	2000. 7. 4.	
	수감이유	중국 천진에서 공작하다 신분이 노출되어 수감되었다.	
	수감생활	2002. 7. 4. 김정일의 방침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34	이름	고은경(남)	비고
	나이	42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35호실 공작원	
	수감연도	200. 7. 4.	
	수감이유	중국 북경에서 공작하다 신분이 노출되었다.	
	수감생활	2002. 7. 4. 김정일의 방침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NO.135	이름	양상국(남)	비고
	나이	42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35호실 공작원	
	수감연도	2000. 7. 4	
	수감이유	중국 단동에서 공작하다 신분이 노출되었다.	
	수감생활	2002. 7. 4. 김정일의 방침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NO.136	이름	김명수(남)	비고
	나이	48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35호실 과장	
	수감연도	2000. 7. 4.	
	수감이유	중국에서 활동하는 공작조의 공작부실로 인한 연대적 책임으로 수감되었다.	
	수감생활	2000. 9. 김정일의 방침으로 석방되었다.	
NO.137	이름	오경환(남)	비고
	나이	56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2국 지도원	
	수감연도	1999. 12.	
	수감이유	국가기밀 유설	
	수감생활	2000. 12.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부 록

NO.138	이름	김상철(남)	비고
	나이	27	
	수감 전 직업	조선인민군 군인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탈영	
	수감생활	2002.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NO.139	이름	노춘삼(남)	비고
	나이	27	
	수감 전 직업	양강도 삼지연군 임산 노동자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언어 반동	
	수감생활	2000. 8. 밤 불시에 어디론가 끌고 갔다. 그는 평상시 수용소에 수감되어도 김정일을 비난하였다.	
NO.140	이름	○○○(남)	비고
	나이	59	
	수감 전 직업	평양시 락랑구역 보위부장	
	수감연도	2002. 9.	
	수감이유	사건 날조	
NO.141	이름	김영일(남)	비고
	나이	48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35호실 공작원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간첩 혐의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42	이름	○○○(강미숙의 母)	비고
	나이	56	
	수감 전 직업	황해북도 봉산군 주부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딸 강미숙과 탈북하여 중국 연길에서 살다 공안에 체포되었다. 북송되어 보위부 취조 과정 중 한국인과 거래한 것이 발각되었다.	
NO.143	이름	진철권(남)	비고
	나이	25	
	수감 전 직업	개성	
	수감연도	2000. 11.	
	수감이유	한국에서 보낸 빠라를 보고 한국과 북한을 비교 발언 한 것으로 수감되었다.	
NO.144	이름	함순정(여)	
	나이	25	
	수감 전 직업	평남도 덕천군 덕천탄광 노동자	
	수감연도	2002. 2.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45	이름	김성덕(남)	비고
	나이	58	
	수감 전 직업	조국통일 평화위원회 초급당 비서	
	수감연도	2000. 6.	
	수감이유	당의 권위 훼손(뇌물을 받고 간부 채용을 함)	

부 록

NO.146	이름	김일현(남)	비고
	나이	40	
	수감 전 직업	무산광산 노동자	
	수감연도	1999. 12.	
	수감이유	미국에 있는 삼촌을 중국에 가서 만난 것으로 수감되었다.	
	수감생활	현재는 한국에 입국하였다.	
NO.147	이름	조봉애(여)	비고
	나이	42	
	수감 전 직업	평남도 순천시 상업관리소 사무원	
	수감연도	2000. 9.	
	수감이유	군부 자금 횡령(본인이 보위사령부 지도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군부에 들어가는 물자를 빼돌려 이익을 챙기다 걸렸다.)	
	수감생활	수감 중 말을 잘못하여 수용소 내 독감방에 1개월간 구속되었다.	
NO.148	이름	김경남(남)	비고
	나이	40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2국 지도원	
	수감연도	2001. 5.	
	수감이유	만경봉호 보위원회를 하면서 조총련 사람들에게 보위부의 내적인 비밀을 누설했다.	
NO.149	이름	강석철(남)	비고
	나이	43	
	수감 전 직업	조선노동당 제130연락소 지도원	
	수감연도	2002. 10.	
	수감이유	해외에서 공작 중 신분 노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50	이름	이설화(여)	비고
	나이	26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회령시 세천동 편의협동 노동자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국군포로 2세인 남편과 함께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다 납치조에 의해 잡혔다. 남편은 22호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NO.151	이름	김광일(남)	비고
	나이	18	
	수감 전 직업	평안남도 순천시 고등학생	
	수감연도	2002. 10.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수감생활	수감 중 밤에 어디론가 끌려갔다.	
NO.152	이름	김광식(남)	비고
	나이	16	
	수감 전 직업	평안남도 순천시 학생	
	수감연도	2002. 10.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수감생활	수감 중 밤에 어디론가 끌려갔다.	
NO.153	이름	김성일(남)	비고
	나이	41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2국 지도원	
	수감연도	국가기밀 유설	
	수감이유	2000. 10.	
	수감생활	수감 중 밤에 어디론가 끌려갔다.	

부 록

NO.154	이름	황미란(여)	비고
	나이	38	
	수감 전 직업	남포시 강서구역 주부	
	수감연도	2003. 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55	이름	김영실(여)	비고
	나이	25	
	수감 전 직업	양강도 보천군 선전대	
	수감연도	1999. 1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수감생활	2004. 4.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	
NO.156	이름	김열모(남)	비고
	나이	58	
	수감 전 직업	조선인민군 군관 대좌	
	수감연도	2003. 9.	
	수감이유	반체제	
NO.157	이름	차정철(남)	비고
	나이	27	
	수감 전 직업	조선인민군 군인	
	수감연도	2003. 6.	
	수감이유	탈영하여 중국으로 탈북	
NO.158	이름	양명성(남)	비고
	나이	22	
	수감 전 직업	황해북도 사리원시 노동자	
	수감연도	2003. 9.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59	이름	이춘기(남)	비고
	나이	48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경성시 노동자	
	수감연도	2003. 5.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60	이름	전용산(남)	비고
	나이	35	
	수감 전 직업	조선인민국 국경 경비대 군관	
	수감연도	2003. 7.	
	수감이유	탈북자들의 탈북을 도와준 혐의	
NO.161	이름	장현수(남)	비고
	나이	48	
	수감 전 직업	재러시아 임업대표부 노동자	
	수감연도	2003. 5.	
	수감이유	사업소를 이탈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NO.162	이름	이광성(남)	비고
	나이	38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도체육단 축구선수	
	수감연도	2002. 9.	
	수감생활	수감 중 밤에 어디론가 끌려갔다.	
NO.163	이름	서재석(남)	비고
	나이	42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온성군 산성리 농장원	
	수감연도	2003. 12.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부 록

NO.164	이름	한명철(남)	비고
	나이	58	
	수감 전 직업	인민보안성 국장	
	수감연도	2004. 5.	
	수감이유	당의 권위 훼손	
NO.165	이름	○ ○ ○(남)	비고
	나이	58	
	수감 전 직업	인민보안성 부국장	
	수감연도	2004. 5.	
	수감이유	당의 권위 훼손	
NO.166	이름	김연희(여)	비고
	나이	28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은덕군 노동자	
	수감연도	2004. 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67	이름	김경옥(여)	비고
	나이	28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은덕군 노동자	
	수감연도	2004. 1.	
NO.168	이름	조철식(남)	비고
	나이	48	
	수감 전 직업	평양시 상업관리소 지도원	
	수감연도	2002. 9.	
	수감이유	체제 비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69	이름	서춘보(남)	비고
	나이	55	
	수감 전 직업	국가보위부 12국 과장	
	수감연도	2002. 8.	
	수감이유	국가기밀 유설	
NO.170	이름	조성혜(여)	비고
	나이	35	
	수감 전 직업	함경남도 단천시 주부	
	수감연도	2004. 2.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71	이름	방은숙(여)	비고
	나이	39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은덕군 주부	
	수감연도	2004. 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72	이름	김국화(여)	비고
	나이		
	수감 전 직업		
	수감연도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73	이름	유성금(여)	비고
	나이	24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무산광산 노동자	
	수감연도	2002. 1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부 록

NO.174	이름	허은숙(여)	비고
	나이	35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주부	
	수감연도	2004. 2.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75	이름	방금선(여)	비고
	나이	42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은덕군 주부	
	수감연도	2004. 4.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76	이름	전영숙(여)	비고
	나이	58	
	수감 전 직업	평안남도 평성시 주부	
	수감연도	2004. 5.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77	이름	김춘옥(여)	비고
	나이	60	
	수감 전 직업	평안남도 안주시 주부	
	수감연도	2004. 4.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78	이름	김성희(여)	비고
	나이	30	
	수감 전 직업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구역 노동자	
	수감연도	2004. 5.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NO.179	이름	김혜옥(여)	비고
	나이	28	
	수감 전 직업	평안북도 의주군 노동자	
	수감연도	2004. 6.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80	이름	김란영(여)	비고
	나이	35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자	
	수감연도	2004. 5.	
	수감이유	체제 비난	
NO.181	이름	김혜영(여)	비고
	나이	30	
	수감 전 직업	함경남도 신포시 수산사업소 노동자	
	수감연도	2004. 7.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82	이름	우목란(여)	비고
	나이	25	
	수감 전 직업	강원도 안변군 도자기공장 노동자	
	수감연도	2005. 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NO.183	이름	김순희(여)	비고
	나이	40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덕소학교 소년단 지도원	
	수감연도	2002. 1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재일북송 교포 2세	

부 록

NO.184	이름	김화순(여)	비고
	나이	40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화대군 사무원	
	수감연도	2005. 1.	
	수감이유	국가기밀 유설(무수단 미사일 기지관련 비밀 유설)	
NO.185	이름	최경애(여)	비고
	나이	25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무산광산 노동자	
	수감연도	2005. 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함	
NO.186	이름	김영순(여)	비고
	나이	28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무산광산 노동자	
	수감연도	2004. 1.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함	
NO.187	이름	이철호(남)	비고
	나이	35	
	수감 전 직업	함경북도 회령시 농촌건설대 노동자	
	수감연도	2000. 2.	
	수감이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려함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부록 2

[북한인권 주요 정책권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부 록

1)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4. 4.)

납북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공직진출 제한(연좌제), 고문 등의 피해 내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

정부는 위원회 특별법 제정 권고를 수용하여 2006.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2)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6. 6.)

정전협정 이전의 납북피해자까지 구제범위 확대, 피해내용별 보상금 구체화 및 지급기준 명시, 보상금과 국가배상과의 이중지급 제한 규정 삭제, 납북피해 실태조사의 실시 명시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피해내용별 보상금의 구체화, 이중배상금지 삭제 등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후납북피해보상법)에 대한 의견표명(2006. 7.)

구제대상 납북피해자의 확대, 이적행위자 규정의 구체화, 피해 당사자의 구제심의위원회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정부는 이적행위 규정 구체화, 구제심의위의 당사자 참여 등의 내용을 수용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6. 10. 국회에 제출, 2007. 4. 국회 의결, 2007. 10.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

4)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2006. 12.)

위원회는 2006. 12.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침해사례집

원회의 입장'을 표명을 하였음.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 입장에서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전제로,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향후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표명

5) 탈북자 신상정보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권고(2007. 2.)

정부기관이 탈북 귀순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북한에 있는 진정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한 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탈북자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점이 발견되어 정보유출과 관련된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 및 특별교육실시 권고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전후납북피해보상법)」에 대한 의견 표명(2008. 6.)

납북과 관련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모든 자와 그 유족이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납북피해자 정의 규정 중 제3호 다목의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7)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2008. 7.)

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의 납북피해자 관련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부 록

8) 북한주민 22명 북송사건에 대한 권고(2008. 7.)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주민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권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합동신문조사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의 언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통일부장관에게 북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생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

9)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권고(2008. 8.)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중국정부가 UN난민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규 및 인도주의적인 고려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을 권고

10)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 권고(2008. 9.)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추진하고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

11) 납북자 문제 관련 제주해양경찰청 의견표명(2009. 4.)

월북자로 분류된 ○○○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표명을 결정

12) 개성공단 억류자 석방을 촉구하는 전위원회 결정(2009. 4.)

개성공단 억류자 석방을 촉구하는 전원위원회 결정에 의해 위원장 명의의 논평

북한인권침해사례집

13) 임진강 황강댐 방류 사건 관련 논평(2009. 9.)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 당국에 대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14)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책권고(2010. 4.)

위원회는 국회의장에 대해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위원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정책권고

15)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관련 논평 (2010. 11.)

위원회는 정부당국이 무엇보다도 신속히 주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적절적으로 연관되기에 정부당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무력충돌의 재발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 당국도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

16)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관련 권고(2010. 12.)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 4. 권고한 내용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정할 것을 재차 의견표명,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17)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2011. 10.)

국무총리에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 록

청사진과 업무추진을 하도록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정책 마련을 권고

18) 신숙자 모녀(일명 통영의 딸) 송환을 위한 권고(2011. 10.)

신숙자 모녀가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에게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19) 재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 성명(2011. 11.)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는 열악한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강제북송 중단에 대해 전원위 결정으로 위원장 성명

20) 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 권고(2011. 11.)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초기에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국내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총괄표


전략 과제	I. 북한주민 인권개선	II. 북한이탈주민 인권 개선	III.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3-1 단기 실행계획	
				[단기] 실행계획	
1-1-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의 제도화 /교과부, 통일부, 문광부	2-1-1.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단기] 실행계획	3-1-1	재외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외통부, 통일부	국가의 피해자·인권보호 체무 이행
1-1-2	북한인권법 제정/국회	2-1-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 활동 강화/외통부	3-1-2	인권·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통일부, 국방부	마련 통일부, 국방부
1-1-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통일부, 국방부 등	2-1-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스템 강화/외통부, 통일부	3-1-3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구축/통일부, 외통부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1-1-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통일부, 문광부, 방송위	2-1-4.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강구/외통부, 통일부	3-1-4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기구와의 협력
1-1-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통일부	2-1-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외통부	3-1-5	방안 강화	방안 마련/통일부, 국방부
1-1-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외통부	2-1-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이동의 권리 보호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3-1-6		

전략 과제	I. 북한주민 인권개선	II. 북한이탈주민 인권 개선		III.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2-1-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외통부, 통일부	2-2.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단기 실행계획]	
실행 계획	1-2-1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2-2-1 정신적·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통일부	3-2-1 미흡한 관련 법·제도 보완 /국회, 통일부, 국방부	* 제19차 전원위 의결(2011.10.24)
	1-2-2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2-2-2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통일부	3-2-2 사회적 학의 및 지지 기반 구축/통일부, 국방부	
	1-2-3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외통부, 통일부	2-2-3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정책 강화/국정원, 통일부, 여성기족부 [중·장기 실행계획]	3-2-3 미흡한 관련 법·제도 보완 /국회, 통일부, 국방부	
		2-2-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통일부	3-2-4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통일부	
		2-2-5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통일부		

※ / 이하는 소관 부처

부록 3

[북한인권침해신고서]

본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신원

- ① 이름 :
- ② 성별(여성 또는 남성) :
- ③ 생년월일 :
- ④ 국적 :
- ⑤ 직업 :
- ⑥ 공민증 번호(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 :
- ⑦ 사회활동(정치, 종교, 노동조합, 인도적 단체, 언론, 기타) :
- ⑧ 당시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
- ⑨ 피해자의 사망여부 :

2. 인권침해 당시의 상황(기재할 수 있는 사항만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2-1. 【북한주민, 재외 탈북자】

* 국군포로 또는 납북, 이산가족 등의 경우는 질문 2-2. 부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② 인권침해를 한 기관(각각 다른 기관일 경우 모두 기재) 및 소속(수용소, 교화소, 정보기관, 군대, 국가안전보위부, 기타 등 기재), 인권침해를 한 담당개인의 인적사항

부 록

③ 인권침해를 당한 사유는 무엇입니까?(정치범, 경제범 등 이유 기재)

④ 체포나 구금시 그 이유를 알려주던가요?

⑤ 수감 중에 변호사나 친척 혹은 친구 등이 피해자를 면회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까? 허용되었다면 체포나 구금된지 얼마 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⑥ 인권침해 방법(가혹행위, 고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인권침해의 결과로 신체상 어떤 상처들을 입었습니까? 현재까지 상처가 남아있다면 별첨 그림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인권침해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⑨ 피해자는 그 사건(인권침해 받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후에 특정신체부위에 대해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 검진이 수용소나 북한당국 소속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까?

⑩ 인권침해의 결과로 입은 상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⑪ 의료검진은 인권침해의 결과로 입은 상처들의 증거를 의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루어 졌습니까? 어떤 의료 보고서나 증명서가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⑫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부검이나 법의학적 검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⑬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⑭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인도주의에 반한 과도한 형벌을 받은 경우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벌을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언제, 어떤 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받았습니까?
- 판사 및 검사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 재판부는 어떤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였습니까?
- 재판부에 의해 확인된 사실과 증거가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 북한법령에 규정된 재판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 재판부가 적용한 형벌규정은 무엇입니까?
- 선고된 형벌은 무엇입니까?
- 수감하거나 형벌을 집행한 기관의 명칭은 무엇이며 기간은 얼마입니까?
- 재판기록(기소문, 공판결의서, 판결문, 석방문서 등)을 아직 소지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 형벌을 함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인적사항, 주소지 및 형량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국군포로, 납북자, 남한주민】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의 경우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포로 또는 납북, 이산가족이 되었습니까?
- ② 인권침해를 한 기관(각각 다른 기관일 경우 모두 기재) 및 소속(수용소, 교화소, 정보기관, 군대, 국가안전보위부, 기타 등 기재), 인권침해를 한 담당개인의 인적사항
- ③ 인권침해를 당한 사유는 무엇입니까?(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이유 기재)
- ④ 포로 또는 납북시 그 이유를 알려주던가요?
- ⑤ 포로 또는 납북, 이산가족이 된 이후에 변호사나 친척 혹은 친구 등이 피해자를 면회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까? 허용되었다면 체포나 구금, 포로 또는 납북, 이산가족이 된지 얼마 후에 만날 수 있었습니까?
- ⑥ 인권침해 방법(가혹행위, 고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⑦ 인권침해의 결과로 신체상 어떤 상처들을 입었습니까? 현재까지 상처가 남아있다면 별첨 그림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⑧ 인권침해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⑨ 피해자는 그 사건(인권침해 받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후

에 특정신체부위에 대해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 검진이 수용소나 북한당국 소속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까?

⑩ 인권침해의 결과로 입은 상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⑪ 의료검진은 인권침해의 결과로 입은 상처들의 증거를 의사가 발견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졌습니까? 어떤 의료 보고서나 증명서가 나왔
습니까? 그렇다면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⑫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부검이나 법의학적 검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⑬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
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
니다

⑭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인도주의에 반한 과도한 형벌을 받은 경우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벌을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언제, 어떤 법원에 의하여 판결을 받았습니까?

- 판사 및 검사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 재판부는 어떤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였습니까?

- 재판부에 의해 확인된 사실과 증거가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일
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부 록

- 북한법령에 규정된 재판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 재판부가 적용한 형벌규정은 무엇입니까?
- 선고된 형벌은 무엇입니까?
- 수감하거나 형벌을 집행한 기관의 명칭은 무엇이며 기간은 얼마입니다?
- 재판기록(기소문, 공판결의서, 판결문, 석방문서 등)을 아직 소지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벌을 함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인적사항, 주소지 및 형량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리구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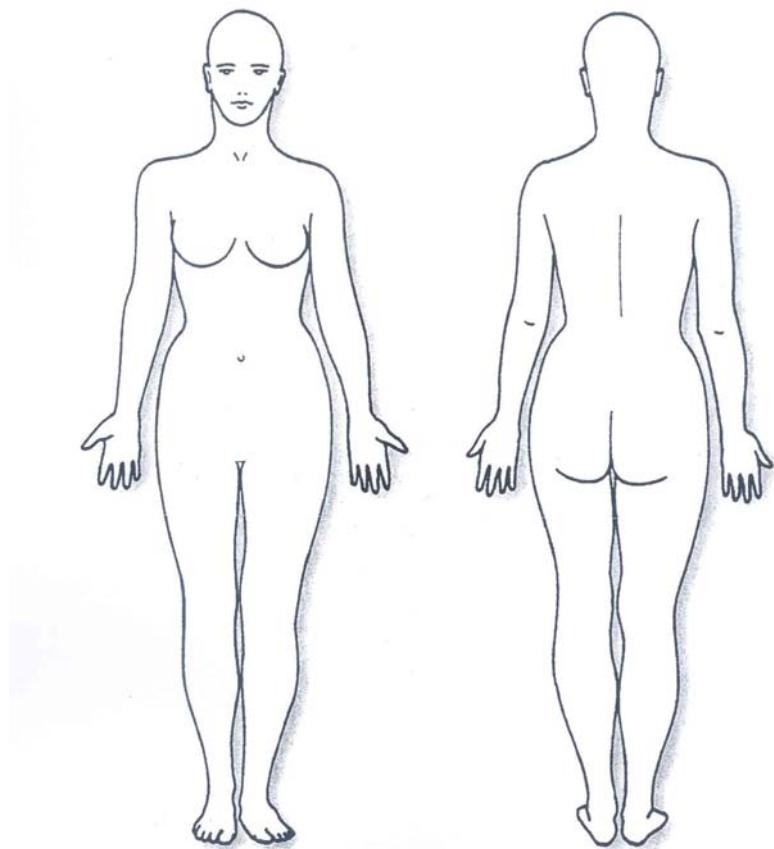
- 피해자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북한내에서 어떤 구제조치(사법기관, 정치단체 등)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인권침해사례집

- 인권침해로 인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처가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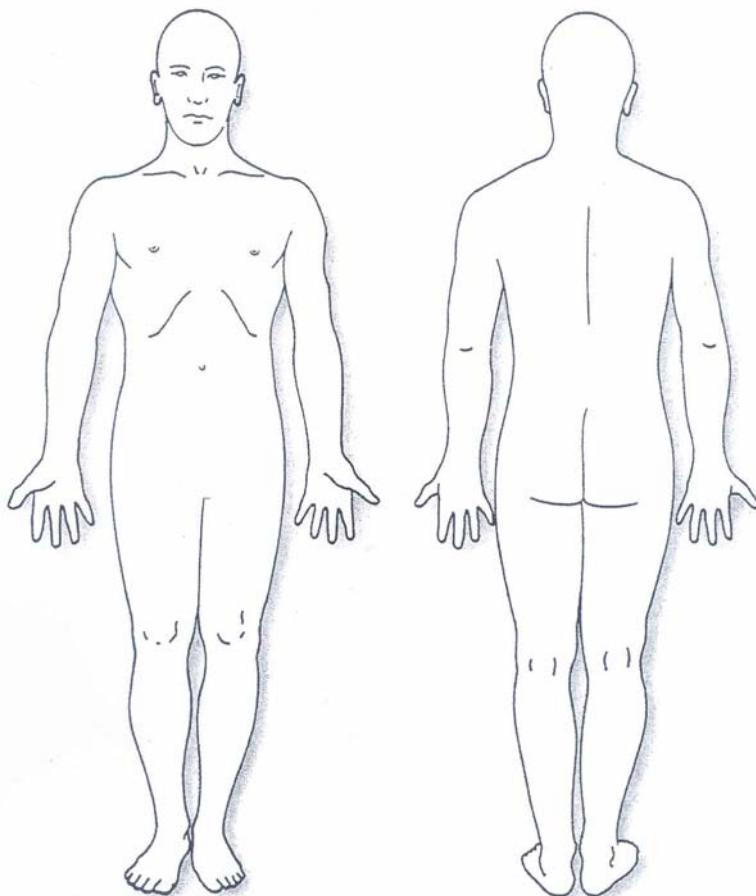
여성의 앞면과 뒷면



부 록

- 인권침해로 인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처가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앞면과 뒷면



북한인권침해사례집

| 인 쇄 | 2012년 5월
| 발 행 | 2012년 5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종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8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72-01